



■ 연구보고서(수시) 2014-04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강신욱 · 김현경 · 원승연 · 김근혜

【책임연구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동성 변화실태 및 요인

경제발전연구, 2011

【공동연구진】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4-04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발 행 일 2014년 12월 31일

저 자 강 신 욱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정 가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232-5 93330

불평등의 확대와 심화가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각계 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세기말 이후 갑작스럽게 소득 분배가 안 좋아진 한국은 물론, 세계적 규모의 금융위기를 경험한 해외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심화되는 불평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이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이나 그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분적인 해석과 진단들이 있었을 뿐,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경제사회적 원인을 염두에 둔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힘들다. 다만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을 통해 이전의 연구들이 주목하지 못한 요인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분석을 진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소득분배에 대한 국내의 연구 성과를 진전시키려는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한 다양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꾀함과 동시에 이제까지 많이 분석되지 못하였던 소득과 자산 및 부채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시도하고 있고, 더불어 가구의 소비실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을 적자가구라는 현상을 통해 포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강신욱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현경 부연구위원과 김근혜 연구원, 그리고 명지대의 원승연 교수가 참여하여 수행되

었다. 연구 기간과 자료로 인한 제약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노력하여준 연구진께 감사와 격려의 말
씀을 드린다. 주제의 중요성과 무게감으로 볼 때 이후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 본 연구가 분배의 개선을 지향하는 많
은 이론적, 정책적 노력을 위해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5
제1절 문제제기	7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9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1
제2장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15
제1절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의 개괄	17
제2절 가구소득 불평등의 집단별 요인분해	22
제3절 가구소득 불평등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34
제3장 가구소득 불평등의 원천별 요인분해	39
제1절 분석방법	41
제2절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변화	44
제3절 가구 비노동소득·조세·사회보장부담 불평등의 변화	72
제4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03
제1절 분석의 목적 및 방법	105
제2절 문헌연구	108
제3절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111
제4절 가계의 금융부채와 소득불균형	129

제5절 정책적 시사점	142
-------------------	-----

제5장 적자 가구의 분포 및 실태 분석	145
------------------------------------	------------

제1절 적자가구의 의미	147
--------------------	-----

제2절 적자가구의 분포 및 특성	148
-------------------------	-----

제3절 적자가구의 적자보전 실태	153
-------------------------	-----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65
-------------------------------	------------

참고문헌	170
------------	-----

표 목차

〈표 2- 1〉 가구주 특성별 가구 가처분소득 비교	23
〈표 2- 2〉 가구주 성별에 따른 집단별 불평등 기여도	27
〈표 2- 3〉 1998~2008년간 불평등 변화에 대한 가구주 성별 요인분해	28
〈표 2- 4〉 가구주 연령에 따른 집단별 불평등 기여도	28
〈표 2- 5〉 1998~2008년간 불평등 변화에 대한 가구주 연령대별 요인분해	29
〈표 2- 6〉 가구주 학력에 따른 집단별 불평등 기여도	30
〈표 2- 7〉 1998~2008년간 불평등 변화에 대한 가구주 학력별 요인분해	31
〈표 2- 8〉 가구주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집단별 불평등 기여도	31
〈표 2- 9〉 1998~2008년간 불평등 변화에 대한 가구주 경제활동상태별 요인분해	32
〈표 2-10〉 1998년 가구 가처분소득의 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36
〈표 2-11〉 2008년 가구 가처분소득의 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37
〈표 3- 1〉 가구주 특성별 구성과 노동소득 비교	46
〈표 3- 2〉 가구주 노동소득 방정식 추정 결과	49
〈표 3- 3〉 가구주 노동소득 가상 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50
〈표 3- 4〉 2008년 가구주 노동소득(로그)의 불평등 심화의 요인별 분해	53
〈표 3- 5〉 배우자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	54
〈표 3- 6〉 배우자의 특성별 구성과 노동소득 비교(배우자 취업가구)	55
〈표 3- 7〉 배우자 노동시장 참여 여부 및 노동소득 방정식 추정 결과	59
〈표 3- 8〉 배우자 소득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62
〈표 3- 9〉 2008년 배우자 로그노동소득의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64
〈표 3-10〉 기타 가구원 노동소득 관련 기초통계량	66
〈표 3-11〉 기타 가구원 노동소득 방정식 추정 결과	69
〈표 3-12〉 기타 가구원 소득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70
〈표 3-13〉 2008년 기타가구원 로그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72
〈표 3-14〉 가구 재산소득 관련 기초통계량	73

〈표 3-15〉 가구 재산소득 방정식 추정(토빗모형) 결과	75
〈표 3-16〉 가구 재산소득 추정과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	77
〈표 3-17〉 가구 사적이전소득 관련 기초통계량	78
〈표 3-18〉 가구 사적이전소득 방정식 추정 결과	80
〈표 3-19〉 가구 사적이전(로그)소득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81
〈표 3-20〉 2008년 가구 사적이전(로그)소득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83
〈표 3-21〉 가구 공적이전소득 관련 기초통계량	84
〈표 3-22〉 가구 공적이전소득 방정식 추정 결과	86
〈표 3-23〉 가구 공적이전(로그)소득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87
〈표 3-24〉 2008년 가구 공적이전(로그)소득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88
〈표 3-25〉 가구 조세지출 관련 기초통계량	89
〈표 3-26〉 가구 조세부담 방정식 추정 결과	91
〈표 3-27〉 가구 조세부담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92
〈표 3-28〉 2008년 가구(로그)조세부담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94
〈표 3-29〉 가구 사회보장부담금 관련 기초통계량	96
〈표 3-30〉 가구 사회보장부담의 추정 결과	98
〈표 3-31〉 가구 사회보장부담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99
〈표 3-32〉 2008년 가구 (로그)사회보장부담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101
〈표 4- 1〉 소득분위별 경상소득과 자산 및 부채	117
〈표 4- 2〉 소득분위별 각 항목별 비중	118
〈표 4- 3〉 소득유형별 분위 비중	120
〈표 4- 4〉 분위별 소득 유형의 비중 (경상소득 대비)	121
〈표 4- 5〉 분위별 재산소득 및 자산 구성	124
〈표 4- 6〉 분위별 부채 구성 및 이자비용	125
〈표 4- 7〉 경상소득 및 금융부채 증가율	138
〈표 4- 8〉 패널자료의 기초 통계량	140
〈표 5- 1〉 전체가구 대비 적자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51
〈표 5- 2〉 1998년 전체가구의 수입 대비 지출 비교	154

〈표 5- 3〉 1998년 적자가구의 수입 대비 지출 비교	156
〈표 5- 4〉 2008년 전체가구의 수입 대비 지출 비교	157
〈표 5- 5〉 2008년 적자가구의 수입 대비 지출 비교	158
〈표 5- 6〉 전체 가구와 적자가구의 수입 항목별 비중	160
〈표 5- 7〉 전체 가구와 적자가구의 지출 항목별 비중 변화	162

그림 목차

[그림 2- 1] 가구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19
[그림 2- 2] 가구소득 대수편차평균(MLD)의 변화	20
[그림 3- 1]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가구주 노동소득 변화	50
[그림 3- 2]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배우자 노동소득 변화	62
[그림 3- 3]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기타가구원 노동소득변화	70
[그림 3- 4]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재산소득변화	77
[그림 3- 5]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사적이전소득 변화	82
[그림 3- 6]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공적이전소득 변화	87
[그림 3- 7]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조세부담 변화	93
[그림 3- 8]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사회보장부담 변화	100
[그림 4- 1] 부채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부채이율	116
[그림 4- 2] 분위별 평균 연령	122
[그림 4- 3] 이자부담률	127
[그림 4- 4] 소득분위별 순재산소득	127
[그림 4- 5]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중	129
[그림 4- 6] 전체 가구와 차입가구의 특성 비교	130
[그림 4- 7]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133
[그림 4- 8] 차입가구의 금융비용 비율	134
[그림 4- 9] 소득분위별 차입가계의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이자비용차감)	135
[그림 4-10] 가처분소득(이자비용 차감)으로 인한 소득분배 변화	135
[그림 4-11] 소득분위별 연체율	136
[그림 4-12] 이자부담률 추이	138
[그림 4-13] 2013년 기준 소득계층의 2012년 이자부담률	141
[그림 5- 1] 전체가구와 적자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 비교	148
[그림 5- 2] 분위별 적자가구의 분포	149

Abstract <<

Causes of Rising Income Inequality and Policy Directions for Distribution Structure Improvemen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ause of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d we also tried to find major features in household debt and deficit.

By sub-group decomposition of household income inequality, we could find that the contribution of between-group inequality has been increased. It was also found that the composition effect has relatively large share in dynamic sub-group decomposition according to ages and economic activities of househeaders. And in Gini decomposition according to income sources, it was found that relative contribution of spouse's and other members' labor income to household income inequality have been increased. According to factor decomposition of labor income, the pric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has been more powerful than age effect in explaining increasing inequality of header's income. In case of spouse's labor income, gender, age, and education have negative effect in deepening inequality.

Real asset has the largest portion in household asset composition while financial debt has the largest in debt composition. And the interest burden of lower income class was rather high than

2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that of high income class. This means that burden of interest payment seems to make contribution in worsening income disparity.

The ratio of deficit household has been increased while the depth of deficit decreased last ten years. In order to meet income shortage, deficit households are likely to further rely on revenue from selling assets or raising debt than ordinary households.

From these findings, we can get som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Labor market matters in improving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the policies focusing on loosening credit constraint of low income class can make negative effect on income distribution. In making policies for lessening the burden of household expenditure, the target group should not be narrowly defined.

요약 <<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소득분배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계부채 및 소비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소득불평등과 적자가구의 실태 분석에는 통계청 1998년과 2008년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소득계층별 금융부채 보유실태에 대해서는 주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10년 사이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집단별 요인분해의 결과, 집단 내부의 불평등이 여전히 전체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90%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었지만, 집단 간 불평등의 기여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집단 간 비중 변화는 10년 사이의 불평등 증가에 대해 적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별 분해 결과, 배우자의 노동소득이나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 등 노동시장 요인에 따른 불평등의 기여도가 상승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과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이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각 원천 소득별로 회귀모형을 이용한 요인분해 방법을 적용한 결과, 가구주 노동소득의 경우 연령효과와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가격효과가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특히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노동소득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에 따른 가격효과가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가구주 특성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가격효과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금융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금융부채와 소득불균형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가계는 공통적으로 실물자산 중심의 자산 구성과 금융부채 중심의 부채구성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이자비용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이자부담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자부담이 높은 가구가 소득분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 증가에 기여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하락시킴으로써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소득재분배 정책의 차원에서 신용공급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즉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이 재정정책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보다 많은 가구를 의미하는 적자가구의 비율은 10년 사이에 증가했고 동시에 적자 폭은 감소하였다. 적자가구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적자가구는 적자보전을 위해 자산의 처분이나 부채의 증가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가구의 주거 안정성 저하하거나 부채상환 부담 가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현실이다. 적자가구의 확산이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려면 가구소득의 증대를 위한 정책과 동시에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때 지출 보전정책의 경우 대상 계층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1절 문제제기

한국사회에서 점차 심화되는 계층 간 소득격차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지 오래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도 불평등한 분배구조가 고착되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여러 통계지표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 통합의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 역시 여러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소득 분배의 악화는 단지 한국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OECD(2007, 2011)가 지적하듯이 소득분배의 악화는 지난 1980년대 이후 다수의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분명한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비록 요소소득 분배의 불평등에 국한된 논의의기는 하지만) 약 한 세기에 걸친 장기적 불평등 경향에 대한 논의(Piketty, 2014)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도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 과정의 특징을 상위 1%등 최상위 소득계층의 점유율 증가라는 관점에서 포착하려는 시도 또한 (Atkinson and Piketty eds, 2007) 국내외에서 새삼 주목받기도 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점차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변화 실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원

인은 무엇인가? 성장의 둔화인가? 노동시장의 변화인가? 아니면 고령화로 집약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인가? 각각의 원인들은 또 어떤 요인들에 의해 초래되었는가? 각각의 원인들이 동시에 작용한다면 어떤 원인들이 어느 정도씩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답을 시도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다른 한편, 소득불평등은 그 자체가 다른 경제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이란 문제를 직접적이고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이 초래하는 다른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소득불평등의 진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두 영역, 즉 자산 보유 및 지출에서의 한국사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득 분배구조 악화의 원인을 탐구하고, 그와 동시에 진행되는 자산 및 소비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악화된 시기인 1998년과 2008년 사이의 10년 동안 어떤 요인이 주로 작용하였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체 가구소득을 다양한 하위 소득원천으로 분해하고, 각 소득원천의 격차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또한 소득분배의 악화는 자산 및 부채 보유의 계층간 분포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산 및 부채 보유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계층간 소득 격차의 확대에 의해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소비 지출상의 애로에 주목하여 적자 가구의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검토는 기존 연구에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어져 왔다. 미시자료가 제공하는 가구소득을 이용한 분석에 국한하여 본다면,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여 온 것은 노동시장의 변화, 인구구조의 고령화, 개인 및 가구 단위의 노동공급의 변화, 그리고 재분배정책의 변화 등이다.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요인이 미친 효과에만 주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요인분해 방법이다. 예컨대 Shorrocks(1982, 1984)나 Lerman and Yitzhaki(1985), 또는 Jenkins(1995)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인구집단별로, 혹은 각 소득원천별로 전체 불평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유진 외(2005), 이병희·강신욱 외(2007), 신광영(2013)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집단별 혹은 소득원천별 불평등 분해 방법은 소득 분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검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이 소득불평등 변화에 미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Fields(2003)나 Bourguignon et.al.(2008) 회귀분석의 방법론을 이용한 접근이 시도되기도 한다. 강신욱 외(2013)의 경우 Fields(2003)의 방법에 따라 1992년 이후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에 성별이나 연령, 교육, 종사상 지위, 종사 산업 등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 후, 각 요인별 기여도가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 원인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 국한하여 본다면, 각 요인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은 상호 완전히 배타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가운데 어느 요인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정책적 함의는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성명재·박기백(2009)이나 홍석철·전한경(2013)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의 효과를 강조하는 후자의 경우 소득재분배정책보다는 고령자의 고용확대라는 정책적 대안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병희·장지연(2012)은 최근 15년간의 소득불평등 악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불평등 확대임을 지적하면서, 임금불평등이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온전히 전이되지 않은 이유로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소득활동 참여에 힘입은 것이었음을 보이고 있다. 노동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가구소득 불평등의 추이를 결정하는 주요 동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 혹은 기타가구의 취업과 노동소득 획득이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강신욱(2012) 또한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는 이면에는 장기적인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해 다양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상 한계와 방법론상의 차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철희(2008)는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결자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병희·강신욱 외(2007)는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결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해당 연구에 국한하여 사용된 바, 이들 연구가 다루고 있는 이전 혹은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무엇보다 가구소득에 대한 가장 긴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경우 개인별 근로소득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노동시장의 변화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강신욱(2012)은 OECD(2011)에서 사용한 가구소득의 누적적 구성방식을 소득불평등 분석에 이용한 바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각 요인별 효과를 분석 할 때 다른 요인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엄밀히 통제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ourguignon et.al.(2008)의 방법을 이용하여 가구소득의 각 원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해함으로써, 가구소득 불평등의 다양한 요인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가구단위의 소득에 관한 정보와 보유 자산 및 부채 수준에 관한 정보를 연결시킬 미시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의 상호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크게 제약하여 왔다. 최근 들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되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 발표하는 패널자료들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자산 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장기적 상관관계를 분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되는 계층별 자산보유 실태에 대한 분석 역시 이러한 자료상의 제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선례를 남긴다는 의미를 찾을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한국의 가구소득 불평등의 장기적 심화경향에 주목하여,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또한 소득불평등 심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구의 지출 측면의 애로를 적자가구라는 대상에 주목하여 분석할 것이다. 장기적 경향에 주목한다는 본 연구의 목적상 이하의 분석에서는 가장 긴 장기시계열을 제공하는 가구소득 미시자료인 통계청 가계동향자료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특히 불평등의 심화가 급속

히 이루어진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 주목하되, 2008년 위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으로 비교시점을 한정하기 위해 주로 1998년과 2008년을 비교시점으로 삼을 것이다. 분석 대상 시점을 이와 같이 한정함으로써 인해 분석 대상 집단은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로 국한되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가구단위의 자산 및 부채보유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산보유실태와 관련된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1992년부터 최근 2012년까지의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장기적 추이를 개괄적으로 서술한 후,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인구집단별로 그리고 소득원천별로 요인분해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이때 인구집단은 주로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 집단을 의미한다. 요인분해 결과에 대한 동태적 비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한다.

3장에서는 가구소득의 불평등 및 그 변화를 초래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해가 시도된다. 우선 가구 가치분소득을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 구원의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사적·공적 이전소득, 조세, 그리고 사회보장부담금 등의 항목으로 구분한 후 각 항목별 소득결정 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각 소득원천별로 소득결정 요인의 계수값이 달라졌을 때를 상정한 가상적(counterfactual) 분포를 도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10년간의 소득불평등 심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2013년의 가구의 자산 및 부채보유 실태를 분석하고, 이것이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금융부채가 향후의 소득불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정할 것이다.

5장은 다시 1998년과 2008년의 비교라는 관점으로 돌아가, 가구소비 지출 규모가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의 실태와 특성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적자가구의 규모 및 분포는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하고, 특히 적자가구가 부족한 소득을 조달하기 위한 원천으로 무엇을 선택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전체 연구에 대한 요약과 정책적 함의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제1절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 개괄

제2절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의 집단별 요인분해

제3절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2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

제1절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의 개괄

1. 분석 대상과 방법

이 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추이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분석 대상을 1990년 이후로 한정된 것은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분석 대상 기간을 더 소급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의 불평등을 살펴볼 수 있으나, 일관된 표본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1990년 이후로 한정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이하 가계동향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가계동향자료는 1990년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2006년부터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어가 가구와 1인 가구도 표본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구소득 분배의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에 1인 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2006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소득불평등의 장기적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소득불평등의 변화가 두드러졌던 만큼 이 시기를 제외시킬 수 없다. 따라서 2장과 3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2인 이상 도시 거주 가구로 분석을 제한할 것이다. 물론 필요에 따라 2006년 이후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의 소득분배 동향도 언급할 것이다.

가계동향자료는 가구의 소득을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누고, 경상소득을 다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 사적)으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그 소득을 획득한 사람에 따라 소득원을 세분하여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원자료 상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임대소득을 재산소득으로 분류하였다. 이하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사적 이전소득의 합을 시장소득으로 지칭할 것이다. 또한 시장소득에다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후 경상조세 지출과 사회보장 부담금(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지출)을 뺀 값을 가처분소득으로 지칭할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한 금액을 노동소득으로 지칭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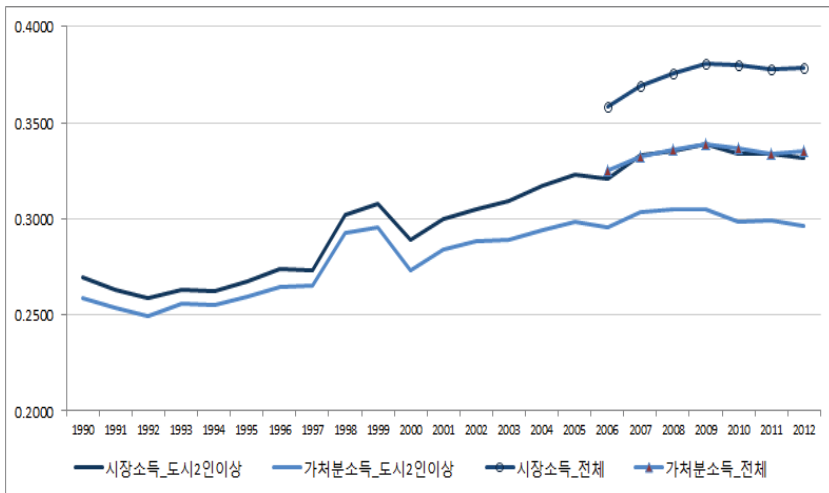
가구소득의 분배지표를 도출할 경우 가구원수의 차이가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주기 위해 가구 소득에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다. 균등화지수는 가구단위의 소득에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다만, 가구원 가운데 특정 개인, 특히 가구주나 배우자의 개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표본자료이니만큼 모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가중치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원자료 상의 (가구)가중치를 이용하였다. 일부 연구의 경우 분배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개인가중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듯이 가구주나 배우자 소득의 불평등을 분석할 때 가구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가구 단위의 소득을 이용하여 분배지표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 등장하는 각종 분배지표는 개인이 아닌 가구들 사이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1990년 이후 불평등 변화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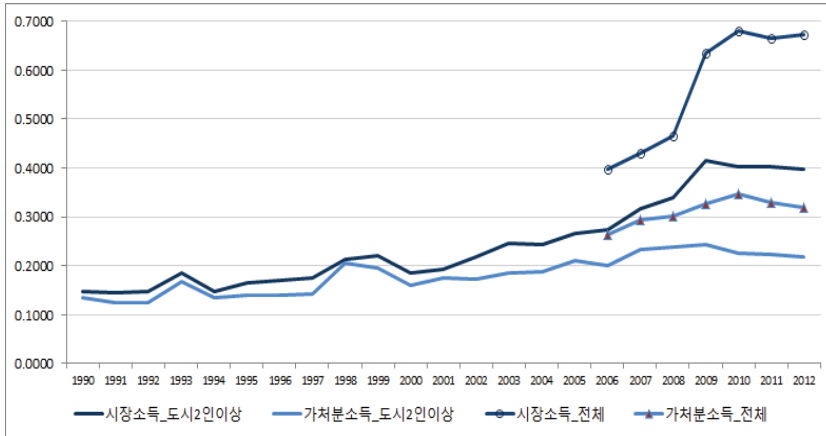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2-1]과 [그림 2-2]는 1990년 이후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사용된 불평등 지표는 지니계수와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이다. 두 지표 모두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평등의 수준은 2인 이상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1인 및 농어촌 가구를 포함했을 때 더욱 높아진다.

[그림 2-1] 가구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그림 2-2] 가구소득 대수편차평균(MLD)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2인 이상 도시가구 소득의 불평등 지표가 장기적으로 변화한 추이를 보면 불평등 심화 경향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던 몇 개의 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가 1998년인데, 이는 주지하다시피 19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여파가 가구소득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다소 완화되던 소득불평등은 2003년부터 다시 나빠지기 시작해서 2009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의 분배지표가 가장 나쁜 상태를 보인 데에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비교시점의 선택

1990년 이후의 장기적 변화 경향을 볼 때 소득분배의 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구간은 1997년부터 2009년 사이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두 번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1997년 위기를 이후로

진행된 경제구조의 변화(특히 노동시장의 변화)의 영향이 분배구조 악화에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장과 3장에서는 1998년과 2008년의 비교에 주목하고자 한다. 1997년의 경우 위기의 효과가 개별 가구의 소득 변화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2008년의 경제위기 영향이 2008년의 소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1990년대 말의 위기와 경제구조 변화가 2000년대 전반(全般)을 통해 소득분배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 주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선택에는 약 10년에 걸친 분배구조 악화의 요인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비용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인 가구의 비중 변화와 그것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의 [그림 2-1]과 [그림 2-2]에서 보듯이 2006년 이후의 시기를 보더라도 1인 및 농어촌 가구를 포함시켰을 때의 분배지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나쁘게 나타난다.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분배지표의 변화 속도도 1인 및 농어촌 가구를 포함시킨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빠르다. 2006년 이전의 시기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경우 불가피하게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악화의 구조적 원인을 찾는 데에는 장기적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대수편차 평균을 이용하여 각 집단들의 소득변화가 전체적인 불평등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각 집단이란 주로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각 소득 원천들(sources) 전체적인 불평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2절 가구소득 불평등의 집단별 요인분해

1. 가구주 특성별 소득격차

가구 소득에서 가구주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가구의 특성은 가구주의 인구학적,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집단 간에 존재하는 소득의 정태적, 동태적 격차는 가구소득의 불평등 심화 요인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여 준다.

아래의 <표 2-1>은 가구주의 성, 학력, 경제활동 상태, 연령대 등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각 집단의 비중과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연령대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만 구분하였다. 연령대를 좀 더 세분화할 수도 있으나 우선 고령화의 효과에 주목하여 가구주 연령 구분을 단순화하였다. 이 <표 2-1>에는 각 집단의 평균소득 뿐만 아니라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의 연평균 소득증가율도 제시하였다.

집단별 가구소득은 여성 가구에 비해 남성 가구가 높고 가구주의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높다. 또한 근로자, 자영자, 무직자 가구주의 순으로 가구소득이 높으며, 노인 가구에 비해 비노인 가구의 소득이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 소득의 우열은 1998년에 비해 2008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표 2-1〉 가구주 특성별 가구 가처분소득 비교

(단위: %, 원/월)

구분		1998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평균소득	비중	평균소득	
전체			939,171		1,695,472	6.1
가구주 성별	남성	85.5	956,301	81.6	1,761,960	6.3
	여성	14.5	838,324	18.4	1,399,756	5.3
학력	중졸미만	10.7	706,801	10.1	1,110,242	4.6
	중졸	13.9	785,504	10.3	1,361,361	5.7
	고졸	43.0	881,390	39.0	1,564,839	5.9
	전문대졸	8.7	978,262	12.3	1,696,784	5.7
	대졸이상	23.6	1,225,793	28.4	2,203,345	6.0
경제활동 상태	근로자	58.1	1,001,367	60.9	1,867,625	6.4
	자영자	29.4	968,716	25.7	1,634,564	5.4
	무직	12.5	581,175	13.5	1,033,386	5.9
연령	비노인	95.8	952,945	88.5	1,771,645	6.4
	노인	4.2	621,702	11.5	1,110,097	6.0

주: 소득은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값임

한편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우선 집단별 비중의 측면에서 여성가구주의 비중 증가와 전문대 및 대졸 가구주의 증가, 그리고 무직 가구주의 증가가 눈에 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변화는 노인가구의 비중이 10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한 점이다. 1998년이 경제위기 직후여서 고용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직가구의 비중이 근로자나 자영자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도 노인 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년간 연평균 소득증가율을 비교하더라도 집단간 격차가 확인된다. 남성가구가 여성가구에 비해, 고학력 가구가 저학력 가구에 비해 소득증

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구가 자영자 가구에 비해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약 1%p 높았는데, 자영자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무직가구의 소득증가율보다도 낮았다. 이는 가구주 사업소득의 증가율 저조와 무직가구의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 취업 증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노인가구와 비노인 가구의 소득증가율 격차도 약 0.4%p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았던 집단의 소득증가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집단의 소득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10년 사이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이렇게 집단 간의 소득격차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각 집단 내부에서도 집단의 구분에 고려되지 않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불평등 확대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절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 집단별 불평등 요인분해 방법

이 절에서는 Shorrocks(1982)의 방법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집단별로 요인분해할 것이다. 이때 소득불평등은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계열의 지표 가운데 하나인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을 이용할 것이다. 집단의 구분은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할 것이다.

Oxley et. al.(1997)에 따르면 Shorrocks(1982)의 분해방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 먼저 대수편차 평균은 식 (2-1)과 같이 표현된다.

$$MLD = \frac{1}{n} \sum_i \ln \left(\frac{\bar{Y}}{Y_i} \right) \quad (2-1)$$

여기서 n 은 전체 가구의 수이고 $\bar{Y}$ 는 가구 가처분 소득의 평균, 그리고 Y_i 는 i 번째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만일 전체 가구가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면 대수편차평균은 다시 식 (2-2)처럼 표현된다.

$$MLD = \sum_g w_g \cdot MLD_g + \sum_g w_g \cdot \ln \left(\frac{\bar{Y}}{Y_g} \right) \quad (2-2)$$

식 (2-2)에서 w_g 는 집단 g 의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고, MLD_g 는 집단 g 내부의 대수편차평균을, 그리고 Y_g 는 집단 g 의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이 식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각 집단의 내부 불평등에 대한 가중합으로써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에서 집단 내부의 불평등(within-group inequality)으로 설명되는 부분인 셈이다.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전체 가구소득 평균과 집단 g 의 가구소득 평균의 격차를 가중합한 것인데, 이는 전체 불평등에 대한 집단간 불평등(between-group inequality)의 기여도를 보여준다.

한편 식 (2-2)를 이용하여 두 시점(0기, t 기) 사이의 불평등 변화에 대해서도 요인분해를 할 수 있다. 즉 두 시점 사이의 MLD변화는 다음의 식 (2-3)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begin{aligned} \Delta MLD &= MLD^t - MLD^0 \\ &= \sum_g \bar{w}_g \cdot \Delta MLD_g + \sum_g \bar{w}_g \cdot \Delta \left(\frac{\bar{Y}_0}{Y_g} \right) \\ &\quad + \sum_g \overline{MLD}_g \cdot \Delta w_g + \sum_g \left(\ln \frac{\bar{Y}}{Y_g} \right) \cdot \Delta w_g + \sum_g \bar{w}_g \Delta \left(\ln \frac{\bar{Y}}{Y_0} \right) \end{aligned} \quad (2-3)$$

위 식에서 MLD^t 와 MLD^0 은 각각 0기와 t 기의 MLD 이다. ΔMLD 는 두 시기에 걸친 MLD의 변화를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ΔMLD_g 는 집단 g의 MLD 변화이다. 또한 $\overline{MLD}$ 는 두 시점 MLD의 평균이다. $\bar{Y}_0 = \sum_g w_g^0 Y_g^0$, 즉 집단별 비중이 0기의 상태로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t 기의 평균소득이다. $\bar{Y} = \sum_g w_g^t Y_g^t$, 즉 t 기의 평균소득이다. 식 (2-3) 우변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항목은 두 시기에 걸친 불평등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지시하여 준다.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항은 각 집단 내부의 불평등 변화이고 두 번째 항은 집단별 비중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집단 간 불평등의 변화 효과이다. 그리고 우변 세 번째 줄의 세 항은 집단 내 불평등이나 집단 간 불평등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집단별 비중의 변화 효과, 즉 집단구성의 변화효과이다. 특정 시점에서 불평등의 수준에 대한 각 요인의 기여와 두 시점 간 불평등 변화에 대한 각 요인의 변화는 모두 절대적인 기여도¹⁾와 상대적인 기여율²⁾로 표현될 수 있다.

3. 가구주 특성별 가구소득 불평등 요인분해

아래의 <표 2-2>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1998년과 2008년의 소득 불평등에 어떤 요인들이 기여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대수편차의 평균을 통해 측정한 불평등은 1998년 0.205에서 2008년 0.238로 증가했다. 각 해의 불평등에 대해 남성 내부의 불평등이 여성 내부의 불평등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나, 그 정도는 2008년으로 오면

1) 이때 각 요인별 기여도의 합은 전체 MLD(또는 MLD의 변화량)와 같게 된다.

2) 이때 각 요인별 기여율의 합은 100%가 된다.

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년간 집단 내 불평등의 기여율은 감소한 반면 집단 간 불평등의 기여율은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집단내 불평등의 기여율이 2008년에도 여전히 98%를 넘고 있어, 남녀 가구간의 격차는 전체 불평등에서 큰 설명력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2-2〉 가구주 성별에 따른 집단별 불평등 기여도

연도	집단	비중 (%)	집단별 MLD	각집단의 기여율(%)	집단내 불평등의 기여율(%)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
1998	전체	100.0	0.2051	100.0	99.5	0.5
	남성	85.5	0.1959	74.1		
	여성	14.5	0.2519	25.9		
2008	전체	100.0	0.2383	100.0	98.4	1.6
	남성	81.6	0.2337	66.9		
	여성	18.4	0.2381	33.1		

한편 아래의 〈표 2-3〉은 10년간의 소득불평등 심화에 대한 남녀 가구간의 기여율을 보여준다. 위의 〈표 2-2〉가 특정 시점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정태적 기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아래의 〈표 2-3〉은 10년간의 변화에 대한 동태적 기여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10년간 MLD가 0.0332 증가한 데 대해(소득불평등이 심해진 데 대해) 남성 가구의 기여율은 22.2인 반면 여성가구의 기여율은 77.8%로 훨씬 높다. 여성가구의 비율 증가(구성비의 변화)는 불평등을 낮추는 데 기여한 반면 각 집단내의 불평등 변화는 전체 불평등 심화의 88.3%를 설명하고 있었고, 남녀 가구주 간의 불평등 심화는 전체 불평등 심화의 11.9%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

〈표 2-3〉 1998~2008년간 불평등 변화에 대한 가구주 성별 요인분해

집단	MLD 변화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율(%)			
		집단내 불평등변화	집단간 불평등변화	구성비 변화	집단별 기여율	집단내 불평등변화	집단간 불평등변화	구성비 변화
남성	0.0332	0.0316	-0.0102	-0.0140	22.2	88.3	11.9	-0.2
여성		-0.0023	0.0142	0.0139	77.8			

위의 표와 마찬가지로 아래의 〈표 2-4〉 가구주의 연령대에 따라 비노인 가구와 노인가구를 구분한 후 각 집단의 연도별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보여준다.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에 대한 노인가구의 기여율도 3배 13.9%에서 43.3%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노인과 비노인 가구간의 집단 간 격차가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율도 1.6%에서 4.1%로 증가하였다.

〈표 2-4〉 가구주 연령에 따른 집단별 불평등 기여도

연도	집단	비중 (%)	집단별 MLD	각집단의 기여율(%)	집단내 불평등의 기여율(%)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
1998	전체	100.0	0.2051	100.0	98.4	1.6
	65세미만	95.8	0.1988	86.1		
	65세이상	4.2	0.2723	13.9		
2008	전체	100.0	0.2383	100.0	95.9	4.1
	65세미만	88.5	0.1966	56.7		
	65세이상	11.5	0.4728	43.3		

10년 간의 불평등 심화 과정에서 고령화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까? 아래의 〈표 2-5〉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비노인 가구는 소득분배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한 데 비해 노인가구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체 불평

등 심화의 52.6%는 노인가구의 비중이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불평등에 미친 고령화 효과가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표 2-5〉 1998~2008년간 불평등 변화에 대한 가구주 연령대별 요인분해

집단	MLD 변화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율(%)			
		집단내 불평등변화	집단간 불평등변화	구성비 변화	집단별 기여율	집단내 불평등변화	집단간 불평등변화	구성비 변화
65세미만	0.0332	-0.0021	-0.0010	-0.0385	-125.1	41.1	6.2	52.6
65세이상		0.0157	0.0031	0.0559	225.1			

〈표 2-6〉과 〈표 2-7〉은 가구주의 학력을 기준으로 구분한 각 집단이 불평등에 대해 정태적, 동태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각 연도의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구성비가 가장 높은 고졸 가구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가구가 전체 불평등에 미친 영향이 음수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학력에 따라 구분된 집단 내 불평등이 집단간 불평등에 비해 더 큰 설명력을 갖고 있지만, 집단 내 불평등의 설명력은 다른 기준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였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표 2-6〉 가구주 학력에 따른 집단별 불평등 기여도

연도	집단	비중 (%)	집단별 MLD	각집단의 기여율(%)	집단내 불평등의 기여율(%)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
1998	전체	100.0	0.2051	100.0	92.1	7.9
	중졸미만	10.7	0.2353	27.1		
	중졸	13.9	0.2422	28.6		
	고졸	43.0	0.1596	46.8		
	전문대졸	8.7	0.2047	7.0		
	대졸이상	23.6	0.1842	-9.5		
2008	전체	100.0	0.2383	100.0	90.7	9.3
	중졸미만	10.1	0.2478	28.4		
	중졸	10.3	0.2150	18.7		
	고졸	39.0	0.2241	49.8		
	전문대졸	12.3	0.1381	7.1		
	대졸이상	28.4	0.2284	-4.0		

한편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력 구성의 변화는 10년 동안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다. 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집단은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인 가구였고 다음으로 대졸 가구였다. 반대로 중졸 가구의 경우 소득불평등을 완화 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요컨대 가구주의 고학력화가 소득불평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다는 고학력 가구주 내의 불평등 심화가 전체 가구 소득의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2-7〉 1998~2008년간 불평등 변화에 대한 가구주 학력별 요인분해

집단	MLD 변화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율(%)			
		집단내 불평등변화	집단간 불평등변화	구성비 변화	집단별 기여율	집단내 불평등변화	집단간 불평등변화	구성비 변화
중졸미만	0.0332	0.0013	0.0116	-0.0010	36.0	87.3	13.5	-0.9
중졸		-0.0033	0.0017	-0.0124	-42.2			
고졸		0.0265	-0.0043	0.0006	68.8			
전문대졸		-0.0070	0.0014	0.0082	7.7			
대졸이상		0.0115	-0.0059	0.0043	29.8			

마지막으로 〈표 2-8〉과 〈표 2-9〉는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별 구분에 따른 집단별 기여도를 보여준다. 각 시점별로 불평등에 대해서는 무직가구가 70%가 넘는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2008년에는 자영자 가구의 기여율이 근로자 가구의 기여율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표 2-8〉 가구주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집단별 불평등 기여도

연도	집단	비중 (%)	집단별 MLD	각집단의 기여율(%)	집단내 불평등의 기여율(%)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
1998	전체	100.0	0.2051	100.0	93.3	6.7
	근로자	58.1	0.1204	15.9		
	자영자	29.4	0.1270	13.8		
	무직	12.5	0.6720	70.3		
2008	전체	100.0	0.2383	100.0	92.8	7.2
	근로자	60.9	0.1293	8.3		
	자영자	25.7	0.1540	20.5		
	무직	13.5	0.7645	71.2		

1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데 대해서도 역시 무직가구가 기여한 비율이 70% 이상이였다. 자영자 가구와 달리 근로자 가구는 소득분배를 오히려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근로자, 자영자, 무직가구의 구성비 변화는 전체 불평등 심화의 2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집단내 불평등 변화의 기여율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가구주의 학력이나 성별 구성비 변화가 미친 영향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표 2-9〉 1998~2008년간 불평등 변화에 대한 가구주 경제활동상태별 요인분해

집단	MLD 변화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율(%)			
		집단내 불평등변화	집단간 불평등변화	구성비 변화	집단별 기여율	집단내 불평등변화	집단간 불평등변화	구성비 변화
근로자	0.0332	0.0053	-0.0197	0.0015	-38.8	74.5	2.2	23.3
자영자		0.0074	0.0185	-0.0052	62.4			
무직		0.0120	0.0019	0.0114	76.3			

이상의 내용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해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데에는 집단 내 소득불평등이 집단간 소득불평등에 비해 압도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집단간 소득불평등의 기여율은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어떤 기준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던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한편 소득불평등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기여를 살펴보면 고령화 효과와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변화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별 분해의 결과가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집단별 분해 결과를 보면 집단 내부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수준을 설명하는 데 압도적인 설명력을 지니고 있

으며, 불평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집단내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깊이 있는 검토의 한 가지 방법은 집단을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회귀분석을 통한 불평등 분해 방식을 통해 충족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법은 3장에서 시도될 것이다. 그 이전에 소득불평등을 분해하는 다른 방법, 즉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해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살펴보자.

제3절 가구소득 불평등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1.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방법

이 절에서는 Lerman and Yitzhaki(1985)의 방법에 따라 가구 가처분 소득을 구성하는 각 소득원천들이 가구소득의 불평등(지니계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들에 따르면 지니계수(G)로 표현되는 소득불평등은 다음 식 (2-4)과 같이 표현된다.

$$G = \sum_k S_k G_k R_k \quad (2-4)$$

여기서 S_k 는 가구별 전체 소득에서 특정 소득원천 k 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G_k 는 소득원천 k 의 지니계수이다. 우변의 마지막 항 R_k 는 소득원천 k 와 전체 소득의 순위 사이의 상관계수이다. 이 세 항의 곱은 전체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각 소득원천 k 의 절대적 기여분이 되고, 이를 다시 전체소득 지니계수 G 로 나누면 각 소득원천 k 의 상대적 기여율이 된다.

본 분석에서 원천별 소득의 합으로 간주되는 가처분소득은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것이다. 가구 경상소득은 다시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그리고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노동소득은 그것을 획득한 가구원이 누군가에 따라 가구주, 배우자, 그리고 기타(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의 노동소득으로 구분된다.

한편 소득원천 k 의 미세한 변화가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즉 불평등에 대한 소득원천별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rac{\frac{\partial G}{\partial e}}{G} = \frac{S_k G_k R_k}{G} - S_k \quad (2-5)$$

즉 소득원천 k 의 변화에 대한 전체 소득 불평등의 변화 탄력성은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k 의 상대적 기여율에서 k 의 비중을 뺀 값과 같게 된다.

2.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변화

아래의 <표 2-10>과 <표 2-11>은 각각 1998년과 2008년의 가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에 대한 각 소득원천의 기여도를 보여준다. 각 표의 첫 번째 열은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각 원천별 소득의 비중(s_k)을 보여준다.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처럼 소득구성 시 차감되는 항목의 비중은 음수로 표현되어 있다. 표의 두 번째 열은 각 원천별 소득의 지니계수(G_k), 세 번째 열은 지니 상관계수(R_k)이다. 지니집중계수는 G_k 와 R_k 의 곱이며, 각 소득원천의 절대적 기여는 s_k , G_k 와 R_k 의 곱이다.

먼저 1998년의 소득원천별 구성을 보면 가구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구주의 노동소득임을 알 수 있다. 가구주 노동소득은 약 77%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배우자 노동소득, 기타가구원 노동소득이다. 이 세가지 원천의 합은 가구 가처분 소득의 약 96%를 이룬다. 한편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은 가구소득에서 약 -3%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원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각 원천의 비중도 중요하지만, 각 소득원천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소득원천이 전체 가구소득의 순위와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여주는 것이 상대적 기여율이다. <표 2-10>에 따르면 가구주 소득은 불평등의 약 75%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배우자 노동소득은 약 16%를 설명하고 있었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기여율

은 1% 미만으로 작은 편이었으나, 그 부호가 양수라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즉 공적, 사적 이전소득이 정도는 작지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1998년이 위기 발생 직후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은 각각 소득불평등을 약 5%, 2.5%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1998년 가구 가처분소득의 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소득 원천	비중 (S_k)	지니계수 (G_k)	지니 상관계수 (R_k)	지니 집중계수 ($G_k R_k$)	절대적 기여 ($S_k G_k R_k$)	상대적 기여 ($S_k G_k R_k / G$)	탄력성
가구주 노동소득	0.765	0.374	0.788	0.294	0.225	0.748	-0.017
배우자 노동소득	0.112	0.808	0.541	0.437	0.049	0.163	0.051
기타가구원 노동소득	0.085	0.877	0.479	0.420	0.036	0.119	0.034
재산소득	0.032	0.914	0.325	0.297	0.010	0.031	0.000
사적 이전소득	0.053	0.878	0.039	0.034	0.002	0.006	-0.047
공적 이전소득	0.012	0.952	0.227	0.216	0.003	0.009	-0.003
조세	-0.032	-0.680	-0.702	0.478	-0.015	-0.051	-0.019
사회보장 부담금	-0.028	-0.458	-0.602	0.276	-0.008	-0.025	0.002
계	1.000	0.301	1.000	0.301	0.301	1.000	0.000

2008년의 경우 소득원천별 기여율은 1998년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가구주 노동소득의 경우 불평등에 대한 기여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탄력성이 -에서 +로 부호가 바뀌었다. 즉 1998년에는 가구주 노동소득의 증가가 가구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2008년에는 반대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배우자와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노동소득의 경우 상대적 기여율과 탄력성 모두 1998년에 비해 2008년에는 증가하였다. 기타 가구원 노동소득은 상대적 기여율은 증가하였고 탄력성은 다소 감소하였다. 재산소득의 기여율은 1998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재산소득의 탄력성은 1998년에는 0에 가까웠으나 2008년에는 미약하지만 음(-)의 부호를 띠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표 2-11〉 2008년 가구 가처분소득의 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소득 원천	비중 (S_k)	지니계수 (G_k)	지니 상관계수 (R_k)	지니 집중계수 ($G_k R_k$)	절대적 기여 ($S_k G_k R_k$)	상대적 기여 ($S_k G_k R_k / G$)	탄력성
가구주 노동소득	0.723	0.423	0.775	0.328	0.237	0.749	0.026
배우자 노동소득	0.140	0.798	0.628	0.501	0.070	0.222	0.082
기타가구원 노동소득	0.106	0.865	0.453	0.392	0.041	0.131	0.025
재산소득	0.027	0.942	0.234	0.220	0.006	0.019	-0.008
사적 이전소득	0.052	0.876	-0.005	-0.005	0.000	-0.001	-0.053
공적 이전소득	0.041	0.840	-0.018	-0.015	-0.001	-0.002	-0.043
조세	-0.035	-0.708	-0.783	0.554	-0.019	-0.060	-0.026
사회보장 부담금	-0.054	-0.467	-0.712	0.332	-0.018	-0.057	-0.003
계	1.000	0.317	1.000	0.317	0.317	1.000	0.000

2008의 가구소득 원천별 분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실은 1998년과는 달리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이 미약하나마 불평등을 완

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공적이전소득이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의 기여율 변화는 조세나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소득 기여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탄력성이 증가하는 사실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3장

가구소득 불평등의 원천별 요인분해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변화

제3절 가구 비노동소득·조세·사회보장부담 불평등의 변화

3

가구소득 불평등의 원천별 << 요인분해

제1절 분석방법

두 시점간의 가구소득 불평등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시점간의 실제 가구소득 분포와 여러가지 가상의 분포를 비교하고자 한다. Bourguignon, Ferreira, and Leite(2008)가 1999년 미국과 브라질의 가구소득 분포가 다른 요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 방법을 토대로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 분포 변화의 가격효과를 원천별로 추정한다.

Oaxaca-Blinder(OB) 요인분해³⁾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따르면 두 집단(A,B)간의 평균소득($\bar{y}^A, \bar{y}^B$)의 차이는 두 집단의 인적특성($\bar{x}^A, \bar{x}^B$)의 차이와 인적특성에 대한 가격 혹은 수익률(b^A, b^B)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bar{y}^A - \bar{y}^B = \bar{x}^A(b^A - b^B) + (\bar{x}^A - \bar{x}^B)b^B$ 와 같은 수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때 식 우변의 첫 번째 항이 두 집단간 인적특성에 대한 보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격효과(price effect)를, 두 번째 항이 두 집단간 인적특성 차이를 보여주는 특성효과(characteristic effect) 또는 부존효과(endowment effect, 보유 혹은 소유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한 집단의 인적특성($\bar{x}^B$)에 또 다른 집단의 가격(b^A)을 지불하는 가상적인 소득분포를 실제 분포와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소득 원천 또는 특성 인적특성에 대한 수익률(price)이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3) Oaxaca(1973) 및 Blinder(1973) 참조.

Bourguignon et.al.(2008)은 이러한 방법에서 더 나아가, 가구소득 변화의 가격효과와 특성효과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성변수(설명변수)군의 계수값만을 이용하여 부분적인 가격효과를 산출한다. 또한 소득 추정식에서 도출된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가상분포(counterfactual distribution)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잔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통해 가상 분포를 도출하기도 한다. 이 장의 분석은 이와 같은 Bourguignon et. al.(2005, 2008)의 방법을 차용할 것인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의 전체 가처분소득은 다음과 같이 원천별 소득의 합으로 구성된다.

$$y_h = \sum_k y_{hk} \quad (3-1)$$

즉, 어떤 가구 h의 총 가처분소득은 각 원천별 소득 y_k 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각 원천별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정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y_{hk} = \alpha_h + x_{1h}\beta_1 + x_{2h}\beta_2 + \dots + \epsilon_h \text{ for } h = 1, 2, \dots, N \quad (3-2)$$

여기서 각 가구의 원천별 소득(y_{hk})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구별 특성($x_{1k}, x_{2k}, \dots$)은 가구마다, 시점마다 다르다. 이러한 추정식을 통해 도출되는 특정 시점(예컨대 1998년)의 추정계수($\hat{\beta}_i^t$)를 다른 시점(예컨대 2008년)의 가구별 특성(x_i^t)에 적용하면 소득원천 y_k 에 대한 가상의 분포(counterfactual distribution)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기준년도 상수항에 대한 추정치($\hat{\alpha}^{t'}$)와 각 가구별 특성에 대한 추정계수($\hat{\beta}_1^{t'}, \hat{\beta}_2^{t'}, \dots$)만을 비교연도의 가구별 특성($x_1^t, x_2^t, \dots$)에 적용할 수도 있고, 잔차(residual)의 분포도 기준년도와 같이 만들 수 있다. 또한 전체 추정계수 중 일부($\hat{\beta}_1^{t'}$ 또는 $\hat{\beta}_2^{t'}, \dots$)만을 가구별 특성의 일부 항목(x_1^t 또는 $x_2^t \dots$)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출되는 가상적 분포는 특정 설명변수(군)의 추정계수(예,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관련 요인)만의 가격효과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준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첫째, 먼저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을 구성하는 원천별 소득을 가구주 노동소득, 배우자 노동소득, 기타가구원 노동소득, 가구 재산소득, 가구 사적이전소득, 가구 공적이전소득, 가구 조세부담, 가구 사회보장부담금 등 8개로 구분한다. 이 8개 원천에 대해서 각각의 추정 모형을 제시한다.

둘째, 각 원천별 소득에 대해 잔차분포의 변화까지를 고려한 가상적 소득분포를 도출하여 가격효과와 특성효과를 분해한다. 즉 OB 요인분해에서 가구 특성의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부분을 기준년도의 추정계수와 잔차분포를 적용하여 추정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가상소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y_h^{t \rightarrow t'} = \hat{\alpha}_{t'} + x_{ti} \hat{\beta}_{t'} + \hat{\epsilon}_{ti} (\hat{\sigma}_{\epsilon}^{t'} / \hat{\sigma}_{\epsilon}^t) \quad (3-3)$$

여기서 잔차분포를 기준년도(t')와 같이 바꾸기 위해서는 두 시점간 잔차의 순위보존(rank preserving) - t 시점에 n 번째 잔차는 t' 시점에도 n 번째 있을 것 - 을 가정한다. 이를 위해 두 시점 간 잔차항 표준편차의 비율($\hat{\sigma}_{\epsilon}^{t'} / \hat{\sigma}_{\epsilon}^t$)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가상의 소득분포를 도출할 수 있

다(Bourguignon et al., 2005). 그런 다음 기준년도의 원 소득분포를 이용한 지니계수와 가상적 분포를 이용한 지니계수를 비교함으로써 가격효과가 소득불평등의 심화 또는 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계는 두 번째 단계와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하되, 잔차분포의 변화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부 특성요인에 대한 추정계수만을 변화시킴으로써 가상적 분포를 도출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때 각 원천별 소득의 추정 모형에 제시된 모든 설명변수군에 대해 순차적으로 가상분포를 구한 후, 각각의 가상적 소득분포에서 도출되는 지니계수들과 기준연도의 추정소득 분포로부터 도출되는 지니계수를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인들이 지니계수를 상승(또는 하락)시키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할 것이다.

제2절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변화

1. 가구주 특성별 노동소득의 변화

가구주의 노동소득은 가구주가 지닌 인적자본 특성에 따라, 그리고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아래의 <표 3-1>은 1998년과 2008년의 가구주 노동소득을 가구주 특성에 따라 구분된 집단별로 비교하고 있다. 우선 전체 가구주의 평균소득은 1998년에 약 월 135만원에서 2008년에는 223만원으로 연평균 약 5.1%의 속도로 증가했다. 반면 가구주 연령 수준도 높아져 평균연령이 1998년에는 42.3세에서 2008년에는 47.7세로 증가했다. 10년간 평균연령이 5세 이상 증가한 것이다.

남성가구주의 노동소득은 여성가구주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8년에 비해 2008년에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남성가구주와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남성가구주의 노동소득은 연평균 약 5.4% 증가한데 비해 여성 가구주의 노동소득은 4.9%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소득증가율 격차는 다른 구분에서도 확인된다. 학력에 따라 가구주를 구분하였을 때, 1998년과 2008년 모두 저학력 가구주는 고학력 가구주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다. 또한 두 시점 사이의 소득증가율 또한 고학력 가구주에 비해 낮았다. 예컨대 중졸 미만 학력 가구주의 노동소득은 10년간 연평균 1.5% 증가한데 비해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가구주의 노동소득은 5.4% 증가했다. 이 두 시기에 평균적인 학력은 높아졌지만, 학력간 노동소득 격차는 더 심화된 것이다.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경우 노동소득 증가율의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무직가구주의 노동소득은 10년간 연평균 4.7%의 속도로 감소한 데 비해 자영자 가구주는 3.7% 증가, 근로자 가구주는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가구주 특성별 구성과 노동소득 비교

(단위: %, 원/월)

	1998		2008		연평균 증가율(%)
	비율	평균소득	비율	평균소득	
평균소득		1,350,623		2,230,357	5.1
평균연령(세)		42.3		47.7	
남성	85.5	1,460,270	81.6	2,475,167	5.4
여성	14.5	705,111	18.4	1,141,537	4.9
중졸미만	10.7	679,840	10.1	785,561	1.5
중졸	13.9	1,036,855	10.3	1,280,917	2.1
고졸	43.0	1,290,836	39.0	2,035,549	4.7
전문대	8.7	1,395,345	12.3	2,428,745	5.7
대졸이상	23.6	1,931,946	28.4	3,269,461	5.4
근로자	58.1	1,511,661	60.9	2,710,904	6.0
자영자	29.4	1,535,791	25.7	2,205,803	3.7
무직	12.5	168,566	13.5	104,693	-4.7

이와 같이 1998년과 2008년 사이에 가구주의 집단별 노동소득 증가율 격차가 존재하며, 취약집단의 소득증가율이 오히려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가구주 노동소득의 불평등의 확대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2. 가구주 노동소득 추정모형 및 결과

가구주 노동소득은 가구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으로, 가계부에 기록되는 월급여 가운데 가구주의 급여를 말한다. 가구주 노동소득 방정식의 종속변수는 가구주 노동소득의 로그값으로 노동소득이 없거나 0보

다 작은 경우 로그값에 0을 넣었다. 이는 샘플에서 가구주가 없는 가구는 없기 때문에, 가구주 노동소득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가구주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까닭이다. 따라서 가구주 노동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할 때는 취업 가구주뿐 아니라 실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가구주도 포함한다.

가구주 노동소득의 설명변수는 가구주의 성별과 나이(나이 제곱 포함),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종사상 지위이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중졸이하를 기준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4년제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한 경우 2년제 대학 졸업자로 간주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무직을 기준으로 근로자, 자영자로 구분하였다.

1998년과 2008년 가구주 노동소득 방정식 추정 결과가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가구주 성별과 나이, 종사상 지위는 일반적인 임금방정식에서 보는 바와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다.

두 해 모두 여성 가구주는 남성 가구주에 비해 60% 가량 적은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큰 소득격차는 <표 3-1>의 기초통계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두 해 모두 여성 가구주의 평균 노동소득은 남성 가구주의 평균 노동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되 증가폭은 작아지는 역 U자형의 관계를 보여준다.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의 추정계수는 다소 의아한 결과를 보여준다. 1998년에는 예상대로 초등 이하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8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계가 유의하지 않고 크기도 크지 않지만 방향과 유의성에 있어 여타 소득방정식에서 교육수준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종사상 지위의 영향을 보면 무직 혹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주에 비해 근로자 혹은 자영자일 경우 약 6~7배의 소득을 번다. 이러한 소득격차는 2008년 더욱 커지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정도의 영향이 종사상 지위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두 해의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추이를 보면 1998년에 비해 2008년 사업소득은 소득구간별로 매우 유사한 소득증가를 보이는 반면 높은 소득구간이 될수록 근로소득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며, 전체 근로가구주 가운데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1998년 35%에서 2008년 46%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표 3-2〉 가구주 노동소득 방정식 추정 결과

설명변수	1998년	2008년
성별 - 여성가구주	-0.631*** (-6.19)	-0.613*** (-6.04)
연령	0.198*** (9.25)	0.202*** (-7.64)
연령 제곱	-0.00230*** (-9.35)	-0.00238*** (-8.35)
가구주 교육 (기준= 중졸미만)		
중졸	0.016 (0.12)	-0.0498 (-0.26)
고졸	0.205 (1.70)	-0.237 (-1.40)
전문대졸	0.0278 (0.18)	-0.244 (-1.17)
대졸이상	0.448*** (3.58)	-0.0192 (-0.11)
가구주 종사상 지위 (기준= 무직)		
근로자	6.206*** (30.14)	7.802*** (30.32)
자영자	6.207*** (29.85)	7.605*** (29.44)
상수항	3.702*** (8.59)	2.975*** (4.95)
N	10,301	7,470
adj. R-sq	0.585	0.696

자료: 통계청, 1998년, 2008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3.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 요인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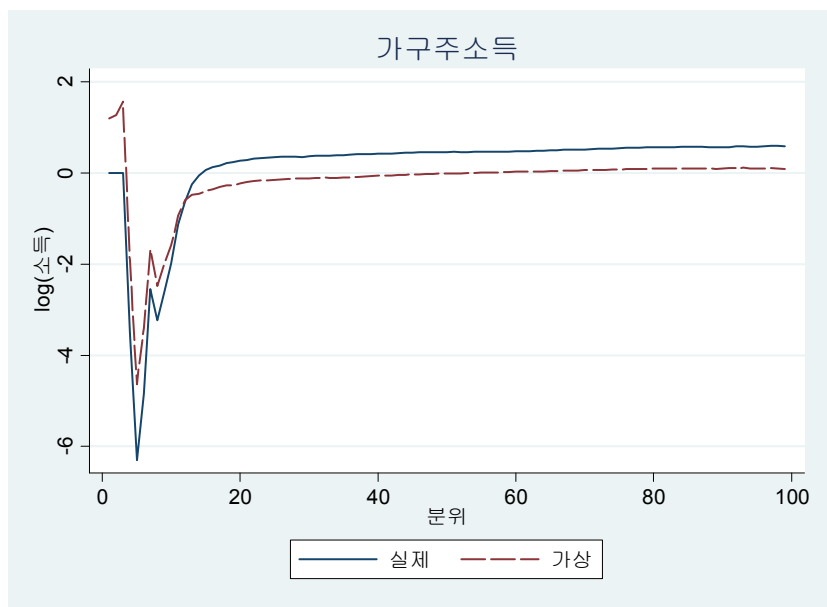
아래의 〈표 3-3〉은 1998년과 2008년의 가구주 소득 로그값의 지니계수(A, B)와 2008년 가구주 인적 특성에 1998년 가구주 노동소득 계수와 잔차분포를 적용한 2008년의 가상분포의 지니계수(C),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구주 노동소득 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2008년과 2008년 가상분포의 불평등도 차이(가격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3-1] 또한 1998년과

2008년 분포의 분위별 로그소득변화(실선)와 1998년과 2008년 가상분포의 분위별 로그소득변화(점선)를 보여준다.

〈표 3-3〉 가구주 노동소득 가상 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1998 (A)	2008 (B)	2008년 가상분포 (C)	가격효과 ((B)-(C))
지니계수	0.0799	0.1039	0.0938	0.0101

[그림 3-1]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가구주 노동소득 변화



불평등도를 측정한 〈표 3-3〉의 지니계수와 각 분위별 소득증감을 보여주는 [그림 3-1]을 동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98년과 2008년 가구주 노동소득의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로그노동

소득의 지니계수가 0.024만큼 증가하여 2008년 불평등도가 훨씬 크다. 그림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 심화는 전체 가구주 노동소득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2분위까지의 최저소득계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고 그 외 모든 분위에서 높은 분위로 갈수록 소득증가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어느 해보다 실업률이 높았고 2008년에는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을 유지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저소득계층의 소득감소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에 응답한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직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노동소득이 0으로 나타나는 가구주 범위는 2008년이 더욱 넓게 나타나 최저소득계층의 소득감소를 설명한다. 그러나 최저소득분위 외에서도 우상향하는 소득변화 곡선, 그리고 최저소득분위에서는 소득이 대체로 감소하고 (0점 아래), 그 외에서는 증가했다는 점, 이 모든 사실이 2008년의 불평등도 증가를 뒷받침한다.

실제의 2008년과 가상의 2008년의 가구주 노동소득 분포를 비교했을 때, 2008년 가상분포의 지니계수 값이 작다는 사실로부터 2008년의 소득방정식이 1998년과 같았다면 불평등이 약간 완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 3-1]에서 가상의 2008년과 1998년의 차이를 보면 실제보다 최저소득계층의 가구주 소득은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적고 그 외의 분위에서는 높은 분위로 갈수록 소득 증가폭이 커지긴 하지만 1998년에 비해 거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2008년의 가상과 같은 상황이라면 실제보다 최저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고, 중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2008년보다 불평등이 완화된다.

이를 <표 3-2>의 소득방정식 추정 결과를 이용해 해석하면 1998년에는 가구주 종사상 지위로 인한 소득격차가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구주 가운데 무직자, 근로자, 자영자의 구성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2008년 근로자라는 종사상 지위가 가지는 프리미엄은 크게 증가했고, 기초통계량으로 본 2008년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자영자의 1.25배에 달한다. 전체 가구주 가운데 두 해 모두 약 14%에 달하는 무직자가 노동시장을 떠나며 얻은 소액의 소득 역시 2008년에 비해 1998년이 훨씬 크다. 또한 나이-노동소득 곡선도 2008에 더욱 가파르게 나타난다. 종합해볼 때 소득방정식 추정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종사상 지위와 나이 등의 주요변수의 계수가 2008년 크게 증가하면서 불평등도를 높인 것으로 보이므로 2008년에 1998년의 소득구조가 적용되었다면 가구주의 소득 불평등도는 실제 악화된 것보다 41.7% 정도 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위의 <표 3-2>에 제시된 가구주 노동소득 결정모형을 바탕으로,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은 무엇이고 각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아래의 <표 3-4>에서 원소득 지니계수란 2008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 따라 추정한 가구주 로그노동소득의 지니계수이다. 위의 가구주 노동소득 결정모형에 따라 추정된 소득의 지니계수는 0.0921이다.

2008년의 소득추정식에다 1998년의 소득추정식에서 도출된 계수값들을 차례로 대입함으로써 가상적인 지니계수들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의 추정식에다 1998년의 추정모형에서 성별효과(여성가구주 효과)의 계수값을 대입하면 0.0923이란 가상적 지니계수를 얻을 수 있다. 이는 2008년의 가구주 특성을 유지하면서 가구주 성별에 따른 격차가 1998년의 상태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지니계수이다. 이 가상적 지니계수 0.0923은 2008년의 추정소득의 지니계수 0.092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의 성별

노동소득 격차가 1998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1998년의 성별 노동소득 격차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2008년의 노동소득 지니계수는 더 악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3-4〉 2008년 가구주 노동소득(로그)의 불평등 심화의 요인별 분해

	2008년		2008년 가상치(1998년 추정계수 적용)						1998년 추정소득
	원소득	추정 소득	상수항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모두 적용	
지니계수	0.1039	0.0921	0.0874	0.0923	0.0901	0.0931	0.0868	0.0823	0.0700
변화율(%)		0.0	-5.2	0.2	-2.2	1.0	-5.8	-10.7	-24.0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요인들의 추정계수를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가상적인 지니계수를 추정한 것이 위의 〈표 3-4〉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연령과 종사상 지위, 그리고 상수항의 1998년 추정 계수값을 대입할 경우 2008년의 지니계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의 1998년 계수값을 대입하면 지니계수는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수항을 포함하여 모든 추정계수를 1998년의 값으로 대입할 경우 지니계수는 약 10.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2008년의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이 1998년에 비해 심화된 데에는 종사상 지위와 연령구성 변화, 그리고 설명요인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항목들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서도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계수 변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사상 지위의 효과는 연령 효과에 비해 약 2.6배에 달하는 강력한 작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배우자 특성별 노동소득의 변화

배우자의 특성별 노동소득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취업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분포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3-5>는 1998년과 2008년 각각의 유배우자 가구 및 배우자가 취업한 가구의 비중을 보여준다. 이때 취업배우자는 배우자의 노동소득이 존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3-5> 배우자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

(단위: %)

	1998년	2008년
배우자가 있는 가구	89.7	86.7
취업 배우자가 있는 가구 (배우자 있는 가구 중)	88.6	91.0
(전체 가구 중)	79.5	78.9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1998년에 비해 2008년에 감소하였으나, 배우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배우자가 취업한 가구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다. 배우자가 취업한 가구에 국한하여 취업배우자의 특성별 평균 노동소득을 비교한 것이 아래의 <표 3-6>이다.

〈표 3-6〉 배우자의 특성별 구성과 노동소득 비교(배우자 취업가구)

(단위: %, 원/월)

		1998		2008		연평균 증가율
		비율	평균소득	비율	평균소득	
본인 평균소득			249,605		548,213	8.2
가구주 평균소득			1,454,414		2,501,271	5.6
연령(세)			39.3		44.7	
성별	남성	8.3	202,258	11.1	359,611	5.9
	여성	91.7	253,901	89.0	571,643	8.5
학력	중졸미만	13.3	198,618	11.1	207,882	0.5
	중졸	18.7	232,984	11.5	348,013	4.1
	고졸	47.8	221,959	43.3	506,601	8.6
	전문대	6.5	294,060	11.3	664,283	8.5
	대졸	10.4	499,382	18.2	1,024,183	7.4
	무응답,기타	3.3	78,168	4.6	98,638	2.4
6세미만자녀	무	63.8	278,622	76.9	548,863	7.0
	유	36.3	198,584	23.1	546,049	10.6
18세미만 자녀수(명)	0	28.7	259,591	38.5	434,536	5.3
	1	24.2	257,019	23.1	592,531	8.7
	2	41.5	242,344	32.3	660,794	10.6
	3	5.4	224,861	5.3	480,447	7.9
가구주 학력	중졸미만	9.2	197,028	8.3	214,553	0.9
	중졸	13.8	216,364	9.7	347,557	4.9
	고졸	44.0	212,177	40.0	450,640	7.8
	전문대	8.5	254,199	11.8	546,116	7.9
	대졸	24.6	353,156	30.3	832,939	9.0

위 〈표 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우자의 특성별로 평균 노동소득의 수준이 차이남은 물론 10년간의 소득증가율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취업 배우자의 구성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가구주의 구성상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 배우자의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소득증가율은 남성 배우자에 비해 높았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배우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소득 증가율에 있어서도 저학력 배우자보다는 고졸 이상 학력을 지닌 배우자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취업 배우자 가운데에는 6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배우자의 비중이 높았고 평균소득수준 또한 높았다. 하지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배우자의 소득증가율이 높아 2008년의 경우에는 6세미만 자녀의 유무에 따른 배우자 소득격차는 미세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18세 미만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2008년의 경우 2명의 자녀를 둔 배우자의 소득이 가장 높았고 10년간 소득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할 때 고학력 가구주의 배우자일수록 노동소득이 높았고, 소득 증가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는 10년간의 소득증가율이 거의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 배우자에 국한하여 볼 때 이른바 동류혼 assortive mating 경향을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써, 가구소득의 불평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5. 배우자 노동소득 추정모형 및 결과

배우자 노동소득은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다. 배우자 소득이 있으나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의 배우자 소득은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으로 합산되었다.

배우자 노동소득 추정모형은 가구주의 모형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배우자 노동소득은 배우자가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한 후에만 관찰되기 때문에 취업배우자들만의 특성이 노동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가지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배우자(i)가 식 (3-5)에 따라 노동시장 참가를 결정한다 했을 때, 노동시장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Z)으로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E^* > 0$) 노동시장에 참여하고($E=1$) 소득이 관찰된다.

노동소득과 관련 설명변수들이 선형의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가구주의 노동소득 추정모형은 식 (3-4)와 같고 모든 가구샘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배우자는 식 (3-5)라는 결정식에 의해 선택된 샘플만이 노동소득 방정식 추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식 (3-5)의 결정이 선택식이 식 (3-4)번의 노동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택편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eckman(1979)은 식 (3-5) 결정식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의 누락변수(omitted variable)처럼 노동소득 방정식에 포함시킨다. 이 변수는 식(3-6)의 우변 마지막 항으로 식 (3-5) 결정식(Z 와 u)가 노동소득(ϵ)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다. 이 변수가 식 (3-5)을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후 구한 Inverse Mills Ratio(IMR)이다.

$$W_i = \beta X_i + \epsilon_i \quad (3-4)$$

$$E_i^* = Z_i \gamma + u_i \quad (3-5)$$

$$E(W_i | E_i, X_i) = \beta X_i + E(\epsilon_i | X_i Z_i u_i) \quad (3-6)$$

이러한 Heckman의 two step 추정은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첫째, 모든 유배우자 가구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 결정식을 추정한다. 종속변수는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말해주는 이진변수로, 노동소득이 양의 값으로 신고되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간주한다. 설명변수는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의 연령과 교육수준, 6세미만 자녀유무, 18세미만 자녀수, 가구주 노동소득(로그값), 가구주 교육수준이다. 배우자의 연령과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배우자의 인적특성이며, 육아와 양육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가구주 노동소득과 교육수준은 가구주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주 소득과 음(-)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교육수준에 있어 동류혼 경향이 있을 때 고학력 가구주의 배우자 역시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양(+)의 관계를 보일 수 있다.

결정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3-7>의 결과 가운데 앞의 두 열에 나타나 있다. 배우자 나이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음(-)의 효과는 자녀 양육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대폭 낮아지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6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18세미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노동시장에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1998년 노동시장 참여 결정식의 추정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2008년 배우자 나이가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는 1998년에 비해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자녀 유무나 수가 미치는 영향이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자녀의 양육 또는 교육비 지출을 위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주 노동소득은 배우자 경제활동 여부와 양(+)의 관계를 가지며 이 경향은 2008년에 더욱 커진다. 이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구주 노동소득을 보완하기보다는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추가적 수입을 위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현상은 2008년에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 교육수준이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주 교육수준이 가구주 노동소득에 미치는 추이와 유사하다. 1998년에는 중졸이하의 배우자에 비해 중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약간, 초대졸 이상인 경우 꽤 높은 참가율을 보이는 반면, 2008년에는 중졸이하 졸업자보다 오히려 낮은 참가율을 보인다.

〈표 3-7〉 배우자 노동시장 참여 여부 및 노동소득 방정식 추정 결과

년도	1998	2008	1998	2008
종속변수	노동시장 참여		노동소득	
대상	배우자가 있는 가구		배우자 노동소득이 있는 가구	
설명변수				
성별 - 여성배우자	-0.186*** (-55.61)	-0.228*** (-62.82)	-0.445 (-1.94)	-0.911*** (-4.27)
배우자 나이	-0.0125*** (-26.89)	-0.0108*** (-21.01)	0.258*** (7.36)	0.162*** (4.25)
나이 제곱	0.0000771*** (14.89)	0.000197*** (38.53)	-0.00315*** (-8.21)	-0.00254*** (-6.50)
배우자 교육 (기준=중졸 미만)				
중졸	0.0510*** (18.61)	-0.0773*** (-21.32)	-0.0548 (-0.31)	0.0628 (0.27)
고졸	-0.00430 (-1.45)	-0.139*** (-37.53)	-0.0534 (-0.29)	0.155 (0.68)
전문대졸	0.0989***	-0.194***	0.238	0.394

년도	1998	2008	1998	2008
	(23.28)	(-41.36)	(0.95)	(1.32)
대졸 이상	대졸 이상 (20.27)	-0.204*** (-44.52)	0.559* (2.28)	0.920** (3.27)
자녀 유무와 자녀수				
6세미만 자녀 유무	-0.00416* (-2.26)	0.0459*** (18.33)	-0.981*** (-7.40)	-0.880*** (-5.12)
18세미만 자녀 수	-0.00999*** (-11.16)	0.0691*** (65.58)	-0.0629 (-1.00)	-0.0827 (-1.10)
log(가구주 노동소득)	0.136*** (558.22)	0.228*** (854.49)	-0.733*** (-6.54)	-0.371*** (-3.37)
가구주 교육 (기준=중졸 미만)				
중졸	-0.0930*** (-29.97)	-0.0314*** (-8.00)		
고졸	-0.0949*** (-30.46)	-0.00820* (-2.16)		
전문대졸	-0.0840*** (-21.20)	0.00929* (2.03)		
대졸 이상	-0.240*** (-66.91)	-0.169*** (-39.23)		
Inverse Mills Ratio			-10.75*** (-5.67)	-3.960* (-2.56)
상수항	0.142*** (12.86)	-1.064*** (-77.28)	17.59*** (11.11)	15.05*** (9.09)
N	8640	6093	7124	5453
adj. R-sq			0.053	0.063

자료: 통계청, 1998년, 2008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배우자의 노동소득 방정식은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노동소득이 관찰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높아서 소득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는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가할 확률을 첫 번째 결정식에서 추정한 Inverse Mills Ratio (IMR)로 통제하여 선택편의를 없앤다.

〈표 3-7〉의 마지막 두 열에 각 해의 배우자 노동소득 방정식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배우자 노동소득의 로그값이며, 설명변수

는 배우자의 인적특성을 나타내는 나이와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가결정과 마찬가지로 자녀 유무와 자녀수, 가구주의 노동소득, 그리고 IMR이다. 배우자의 나이-노동소득 곡선 역시 역 U자형을 나타내고,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이상을 제외하고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계수의 크기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져서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인 경우 중졸미만보다 1998년에는 64%, 2008년에는 100%이상 높은 노동소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와 관련된 변수의 경우 18세 이하 자녀수는 영향도 작고 유의하지도 않다. 그러나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이 무척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시간제 등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형태를 택해 월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유무가 경제활동 결정식과 노동소득 방정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보면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가계지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확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와의 병행이 가능한 시간제 등 유연한 근로형태를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은 가구주 노동소득의 로그값만이 포함되었으며, 경제활동 확률에 미치는 영향과는 반대로 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가구주 노동소득이 높을수록 육아를 위해 시간제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배우자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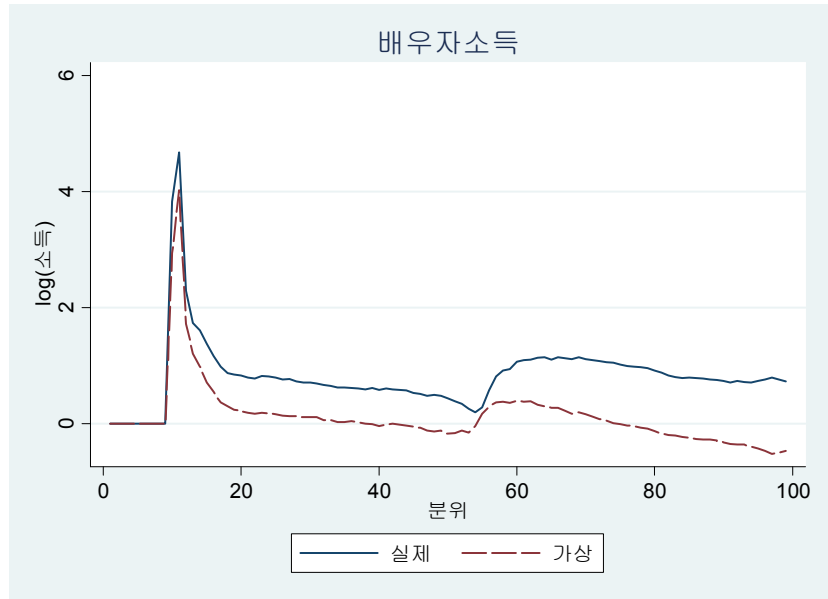
아래의 <표 3-8>은 가구주의 <표 3-3>과 마찬가지로 1998년과 2008년의 배우자 로그소득의 지니계수(A, B)와 2008년 배우자 인적 특성에 1998년 배우자 노동소득 계수와 잔차분포를 적용한 2008년의 가상분포

의 지니계수(C),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 노동소득 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2008년과 2008년 가상분포의 불평등도 차이(가격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3-2] 또한 1998년과 2008년 분포의 분위별 로그소득변화(실선)와 1998년과 2008년 가상분포의 분위별 로그소득변화(점선)를 보여준다.

〈표 3-8〉 배우자 소득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1998 (A)	2008 (B)	2008년 가상분포 (C)	가격효과 (B-C)
지니계수	0.2826	0.2576	0.2617	-0.0041

[그림 3-2]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배우자 노동소득 변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불평등도 측정 대상이 배우자가 있는 가구라는 점이다. 배우자 노동소득이 존재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배우자가 노동시장 참여 결정을 통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제외되므로 가상의 배우자 노동소득 분포를 그리는 데 적절치 않다. 실제로는 노동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앞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식 (3-5)에서 인적특성과 가구특성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지므로 가상의 분포에는 이러한 잠재적인 경제활동 참가률을 통해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

〈표 3-8〉과 [그림 3-2]를 통해 가구주 노동소득과 달리 배우자 노동소득의 불평등도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첫째, 유배우자 가구 가운데 취업배우자 비중이 커져 새로이 소득이 생겨난 소득계층 탓에 저소득층에서 소득의 급증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중위소득을 사이에 둔 하위소득계층과 중상위소득 계층에서 각각 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증가폭이 감소하는 우하향 곡선을 보이는 까닭이다. 다만 중위소득 근처에서 곡선이 전반적으로 솟아올라 중위소득 이상의 중상위계층의 소득증가가 훨씬 커 불평등을 악화 혹은 불평등도 감소를 완하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우자 노동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결정적인 요인은 취업배우자 비중 증가로 보인다.

2008년 배우자 인적특성에 1998년 소득추정식의 계수와 잔차분포를 적용한 2008년 가상분포를 비교해보면 실제 2008년 지니계수가 더 낮다. 이는 10년 사이의 배우자 특성효과와 가격효과 모두 노동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10년 사이 0.025만큼의 지니계수 감소는 0.004만큼은 가격효과로 0.021만큼은 특성효과로 인해 감소되어 배우자 인적특성 변화가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3-9>는 이러한 배우자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이다. 2008년 원소득의 지니계수가 0.2576인데 반해 추정소득의 지니계수가 그보다 훨씬 적은 0.0552인 것은 배우자 노동소득이 배우자 취업할 확률을 이용해 잠재적인 노동소득을 추정한 까닭이다. 이는 실제로는 취업하지 않는 배우자의 노동소득이 0으로 나타나는 것과 대조된다. 원소득 지니계수와 추정소득 지니계수가 큰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추정소득 지니계수와 상대적인 크기를 통해 각 요인이 불평등 개선 또는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표 3-9> 2008년 배우자 로그노동소득의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2008년		2008년 가상치(1998년 추정계수 적용)								1998년 추정 소득
	원소득	추정 소득	상수항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자녀	가구주 특성	IMR	모두 적용	
지니계수	0.2576	0.0552	0.0443	0.0527	0.0356	0.0532	0.0561	0.0894	0.1259	0.0525	0.0453
변화율(%)		0.0	-19.7	-4.5	-35.5	-3.6	1.6	62.0	128.1	-4.9	-17.9

배우자의 노동소득에 대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1998년과 2008년의 배우자 노동소득 지니계수를 추정하면 <표 3-9>와 같다. 추정소득의 지니계수는 0.0453에서 0.0552로 증가하였다. 배우자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1998년 추정모형의 주요 계수를 순차적으로 2008년 추정모형에 순차적으로 교체 투입하여 지니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표 3-9>에 나타나듯이 연령대별 수익률 변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가구주 특성에 대한 계수의 변화는 불평등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표 3-9>에서 2008년 실제 추정소득 지니계수(0.0552)가 1998년 추정계수를 모두 적용한 결과(0.0525)보다 더 크다는 것은 <표 3-8>의 결

과와 배치된다. 이는 <표 3-9>에는 잔차분포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석하면, 배우자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적특성의 수익률이 1998년과 같이 유지되었다면 불평등이 개선되었을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위와 같은 가격변화는 실제로 배우자 노동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표 3-9>에 포함되지 않은 잔차분포의 변화는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7. 가구특성별 기타가구원 노동소득의 변화

가구구성원 가운데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기타 가구원이 라고 지칭했을 때 기타가구원의 취업과 소득활동은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10>은 기타 가구원이 존재하는 가구의 분포와 그 특징들을 보여준다.

〈표 3-10〉 기타 가구원 노동소득 관련 기초통계량

(단위: %, 원/월)

	1998			2008		
	전체 가구	기타 가구원 있는 가구	취업기타 가구원 있는 가구	전체 가구	기타 가구원 있는 가구	취업기타 가구원 있는 가구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	87.5	100.0	100.0	81.5	100.0	100.0
취업 기타가구원 있는 가구(%)	12.0	13.5	100.0	12.8	15.6	100.0
기타가구원 노동소득	150,746	168,394	785,996	325,754	386,260	1,670,777
가구주 노동소득	1,350,623	1,406,424	1,096,249	2,230,357	2,429,750	1,700,295
가구주 평균연령(세)	42.3	41.5	47.2	47.7	45.7	51.3
기타가구원수(명)	1.72	1.97	2.36	1.48	1.81	2.09
18세이상 기타가구원수(명)	0.62	0.70	1.80	0.60	0.72	1.76
취업기타가구원수(명)	0.14	0.16	1.21	0.16	0.19	1.23
기타가구원 중 취업자 비율(%)		8.3	61.8		10.7	68.5
18세 이상 기타가구원 중 취업자 비율(%)		20.1	71.9		23.4	76.0
기타가구원 평균연령(세)		16.7	26.2		19.5	28.6
취업기타가구원 평균연령(세)			27.9			29.8

전체 가구 가운데 취업한 기타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10년 동안 12.0%에서 12.8%로 다소 증가하였고, 기타가구원이 있는 가구 가운데 취업 기타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13.5%에서 15.6%로 증가하였다.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기타가구원 중 취업자의 비율이 변화한 것을 보면 기타가구원의 취업이 1998년에 비해 2008년에는 다소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기타가구원의 취업비율은 기타가구원이 있는 가구나 취업한 기타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취업한 기타가구

원이 있는 가구에서 기타 가구원 중 취업자의 비율은 1998년의 61.8%에서 2008년에는 68.5%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타가구원이 있는 가구 가운데 18세 이상의 기타가구원수 대비 취업자의 비율은 1998년의 71.9%에서 2008년에는 76.0%로 증가하였다.

기타가구원의 취업 증가는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 증가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취업 기타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가구주의 노동소득이 월 약 11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연평균 약 4.5% 증가),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 총합은 월 약 79만원에서 167만원으로 증가하였다(연평균 약 7.8% 증가). 만일 이러한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 증가가 가구주 노동소득이 낮은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소득불평등을 완화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8. 기타 가구원 노동소득 추정모형 및 결과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 역시 가구주나 배우자의 노동소득과 마찬가지로 설명변수들과 선형의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기타 가구원 노동소득의 설명변수에는 가구주의 노동소득과 연령, 그리고 18세 이상 기타가구원의 수와 그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 등을 포함시켰다. 가구주의 연령과 노동소득을 포함시킨 것은 가구의 주 소득원인 가구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가구주의 소득이 부족할 경우 기타 가구원의 취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기타 가구원의 노동시장 경험을 대체할 만한 평균연령과 평균 학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기타 가구원의 소득이 보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균 연령을 사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가계동향조사에서 기타 가구원의 개인별

학력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타 가구원 중 성인(18세 이상) 가구원의 수와 그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기타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여주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3-11〉은 18세 이상의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타가구원 노동소득 결정모형과 그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1998년에는 음(-)의 효과를 보이며 유의성이 없었던 가구주 노동소득이 2008년에는 그 효과가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고 유의성도 높아졌다. 즉 이전에는 가구주의 소득이 낮을수록 기타 가구원의 소득활동이 활발했으나, 2008년에는 오히려 가구주의 소득이 높을수록 기타 가구원의 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져야 자녀 또한 취업할 나이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타 가구원의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도 1998년에 비해 2008년에는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소득효과와 연령효과를 연결하여 해석하면, 가구주 노동소득이 높아 교육투자가 많을수록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가구원 중 소득활동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 즉 18세 이상의 연령일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취업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이 두 요인 모두 양의 추정계수값을 지니며, 특히 18세 이상 기타 가구원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은 다른 계수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98년에 비해 2008년의 18세 이상 기타 가구원수에 대한 추정계수 값이 늘어나는 것은 재학생 가운데에서도 소득활동이 늘어난 효과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1〉 기타 가구원 노동소득 방정식 추정 결과

설명변수	1998년	2008년
가구주		
log(노동소득)	-0.0035 (-0.13)	0.1755*** (5.63)
연령	0.0298*** (4.11)	0.1000*** (10.63)
기타 가구원		
성인 기타가구원 수	2.3505** (21.68)	2.6476*** (16.73)
성인 기타가구원 중 취업자 비율	6.9683*** (29.96)	6.4369*** (25.16)
상수항	1.3062** (2.46)	-3.8752*** (-5.23)
N	3,954	2,852
adj. R-sq	0.2868	0.3127

자료: 통계청, 1998년, 2008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9. 기타 가구원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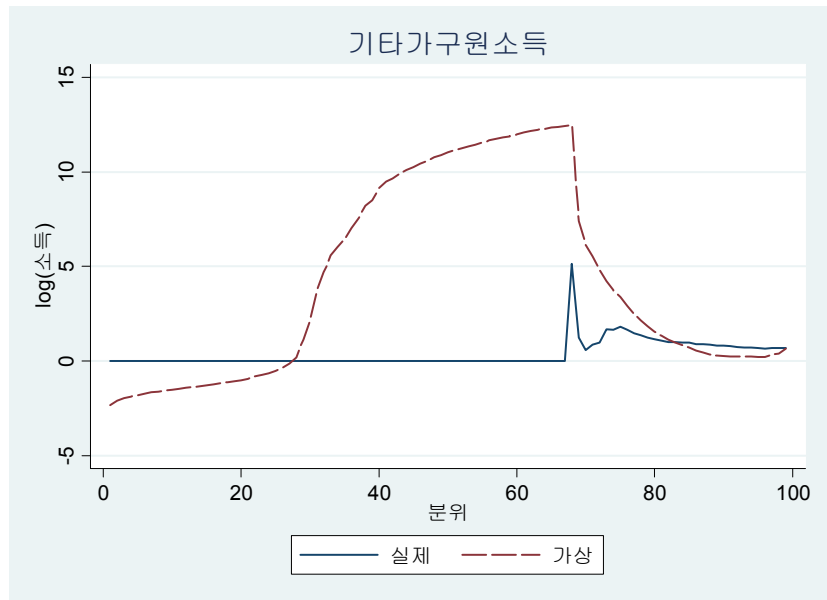
〈표 3-12〉는 1998년 추정식 계수들과 잔차분포가 적용되었다면 2008년의 기타 가구원 노동소득 불평등은 상당히 완화되었을 것임을 보여준다. 2008년이 1998년보다는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었으나 1998년과 같은 소득추정식의 계수들이 적용되었다면 실제 지니계수 0.7110보다 훨씬 더 낮은 지니계수 0.4322를 보여 불평등이 훨씬 더 나아졌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표 3-10〉의 기초통계량을 통해 보면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 가운데 취업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나 취업가구원수는 늘어나 기타 가구원 노동소득 분포는 상당히 완화되었을 것이나 2008년의 수익률이 이러한 완화추세를 다소 지연시켰다고 볼 수 있다. 〈표 3-11〉 또한 대부분의 설명변수에 대해 수익률이 증가하여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표 3-12〉 기타 가구원 소득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1998 (A)	2008 (B)	2008년 가상분포 (C)	가격효과 ((B)-(C))
지니계수	0.7217	0.7110	0.4322	0.2788

[그림 3-3]의 실제 소득변화는 기타가구원 가운데 취업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증가로 0에서 양(+)으로 소득이 늘어난 가구에서 소득의 급증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포는 1998년 기타가구원 소득구조를 적용했을 때 0에서 양(+)으로 소득이 생겨난 지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분위에서 높은 소득증가가 나타났음을 통해 기타 가구원 소득분포가 더욱 완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3-3]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기타가구원 노동소득변화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에 대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1998년과 2008년의 기타가구원 노동소득 지니계수를 추정하면 아래의 <표 3-13>과 같다. 추정소득의 지니계수는 0.2298에서 0.2180으로 감소하였다. 기타가구원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1998년 추정모형의 주요 계수를 순차적으로 2008년 추정모형에 순차적으로 교체 투입하여 지니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표 3-13>에서 나타나듯이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에서 1998년 추정계수를 적용했을 때의 지니계수가 2008년의 추정 소득 지니계수에 비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만일 1998년과 같은 변수별 수익률이 2008년에도 적용되었다면 불평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표 3-12>의 결과와 상반되는 듯 보이지만 상수항의 추정계수가 다른 변수들의 계수와 반대방향으로 작용하여 2008년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잔차분포 역시 1998년의 그것이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일 뿐 각 개별 요인의 수익률은 공통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8년이 경제위기 국면이어서 취업가구원의 비중이 낮았던데 반해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기타가구원 전체 소득분포는 완화되었으나 고소득자의 임금을 더욱 증가시키는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영향은 동일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08년의 기타 가구원 소득 불평등이 1998년에 비해 감소한 데에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노동소득, 성인 기타 가구원의 수, 성인 기타 가구원 중 취업자 비율 등 모든 요인의 수익률이 공통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주 연령효과나 가구주 소득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데에는 1998년이 경제위기 국면이어서 미취업 가구주의 비중이 높았고, 이들 변수의 계수가 낮았던 상황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3〉 2008년 기타가구원 로그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2008년		2008년(1998년 추정계수 적용)						98년 추정 소득
	원소득	추정 소득	상수항	가구주 연령	가구주 소득	18세이상 가구원	18세이상중 취업자비율	모두 적용	
지니계수	0.7110	0.2180	0.1823	0.8277	0.6457	0.3611	0.3470	0.3397	0.2298
변화율(%)		0.0	-16.4	279.7	196.2	65.6	59.2	55.8	5.4

제3절 가구 비노동소득·조세·사회보장부담 불평등의 변화

1. 가구특성별 재산소득의 변화

가구의 재산소득은 가구원들이 이자, 임대료, 배당금의 형태로 획득한 소득의 합이다.⁴⁾ 재산소득의 분포는 가구별 노동소득(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노동소득의 합)의 불평등을 상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외적 충격이 있을 때 자산가치의 급락과 이에 따른 금융소득의 변동은 전체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아래의 〈표 3-14〉는 가구 특성별 재산소득의 변화를 보여준다. 1998년에 비해 가구 재산소득은 2008년까지 연 4.0%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구 노동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5.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써, 그 결과 노동소득 대비 재산소득의 비중은 1998년 약 3.3%에서 2008년에는 약 2.8%로 줄어들었다.

4) 가계동향자료에는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의 일부로 분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재산소득으로 분류하였다.

〈표 3-14〉 가구 재산소득 관련 기초통계량

(단위: 원/월, %)

		1998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평균	비중	평균	
가구 재산소득			56,197		83,196	4.0
가구주 평균 연령(세)			42.32		47.73	
가구 노동소득			1,699,803		2,988,421	5.8
가구원수(명)			3.62		3.35	
취업가구원 비율(%)			52.9		56.3	
가구주 학력	중졸미만	10.7	58,896	10.1	78,239	2.9
	중졸	13.9	55,543	10.3	88,341	4.7
	고졸	43.0	47,275	39.0	79,705	5.4
	전문대	8.7	50,952	12.3	61,096	1.8
	대졸이상	23.6	73,518	28.4	97,436	2.9
가구주 경제활동	근로자	58.1	47,387	60.9	47,130	-0.1
	자영자	29.4	39,053	25.7	72,341	6.4
	무직	12.5	137,330	13.5	266,956	6.9
주거유형	자가	54.5	84,430	65.9	112,854	2.9
	전세	34.4	25,270	22.0	35,667	3.5
	월세	11.2	13,805	12.1	8,005	-5.3

가구주의 학력이나 종사상 지위별로 재산소득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노동소득과는 상이한 양상이 발견된다. 우선 학력별 분포를 보면, 대졸 이상의 가장 고학력 가구에서 평균 재산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하의 학력에서는 교육연수와 재산소득이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근로자 가구의 재산소득이 가장 낮고 무직 가구의 재산소득이 가장 높다. 10년간의 소득증가율도 근로자 가구는 음수인 반면 자영자 가구와 무직자 가구에서는 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견상 재산소득의 수준이나 증가율은 가구 혹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안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통제했을 때 재산소득은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가구 재산소득 추정모형 및 결과

가구 재산소득은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 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샘플의 과반을 넘어간다⁵⁾. 따라서 재산소득 추정식은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인 토빗모형(tobit model)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3-15>에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3-15>의 계수는 잠재적인 재산소득에 각 변수가 미치는 한계적 영향(marginal effect)으로, 선형회귀분석의 계수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 연령이 1살 늘어나면 재산소득이 20-26% 가량 증가한다. 이러한 가구주 연령과 재산소득이 가지는 양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가구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구주 교육수준과 종사상 지위는 기초통계량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과는 대체로 반대의 부호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산소득은 높고, 가구주 연령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무직자에 비해 근로자나 자영자인 가구주의 지위가 재

5) <표 3-15>의 절단된 관측치가 1998년과 2008년 각각 7,882가구와 5,920가수로 각 연도 전체 관측치의 과반을 차지한다.

산소득에 음(-)의 효과를 지닌다. 월세 거주가구에 비해 자가 및 전세 거주가구의 이자,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이 큰 것은 예상 가능하다.

〈표 3-15〉 가구 재산소득 방정식 추정(토빗모형) 결과

설명변수	1998년	2008년
가구주 연령	0.202*** (9.78)	0.261*** (9.75)
log(가구 노동소득)	0.184* (1.98)	0.138 (1.38)
가구원수	0.577** (3.12)	-0.490 (-1.82)
취업 가구원수	2.224*** (5.03)	1.218* (2.17)
가구주 교육 (기준= 중졸미만)		
중졸	1.693* (2.20)	1.084 (1.04)
고졸	3.097*** (4.52)	3.124*** (3.51)
전문대졸	3.797*** (4.15)	6.397*** (5.83)
대졸이상	4.145*** (5.64)	5.282*** (5.59)
가구주 종사상 지위 (기준= 무직)		
근로자	-5.773*** (-6.91)	-3.924*** (-3.58)
자영자	-8.094*** (-9.30)	-5.429*** (-4.81)
주거 유형 (기준= 월세)		
자가	8.663*** (11.80)	9.197*** (9.63)
전세	4.763*** (6.33)	6.955*** (6.67)
상수항	-28.04*** (-15.53)	-32.22*** (-12.86)
N	10,301	7,470
left-censored N	7,882	5,920
uncensored N	2,419	1,550

자료: 통계청, 1998년, 2008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3. 가구 재산소득 불평등 변화

〈표 3-16〉의 1998년과 2008년의 실제 재산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74, 0.80으로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이를 [그림 3-4]에서 보면 재산소득이 없는 과반수의 가구에서는 소득변화가 없으나 1998년 재산소득 분포에서 낮은 분위(7-8분위)를 차지하던 가구의 재산소득이 감소하거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 변화가 가구분포의 변화에서 오는 것인지 가격변동 오는 것인지, 혹은 어떤 요인이 작용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는 1998년 추정계수를 순차적으로 그리고 모두 2008년 가구 및 인적특성에 적용한 후 실제 지니계수와 비교하였다. 그러나 재산소득은 토빗모형을 사용한 까닭에 추정 지니계수 혹은 2008년 가상분포의 지니계수가 실제와 비교가능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실제의 지니계수는 과반의 가구가 재산소득으로 영(0)의 값을 갖고 있는 분포가 반영되어 0.74 혹은 0.8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반면, 추정하는 경우 기존에 절단되던 값이 [그림 3-4]의 가상의 재산소득변화와 같이 완만하게 나타나 〈표 3-16〉과 같이 0.26 내외의 낮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재산소득의 경우 요인별 분해를 하지 않고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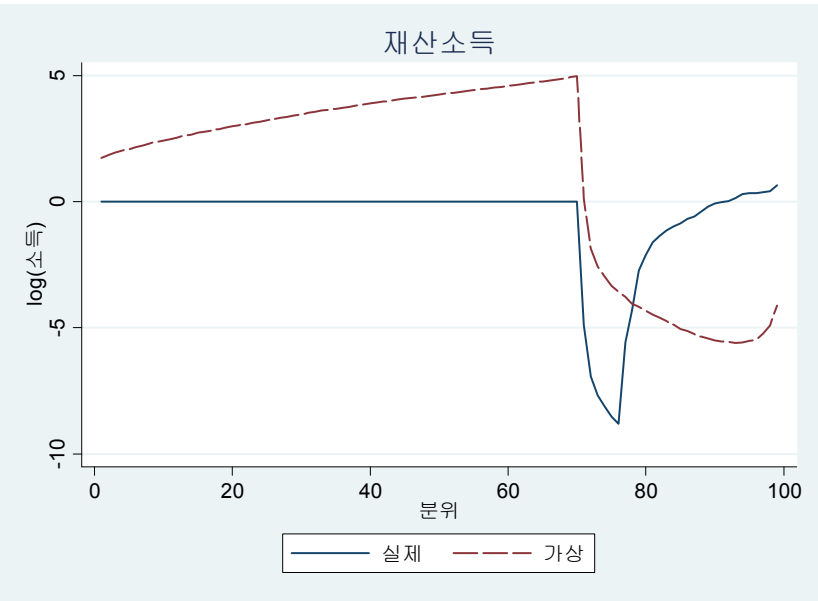
〈표 3-16〉의 추정소득은 각각의 해의 추정식에 따라 추정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추정값으로 사용하고, 추정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을 대입하는 토빗 사후추정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다. 이는 실제 재산소득 불평등 추이와 마찬가지로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와 〈표 3-15〉를 이용하면, 주거유형이 재산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요인별 분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요인을 알 수 없는 것은 이 분석의

한계로 남는다.

〈표 3-16〉 가구 재산소득 추정과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

	1998	2008	1998년 추정소득	2008년 추정소득	가상의 2008년
지니계수	0.7397	0.8004	0.2592	0.2626	0.1985

[그림 3-4]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재산소득변화



4. 가구특성별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은 가구 간에 주고받는 이전으로, 생활 단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친인척 등이 보내는 현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은 무시할 수 없는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크다면, 사적이전소득은 가구 노동소득이나 재산소득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7〉 가구 사적이전소득 관련 기초통계량

(단위: 원/월, %)

		1998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평균	비중	평균	
사적이전소득			94,297		159,634	5.4
가구주 평균 연령(세)			42.322		47.732	
가구 노동소득			1,699,803		2,988,421	5.8
가구 재산소득			56,197		83,196	4.0
가구원수(명)			3.62		3.35	
취업가구원 비율(%)			52.9		56.3	
노인 가구원수(명)			0.16		0.28	
아동 가구원수(명)			0.44		0.27	
가구주 성별	남성	85.5	50,296	81.6	85,490	5.4
	여성	14.5	353,340	18.4	489,398	3.3
가구주 경제활동	근로자	58.1	54,208	60.9	108,121	7.1
	자영자	29.4	43,156	25.7	88,174	7.4
	무직	12.5	400,406	13.5	528,861	2.8

위의 〈표 3-17〉은 1998년과 2008년의 사적이전소득을 가구 특성별로 비교하고 있다. 우선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사적이전소득은 10년 사이 연평균 약 5.4%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노동소득에 비해서는 낮은 속도이지만 재산소득 증가보다는 빠른 속도이다. 노동소득 대비 사적이

전소득의 비중은 5.5%에서 5.4%로 다소 감소하였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에 비해 여성 가구의 평균 사적이전소득이 약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의 평균 사적이전소득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년간 남성가구의 사적이전소득 증가속도가 여성가구에 비해 빨랐고, 근로자나 자영자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증가속도가 무직 가구에 비해 빨랐다.

5. 가구 사적 이전소득 추정모형 및 결과

1998년과 2008년 사이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표 3-18>의 가구 사적 이전소득 방정식 추정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변화가 가구의 노동소득이나 취업한 가구주 더미가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가구의 로그노동소득의 계수는 (2008년에는 10% 유의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0.13에서 -0.06으로 감소했고, 가구주가 근로자인 경우 무직인 가구의 1998년 38%밖에 이전소득을 얻지 못했으나 2008년에는 55%로 늘어났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충분한 소득원이 되어주지 못하는 근로빈곤계층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고, 계층간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감소해 사적이전소득의 원천이 되는 부모나 친인척 역시 저소득 층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표 3-18〉 가구 사적이전소득 방정식 추정 결과

설명변수	1998년	2008년
가구주 연령	-0.280***	-0.261***
연령	(-7.65)	(-6.50)
연령 제곱	0.00288***	0.00238***
	(7.10)	(5.65)
가구소득	-0.132***	-0.0613
log(노동소득)	(-4.35)	(1.79)
log(재산소득)	0.0890***	0.0700***
	(8.58)	(6.01)
성별 - 여성가구주	1.965***	1.805***
	(11.79)	(11.11)
가구구성	0.167*	0.0790
가구원수	(2.32)	(0.87)
취업가구원 비율	1.561***	1.980***
	(4.15)	(4.79)
노인 가구원수	0.440**	0.619***
	(3.00)	(4.44)
아동 가구원수	0.605***	0.445***
	(7.55)	(4.21)
가구주 종사상 지위 (기준= 무직)	-2.628***	-1.832***
근로자	(-10.09)	(-6.14)
자영자	-3.128***	-2.022***
	(-11.59)	(-6.58)
상수항	15.06***	14.94***
	(20.52)	(16.83)
N	10,301	7,470
adj. R-sq	0.156	0.129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자료: 통계청, 1998년, 2008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6. 가구 사적 이전소득 불평등 변화

〈표 3-19〉의 가구 사적이전(로그)소득 분포에 따른 지니계수를 보면, 2008년 불평등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3-5]의 최저 이전소득계층의 급격한 소득증가와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소득변화 곡선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추정식 결과와 같이 가구 노동소득이 있거나 일을 하는 경우의 사적이전소득이 늘어나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 등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이전소득의 분포 변화가 가구소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그 반대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구소득 분포에서 낮은 분위를 차지하는 무직 가구 등에 비해 노동소득이 있거나 가구주가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의 이전소득 증가로 오히려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19〉에서 2008년 인적 및 가구특성에 1998년 추정계수와 잔차분포를 적용한 가상의 2008년(C)은 2008년보다 약 1.47배의 큰 지니계수를 지녀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변화된 가구특성 분포에 여성 가구주인 가구나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가 큰 사적이전소득을 얻는 1998년의 특성이 유지되는 까닭이다.

〈표 3-19〉 가구 사적이전(로그)소득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1998 (A)	2008 (B)	가상의 2008년 (C)	가격효과 ((B)-(C))
지니계수	0.3553	0.2705	0.3958	-0.1253

[그림 3-5]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사적이전소득 변화



아래의 <표 3-20>은 앞의 사적이전소득 결정모형에 따라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10년 사이의 사적이전소득 불평등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 이 표의 1998년 추정계수 적용란 가운데 연령은 가구주의 연령 및 연령 제곱항 추정계수를 1998년 값으로 대체하여 추정한 것을 의미한다. 소득은 가구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의 추정계수를, 가구구성은 가구원수, 노인가구원수, 아동수의 추정계수를, 가구원 취업은 전체 가구원 중 취업가구원의 비율에 대한 추정계수를, 종사상 지위는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별 추정계수를 1998년 추정치로 대체한 것이다. 모두 적용시의 지니계수란 모든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를 1998년 값으로 대체했을 때의 지니계수이다.

〈표 3-20〉 2008년 가구 사적이전(로그)소득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08년		98추정계수 적용								98년 추정 소득
	원소득	추정 소득	상수항	연령	소득	성별	가구 구성	가구원 취업	종사상 지위	모두 적용	
지니 계수	0.2705	0.0948	0.0933	0.1007	0.1196	0.0968	0.0876	0.0984	0.1205	0.1484	0.1303
변화율 (%)		0.0	-1.5	6.2	26.2	2.2	-7.5	3.8	27.1	56.6	37.5

우선 추정소득만을 비교하였을 때 2008년의 사적이전소득 불평등은 0.0948로 1998년의 0.1303에 비해 완화되었다. 1998년의 요인별 계수 값을 2008년의 소득추정식에 적용하여 보면 연령, 성별, 가구원 취업, 가구주 종사상 지위 효과는 불평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구구성 효과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구성에 따른 사적이전소득 불평등 효과가 2008년에 오히려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소득(노동 및 재산소득), 가구주 성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격차는 오히려 1998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사적이전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항목은 소득 요인이었다.

7. 가구특성별 공적이전소득의 변화

이 절에서는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과 그것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의 <표 3-21>은 1998년과 2008년의 가구별 공적이전소득의 평균값을 가구 특성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표 3-21> 가구 공적이전소득 관련 기초통계량

(단위: 원/월, %)

	1998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평균	비중	평균	
공적이전소득		21,572		127,003	19.4
가구주 평균연령(세)		42.322		47.732	
가구 노동소득		1,699,803		2,988,421	5.8
가구 재산소득		56,197		83,196	4.0
가구원수(명)		3.62		3.35	
취업가구원 비율(%)		52.9		56.3	
노인 가구원수(명)		0.16		0.28	
아동 가구원수(명)		0.44		0.27	
가구주 근로자	58.1	13,046	60.9	84,302	20.5
경제활동 자영자	29.4	8,198	25.7	75,732	24.9
무직	12.5	92,538	13.5	417,872	16.3
주거 유형 자가	54.5	28,456	65.9	148,932	18.0
전세	34.4	15,784	22.0	75,471	16.9
전세	11.2	5,859	12.1	101,145	33.0

전체 가구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0년 사이에 19.4% 증가했다. 이는 가구구성을 구성하는 다른 항목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신설되거나 확대된 복지제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의 가입 및 지급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 신설된 점, 보육료 지원이 신설된

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신설된 점 등이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구특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절대적인 금액면에서는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높다. 거주 유형별로는 자가 보유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면에서는 근로자나 자영자 가구의 증가율이 무직자 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그리고 월세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약 두 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8. 가구 공적이전소득 추정모형 및 결과

〈표 3-22〉는 가구 공적이전소득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가장 큰 변화는 2008년의 상수값이 1998년의 5배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19.4%라는 공적이전소득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로그노동소득이나 로그재산소득, 가구주 종사상 지위 등의 설명변수의 영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구구성의 영향만은 2008년에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인가구원이거나 아동가구원이 있는 경우 관련 공적이전소득의 신설 또는 확대가 추정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22〉 가구 공적이전소득 방정식 추정 결과

설명변수	1998년	2008년
가구주 연령	-0.0574	-0.0326
연령	(-1.95)	(-0.94)
연령 제곱	0.000545	0.000634
	(1.65)	(1.83)
가구소득	0.223***	0.0987***
log(노동소득)	(8.39)	(3.42)
log(재산소득)	0.134***	0.0642***
	(14.94)	(5.99)
가구구성	0.452***	0.134
가구원수	(7.40)	(1.61)
노인 가구원수	0.873***	1.749***
	(7.02)	(17.73)
아동 가구원수	0.562***	0.783***
	(8.10)	(8.25)
취업가구원 비율	3.367***	0.395
	(10.42)	(1.02)
가구주 종사상 지위 (기준= 무직)	-2.208***	-0.785**
근로자	(-9.35)	(-3.24)
자영자	-2.694***	-1.079***
	(-11.07)	(-4.32)
주거 유형 (기준= 월세)	0.198	-0.157
자가	(1.44)	(-0.94)
전세	0.372**	-0.299
	(2.71)	(-1.57)
상수항	1.252*	6.700***
	(2.02)	(8.20)
N	10,301	7,470
adj. R-sq	0.128	0.156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자료: 통계청, 1998년, 2008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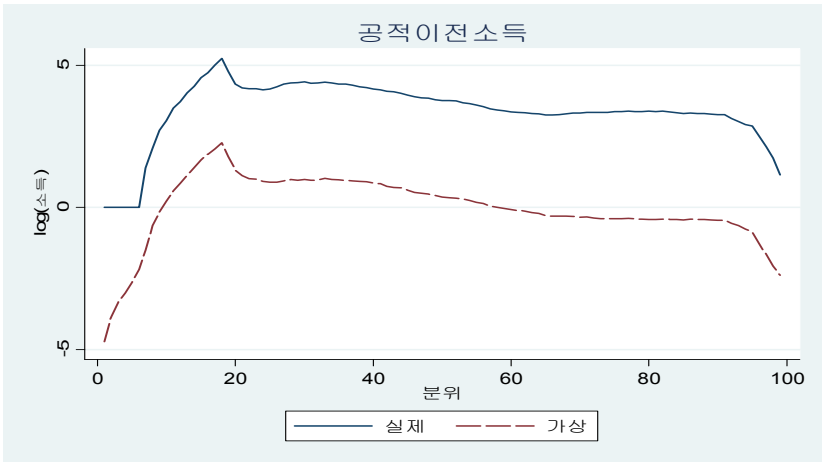
9. 가구 공적이전소득 불평등 변화

〈표 3-23〉에서 공적이전(로그)소득의 지니계수는 10년 사이 0.38에서 0.23으로 감소하였고, [그림 3-6]에서 우하향하는 소득변화 곡선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공적이전소득 간의 격차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3-22〉에서 1998년보다 2008년의 상수항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상수항을 포함해 1998년 추정계수를 2008년 가구분포에 적용한 결과(〈표 3-23〉의 (C)), 2008년보다 훨씬 지니계수를 갖는다는 사실도 상수항을 포함한 추정계수의 변화가 불평등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 준다.

〈표 3-23〉 가구 공적이전(로그)소득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1998 (A)	2008 (B)	가상의 2008년 (C)	가격효과 ((B)-(C))
지니계수	0.3754	0.2298	0.3563	-0.1265

[그림 3-6]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공적이전소득 변화



가구 공적이전 소득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 3-23>에서 보듯이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정 공적이전소득의 1998년의 지니계수는 0.131이었으나 2008년에는 0.0835로 낮아진 것이다.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어떤 요인들이 기여했는지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과 가구주 종사상 지위에 따른 효과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소득, 가구구성, 가구원 취업, 주거유형 등의 효과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이 확인된다. 이는 2008년의 추정모형에 1998년의 변수별 추정계수를 대입했을 때 소득, 가구구성, 취업가구원 비율, 주거유형 등 계수의 경우는 지니계수를 감소시킨다는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표 3-24> 2008년 가구 공적이전(로그)소득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08년		98추정계수 적용								98년 추정 소득
	원소득	추정 소득	상수항	연령	소득	가구 구성	가구원 취업	종사상 지위	주거 유형	모두 적용	
지니 계수	0.2298	0.0835	0.2251	0.0884	0.0755	0.0581	0.0761	0.1151	0.0807	0.1375	0.131
변화율 (%)		0.0	169.7	5.8	-9.5	-30.4	-8.8	37.9	-3.4	64.7	57.0

<표 3-24>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비교하여 보면 실제로 공적이전소득 격차에 미치는 가구구성의 효과가 가장 확대되었고, 반대로 가구주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격차 효과가 가장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가구구성의 효과가 확대된 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료 지급 등 특정 연령대의 가구원에게 지급되는 공적이전제도가 신설된 것이 중요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육료 지원정책은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구주의 공적이전소득을 높이고, 근로자 및 자영자

가구주의 공적이전 소득을 높였을 것이므로 공적이전소득의 가구주 연령 효과와 종사상 지위 효과를 낮추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10. 가구특성별 조세부담의 변화

가구별 조세부담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래 <표 3-25>에 따르면, 1998년의 가구 월평균 조세부담액은 약 5만6천원에서 2008년에는 10만 6천원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6.5%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이는 가구 노동소득이나 재산소득 증가율에 비해 빠른 것이다.

<표 3-25> 가구 조세지출 관련 기초통계량

(단위: 원/월, %)

	1998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평균	비중	평균	
조세 지출		56,515		106,319	6.5
가구주 평균연령(세)		42.3		47.7	
가구 노동소득		1,699,803		2,988,421	5.8
가구 재산소득		56,197		83,196	4.0
가구주 근로자	58.1	75,932	60.9	146,988	6.8
경제활동 자영자	29.4	34,728	25.7	41,970	1.9
무직	12.5	17,558	13.5	45,233	9.9
주거 유형 자가	54.5	74,454	65.9	123,167	5.2
전세	34.4	41,554	22.0	99,508	9.1
전세	11.2	15,201	12.1	26,967	5.9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조세부담의 수준과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근로자 가구의 조세부담액이 가장 높았으나 증가율 면에서는 무직가구의 조세부담액 증가속도가 가장 빨랐다. 자영자 가구는 연평균 1.9%의 속도

로 증가한 데 반해 무직가구의 증가율은 9.9%였다.⁶⁾ 거주 유형별로 보면 자가 거주 가구의 조세부담이 가장 높았고, 조세부담 증가율 측면에서는 전세 가구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1. 가구 조세부담 추정모형 및 결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가구별 조세부담은 가구단위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가구원 중 다수의 취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개인적 특성을 이용하여 가구 단위의 조세부담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부담에 대한 추정모형은 가구단위의 정보를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가구소득 가운데 가구주 노동소득의 비중이 60% 이상임을 고려하여 가구주의 개인적 특성을 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26>은 가구 조세부담액 추정을 위한 모형과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변수로는 가구단위의 조세부담액에 로그를 취한 값을 이용하였다. 설명변수에는 우선 가구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을 포함하였다. 가구의 조세부담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획득한 소득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구주의 연령과 종사상 지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구주 노동소득이 가구 단위의 과세 대상 소득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세원 포착률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주거 유형은 가구보유 재산 규모에 대한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가구 조세부담에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가 포함되는데, 재산세 규모를 결정하는 가구보유 자산규모가 가계

6) 물론 이는 가구주가 무직일 뿐 배우자나 기타 가구원이 취업한 가구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기타 재산보유액이 많은데서 비롯된 현상일 수 있으나 개인별 납세액과 재산보유액이 가계조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다.

동향조사 자료에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택자산이 보유 자산의 대표적 유형임을 고려하여 주거 유형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3-26〉 가구 조세부담 방정식 추정 결과

설명변수	1998년	2008년
가구주 연령	-0.0358*** (-7.13)	-0.0219*** (-4.76)
가구소득 log(노동소득)	0.484*** (18.38)	0.286*** (12.66)
log(재산소득)	0.0894*** (9.99)	0.0977*** (11.43)
가구주 종사상 지위 (기준= 무직) 근로자	1.859*** (8.21)	0.12 (0.64)
자영자	0.797*** (3.46)	-1.236*** (-6.50)
주거 유형 (기준= 월세) 자가	4.569*** (24.40)	3.545*** (19.30)
전세	2.189*** (10.75)	2.077*** (9.74)
상수항	-1.798*** (-4.39)	3.769*** (9.26)
N	10,301	7,470
adj. R-sq	0.302	0.245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자료: 통계청, 1998년, 2008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표 3-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해 모두 대부분의 설명변수들이 1% 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먼저 가구주의 연령은 가구주 노동소득의 경우와는 달리 1차항만을 이용하였을 때 유의성이 있었다.

노동소득의 추정계수는 재산소득보다 훨씬 컸지만 노동소득의 추정계수 2008년에 감소한 데 비해 재산소득의 추정계수는 다소 상승하였다.

주거유형에 따른 조세부담액의 경우 월세가구에 비해 자가 및 전세가구가 더 큰 점은 두 해 모두 같게 나타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 변수는 1998년에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했으나 2008년에는 근로자 가구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자 가구주의 계수 부호가 바뀌었다. 이는 <표 3-25>에서 보았듯이 무직 가구의 조세부담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무직가구에 비해 자영자 가구의 조세부담액이 낮은 것은 기타가구원의 취업 및 소득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12. 가구 조세부담 불평등 변화

위의 추정식을 이용하여 가구 조세부담에 대한 가상 분포를 구한 결과 아래 <표 3-27>과 같은 지니계수를 구하였다. 1998년의 조세부담 불평등에 비해 2008년의 조세부담 불평등이 줄어들었다. 반면 1998년의 추정계수와 잔차분포를 2008년의 가구별 특성에 대입할 경우 가상분포의 지니계수는 실제 2008년의 조세부담 지니계수보다 크게 높아졌다. 요컨대 실제 조세부담의 불평등이 줄어드는 데에는 가격효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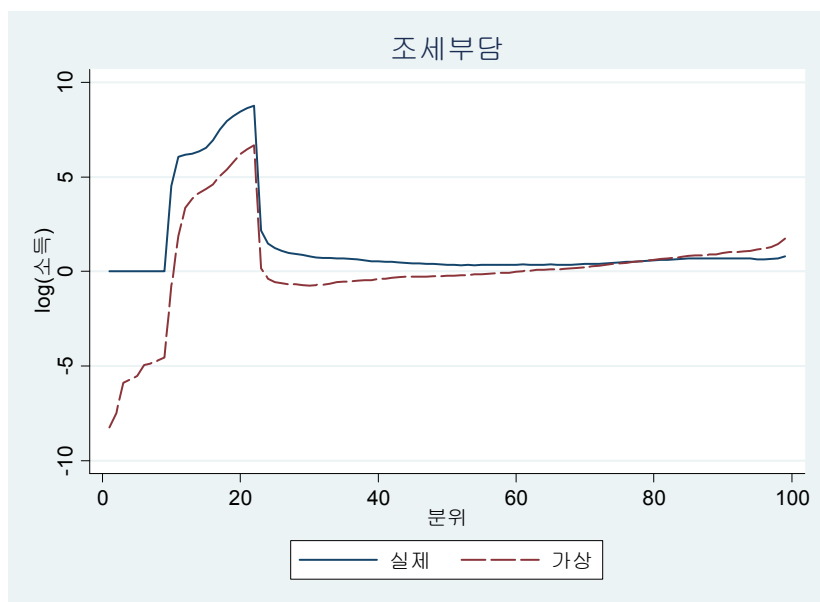
<표 3-27> 가구 조세부담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1998 (A)	2008 (B)	가상의 2008년 (C)	가격효과 ((B)-(C))
지니계수	0.2784	0.1834	0.3217	-0.1383

그런데 아래의 [그림 3-7]을 보면 이러한 가격효과가 주로 저소득층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두 해의 조세부담액 차이는 주로 30/100

분위 이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조세부담의 불평등이 완화된 것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증가한데서 비롯되었고, 가격효과도 역시 중하위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상의 분포에 따를 경우 상위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은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그림 3-7]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조세부담 변화



가구별 조세부담액에 대한 추정식을 바탕으로 각 년도의 조세부담액을 추정한 후, 어떤 요인들이 조세부담 불평등에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아래 <표 3-28>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조세부담 추정값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구한 결과 1998년에는 0.1607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0.1014로 감소하였다.

〈표 3-28〉 2008년 가구(로그)조세부담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08년		98추정계수 적용						98년 추정치
	원값	추정치	상수항	연령	소득	종사상 지위	주거 유형	모두 적용	
지니계수	0.1834	0.1014	0.2460	0.1118	0.0944	0.0971	0.1122	0.1782	0.1607
변화율(%)		0.0	142.6	10.3	-6.9	-4.2	10.7	75.7	58.5

2008년 조세부담액 추정치를 이용한 지니계수와 2008년 추정모형에 1998년의 추정계수들을 대입하여 구한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보면 어떤 요인들이 조세부담 불평등의 변화를 심화 또는 완화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변화율의 값이 음수(-)로 나타나는 요인들은 실제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다. 예컨대 소득(가구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의 1998년 추정계수를 대입하면 2008년의 지니계수는 더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소득에 따른 조세부담 격차 확대 효과가 2008년에는 더욱 강화되었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더욱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도 조세부담을 더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가구주 연령과 주거 유형에 따른 조세부담 격차 효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 가구특성별 사회보장부담의 변화

이제 가구 가처분소득을 구성하는 마지막 항목으로 가구별 사회보장 부담의 불평등과 그것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사회보장부담금은 각 가구원이 납부하는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등을 의미하는데, 가계동향자료에서는 이를 가구단위로 합산하여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보장부담은 가구원 개인의 소득, 연령, 종사상 지위 등 특성에 의존하거나 가구원수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가구 특성별 사회보장 부담의 차이는 가구 구성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가 주어질 때 정확히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가구별 사회보장부담금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의 <표 3-29>이다.

<표 3-2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8년에 가구당 약 4만9천원이었던 사회보험부담금은 2008년에는 16만6천원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세부담의 연평균 증가율 6.5%에 비해 두 배 수준에 이르는 증가속도이다. 가구의 노동소득 증가율이 5.8%에 불과한 결과 가구 노동소득 대비 사회보장부담금의 비율은 10년간 2.9%에서 5.6%로 증가하였다.

〈표 3-29〉 가구 사회보장부담금 관련 기초통계량

(단위: 원/월, %)

	1998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평균	비중	평균	
사회보장부담금		48,833		165,999	13.0
가구주 평균연령(세)		42.3		47.7	
가구 노동소득		1,699,803		2,988,421	5.8
가구 재산소득		56,197		83,196	4.0
가구원수(명)		3.62		3.35	
취업가구원 비율(%)		52.9		56.3	
노인 가구원수(명)		0.16		0.28	
아동 가구원수(명)		0.44		0.27	
가구주 성별 남성	85.5	52,280	81.6	183,198	13.4
여성	14.5	28,535	18.4	89,502	12.1
가구주 근로자	58.1	62,140	60.9	193,954	12.1
경제활동 자영자	29.4	35,013	25.7	157,545	16.2
무직	12.5	19,522	13.5	55,746	11.1
주거 유형 자가	54.5	56,210	65.9	182,988	12.5
전세	34.4	44,573	22.0	163,054	13.8
전세	11.2	26,038	12.1	78,859	11.7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남성 가구가 여성가구에 비해 부담액의 수준과 증가속도가 모두 높았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는 근로자 가구의 부담이 가장 높았으나 증가 속도 면에서는 자영자 가구의 증가율이 평균 1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주거 유형별 비교에서는 자가 보유가구의 부담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전세가구의 부담이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14. 가구 사회보장부담 추정모형 및 결과

가구별 사회보장부담액은 전체 가구원수는 물론 가구원 개인의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사회보장부담금 중 공적연금과 고용보험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이때 가입된 공적연금의 종류나 피보험자의 종사상 지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피부양자 제도로 인해 개인이 아닌 가구특성의 영향을 받지만, 취업 가구원이 다수인 경우 가구단위의 특성보다는 개인단위의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사회보장부담금 추정모형을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설정한 모형과 그 추정결과가 <표 3-30>이다.

사회보장부담금은 개인별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의 크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아 가구단위의 노동소득 및 재산소득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전체 가구소득에서 가구주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전체 부담금 가운데 가구주가 부담하는 역시 비중이 클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연령과 종사상 지위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금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낮거나 매우 높으면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가구주가 근로자일 경우 고용보험을 납부할 뿐만 아니라 소득포착률이 높아 자영자에 비해 건강보험료도 많아진다. 주거유형의 경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가구구성과 관련된 항목, 즉 가구원수나 취업가구원 비율, 노인 및 아동 수 등은 각 가구 내에서 실제로 사회보장부담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원의 수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표 3-30〉 가구 사회보장부담의 추정 결과

설명변수	1998년	2008년
가구주 연령	0.217*** (7.18)	0.113*** (3.84)
연령 제곱	-0.00256*** (-7.56)	-0.00133*** (-4.31)
가구소득	0.355*** (13.28)	0.287*** (11.52)
log(노동소득)	0.01 (1.46)	0.0443*** (6.09)
log(재산소득)		
성별 - 여성가구주	-0.600*** (-5.25)	-0.584*** (-5.65)
가구구성	0.197*** (4.60)	0.178** (3.26)
가구원수	-0.03 (-0.14)	-0.07 (-0.32)
취업가구원 비율	-0.442*** (-4.11)	-0.446*** (-4.99)
노인 가구원수	0.109* (2.36)	0.08 (1.56)
아동 가구원수		
가구주 종사상 지위 (기준= 무직)	0.774*** (4.12)	0.848*** (3.96)
근로자	0.190 (0.99)	0.609** (2.75)
자영자		
주거 유형 (기준= 월세)	1.082*** (10.14)	1.421*** (11.38)
자가	0.942*** (8.59)	1.165*** (8.77)
전세	-1.345* (-2.22)	2.472*** (-3.76)
상수항		
N	10,301	7,470
adj. R-sq	0.328	0.445

주: 괄호 안은 t값이며,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자료: 통계청, 1998년, 2008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노동소득의 계수는 감소한 반면 재산소득의 계수는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동소득의 비중이 재산소득에 비해 월등히 큰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계층별 사회보장부담의 누진도는 다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주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 가구주의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무직 가구주 대비 자영자 가구주의 부담이 1998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2008년에는 5% 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15. 가구 사회보장부담의 불평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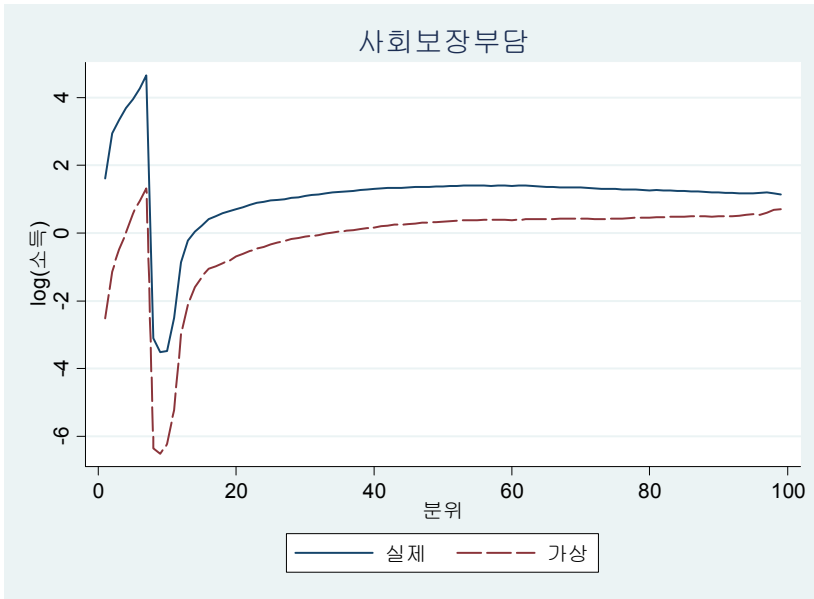
1998년에 비해 2008년의 사회보장부담 불평등은 거의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가상분포를 적용하여 본다면 아래의 <표 3-31>에서 보듯이 불평등은 뚜렷하게 증가했을 것이다. 즉 각 요인별 가격효과가 불평등을 낮추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31> 가구 사회보장부담 가상분포에 따른 지니계수와 가격효과

	1998 (A)	2008 (B)	가상의 2008년 (C)	가격효과 ((B)-(C))
지니계수	0.1129	0.1108	0.1651	-0.0543

아래의 [그림 3-8]을 보면 전 소득계층에서 사회보장부담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하위 10분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10분위 이상 20분위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감소하였다. 20분위 이상에서는 유사한 폭의 부담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보험 부담의 불평등에 거의 변화가 없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1998년과 2008년의 분위별 실제와 가상의 사회보장부담 변화



그런데 실제 부담증가와 가상분포에 따른 부담증가분을 비교해보면 대략 15분위 이하의 전체 구간에서 실제치와 가상치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하위 소득구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빨리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득구간에 따른 변화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사회보장 부담 추정모형에 근거하여 여러 요인을 각기 통제하고 보면 어떤 요인이 얼마나 작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다. 가구별 사회보장 부담금 추정모형에 근거하여 얻은 추정치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구한 결과, 아래의 <표 3-32>와 같이 나타났다.

〈표 3-32〉 2008년 가구 (로그)사회보장부담 불평등 변화의 요인별 분해

	08년		98추정계수 적용								98년 추정치
	원값	추정치	상수항	연령	소득	가구 구성	가구원 취업	경제활동 상태	주거 유형	모두 적용	
지니계수	0.111	0.078	0.120	0.075	0.078	0.078	0.078	0.079	0.077	0.107	0.076
변화율 (%)		0.0	53.9	-4.0	0.8	0.3	-0.1	1.7	-0.4	37.9	-2.7

사회보장부담금 추정액의 지니계수는 1998년 0.076에서 2008년 0.078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1998년 각 추정식의 각 계수값을 2008년 추정식에 대입하여 얻은 지니계수는 크게(37.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상수항의 효과가 크고 기타 다른 항목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중 취업자 비율, 그리고 가구의 주거유형에 따라 사회보장부담이 달라지는 효과는 더욱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추정 사회보장부담액의 지니계수에 대비한 변화율을 보여주는 행에서 이들 계수에 해당되는 칸의 값이 음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구소득(노동 및 재산소득), 가구구성, 가구주 종사상 지위 등에 따라 사회보장부담이 달라지는 효과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요컨대 소득에 따른 사회보장부담의 누진성은 개선되지 않고 미약하게 줄어들었다.



제4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분석의 목적 및 방법

제2절 문헌연구

제3절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제4절 가계의 금융부채와 소득불균형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

가계의 금융부채가 <<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분석의 목적 및 방법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균형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소득불균형이 확대되었음이 보고되고 있다⁷⁾. 그런데 올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주었던 Piketty (2014)는 소득 불균형과 관련해서 자본소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소득불균형이 축적되어 자산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자산을 통한 소득이 소득불균형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금융위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다. 항상소득가설에 의한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채 증가는 소득과 소비의 기간상의 괴리를 축소하는 소비 평탄화라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부채는 저소득자의 미래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유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모기지 부실화 증가는 이러한 부채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계기가 되었다. Iacoviello (2008)와 Kumhof et al. (2013)는 민간부채 또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가계의 부실화가 금융위기를 유발한 요인임을 지적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 증가가 오히려 이들의 부실화를 유발함으로써 후생을 감소시켰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Bertrand and Morse (2013)는 중산층이 부채를 차입한 이후

7) 성명재 (2011), 김낙년 (2012) 참조.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실증 분석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최근의 흐름은 소득불균형에서 자산과 부채가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산과 부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 또는 지출 흐름이 실질적으로 가계의 소비와 후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DP 대비 자산과 부채 규모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지출과 같은 실물경제적 차원에서의 현금흐름 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통한 현금흐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계의 자산 및 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그 완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자산과 부채 중에서도 특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함의를 찾는데 목적이 있었다. 기존에도 계층별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가계의 금융자산에 대한 연구는 가계의 합리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차원에서 연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금융자산과 소득불균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⁸⁾. 반면 제 2절에서 보듯이 가계의 금융부채에 대한 연구 중 다수가 소득계층별 분석을 통해 각 계층별로 부채보유의 특성과 채무상환 위험을 판단함으로써 소득 격차에 따른 가계부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⁹⁾. 그러나 이러한 부채 연구도 소득계층별 부채의 특성 및 변동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분석을 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가계의 금융자산 및 부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그것이

8) 가령 여운경, 주소현(2009)은 부채를 감안한 순자산을 기초로 가계의 적절한 자산배분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박대근(2010)은 가계의 자산보유 특성이 위험자산인 주식투자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9) 김우영, 김현정(2009), 유경원(2009), 함준호 외(2010), 홍기석(2013) 참조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계자산 및 부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함의를 추출하고자 했다는데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한 저소득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 상반된 논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신용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저소득층에게 신용공급을 해줌으로써 소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저소득층의 과도한 차입을 유발하여 결국 미래의 소득불균형을 확산시키고 가계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가계 부채가 소득불균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통계청이 조사, 발간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중에서 금융부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자료는 2012년부터 확대 개편된 패널자료로서 그 이전 조사와 단층이 발생하여 시계열적인 분석에는 아직 한계가 존재하지만, 다른 조사에 비하여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한 상세한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가계의 현황에 대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소득 흐름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서베이 자료가 저량 변수인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단점이 있으며, 반대로 금융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나 소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단점이 있는데 비하여 동 자료는 두 가지 측면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답변자에 의존도가 높은 서베이 자료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자의 금융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었는지는 의문이 있었다. 본 연구는 분석 과정에서 이와 관련

한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향후 이 서베이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절은 가계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한 문헌 연구이다. 제 3절에서는 분석자료와 관련한 기초 통계량과 함께 소득계층별 가계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제 4절에서는 가계 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 5절은 결론이다.

제2절 문헌연구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와 소득불균형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이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금융부채와 관련해서도 연구의 주요한 초점은 가계부채의 소득에 대한 영향보다는 소득의 가계 부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가령, 김우영·김현정(2009)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50대 중반까지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했음을 보고하였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지역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보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지적하였다. 유경원(2009)은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계층과 고소득 계층에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함준호 외(2010)는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총 2,210만명의 개인 신용 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는 금융부채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득계층별로 부채 규모 또는 부채비율의 차이가 존

재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하였고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김경아(2011)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인구학적 특성이 가구부채 보유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부동산자산 및 소득과 같은 요인이 부채보유에 유의적인 영향이 컸음을 지적하여 소득계층간의 부채수요가 상이하았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학주(2005)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소득계층별 부채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그 방법이나 분석 결과는 다른 연구와 다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 대부분은 소득불균형과 금융부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던 것은 아니고, 금융부채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소득이라는 변수를 분석하는 차원이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그 부채규모 또는 부채비율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소득계층이 부채 보유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반대로 부채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연구는 가계의 부채 증가를 우려하면서 그 논의의 초점을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시장의 건전성 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맞추었다. 유경원(2009)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함준호 외(2010)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면서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전승훈·임병인(2012)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느 계층에서 부채상환위험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처럼 이들 연구는 미시적인 자료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함의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영

향, 가령 부채가 개별 가계의 미래소득이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 인지에 대한 분석은 관심이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친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은 2000년대 후반 까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가 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가 중산층 및 저소득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고소득층이 자금공급자였던 것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고소득층이 자금차입을 주도해 왔다¹⁰⁾.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차입 증가가 사회후생을 개선하고 소득불 균형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는가에 대한, 이른바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이들의 소득을 개선하고 후생을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 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증가가 미래의 소득이나 소비능력 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과거 금융 발전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금융발전으로 인하여 정보 의 비대칭성이 완화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 제약이 완화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거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Greenwood and Jovanovic(1990)는 이러한 금융발전의 영향력이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고, 따라서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상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Bertrand and Morse(2013)의 지적대로 저소 득층의 경우에는 신용공급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증가한다면, 오히려 신용공급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낮추어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금융부채

10) 여러 연구들이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 중심의 실물자산 증가가 금융부채의 증가와 병 행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유경원(2009), 최원호(2013), 홍기석(2013) 참조

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제3절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제 3절에서는 소득분위별로 자산과 부채의 보유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보유 특성이 소득계층별 소득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소득불균형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1. 분석 자료

자산과 부채는 과거의 소득이 누적된 결과이거나 아니면 미래의 소득을 전제한 차입을 통해 보유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보유는 역으로 가계의 소득이나 현금흐름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즉 자산 보유에 의한 재산소득은 보유가계의 소득 증가 요인이지만, 부채 보유로 인한 이자비용 지급은 실제 소비에 가용되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즉 자산 및 부채 보유가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계층별로 자산 및 부채 규모나 구성이 다르다면, 이로 인해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소득흐름이 발생하여 소득불균형의 축소 또는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한 소득 및 현금흐름의 파악이 소득불균형 연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가계소득 분석에 가장 적합한 자료는 조세 자료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는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가계의 소득 및 자산·부채 보유 현황 분석에는 통계청 등이 작성하는 서베이 자료와 신용

평가회사의 자료가 주로 이용된다. 개인신용 평가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집계된 자료는 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개인별로 금융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어도 성인 이상의 대부분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전수 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¹¹⁾. 그러나 이 자료는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개별 소득자에 대한 연간 소득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 시점의 소득 자료를 집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차입자의 상당 부분 소득이 실제 소득이 아니라 추정 소득이다. 그러므로 소득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 소득이 추정되기 때문에, 분석 모형에 의하여 편향되게 추정된 소득이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동 자료가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자산과 여타 부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한편, 서베이 조사 자료로서는 ‘노동패널조사’,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전의 ‘가계금융조사’) 등이 있다. 노동패널조사는 패널자료로서 가계의 소득 및 자산·부채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패널조사의 주된 목적이 노동시장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 조사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현금흐름이 보고되기는 하나, 원리금 상환금액 총액만이 제공될 뿐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보고되고 있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인한 현금흐름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과거의 도시기계조사가 확대된 것으로서, 2008년 조사 명칭이 가계동향조사로 변경되었다. 가계동향조사는 금융부채로 인한 이

11)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별 차주의 정보를 수집하고 집계하고 있으며, KCB 또는 NICE 등의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신용등급을 책정하고 있다.

자비용을 별도로 보고하고 있어 금융부채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는 본 연구의 분석 목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첫째, ‘가계동향조사’는 유량변수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가계의 자산액과 부채액과 같은 저장변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노동패널조사’와 달리 동 조사는 패널자료로 작성되지 않아서, 개별 가계의 시계열 변동과 그에 따른 행태 분석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비하여 2012년부터 새로 개편되어 작성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금융과 관련해서 자산액 및 부채액과 같은 저장변수는 물론이고 이자비용, 원금상환액 및 재산소득과 같이 자산과 부채 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자료는 그 전신적인 가계금융조사는 물론이거니와 2011년까지 작성된 가계금융조사와 구성과 표본 등이 달라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노동패널조사’와 ‘가계동향조사’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가계의 소득 및 부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본 연구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이유는 시계열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동 자료가 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금액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현재 가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주로 이용하여 가계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보조적으로 2012년 자료를 추가하여 자산과 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융부문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서베이 자

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동 자료에서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서베이 자료가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답변 정확성에 따라 자료의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금액이나 가격 변화가 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달리 답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보고는 답변자가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높다. 특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한 저장변수와 달리 이자 및 재산소득과 같은 유량변수는 정확성의 문제가 더욱 우려된다. 금리 및 시장가격 변화로 인하여, 그리고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의 연간 변동성으로 인하여 연간 단위로 정확한 재산소득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하기는 실제 쉬운 일이 아니다. 같은 유량변수라고 하더라도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연간 단위의 소득 정보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정확성이 훨씬 높으나, 이자비용은 응답자가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계산하고 집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확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단 금융부채 금액과 이자비용의 정보간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금융부문 조사의 표본 가구 수는 총 9,080 가구였다. 2013년 금융부채가 있다고 보고한 가구 중에서 1,043가구가 이자비용이 없다고 보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 자료가 2012년 동안의 소득 항목을 기입한 것인 반면 금융부채 잔액은 2013년 3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두 항목 간에 시차가 존재하여 이러한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 가구가 2012년 3월말 현재 금융부채 잔액이 있었는지도 동시에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 중 387개의 가구는 2012년 3월말 현재 금융부채 잔액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이들 가구가 2013년 1월 이후 금융부채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이들 가구의 답변이 오

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656 가구는 2012년에도 금융부채가 존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적어도 이들 가구는 이자비용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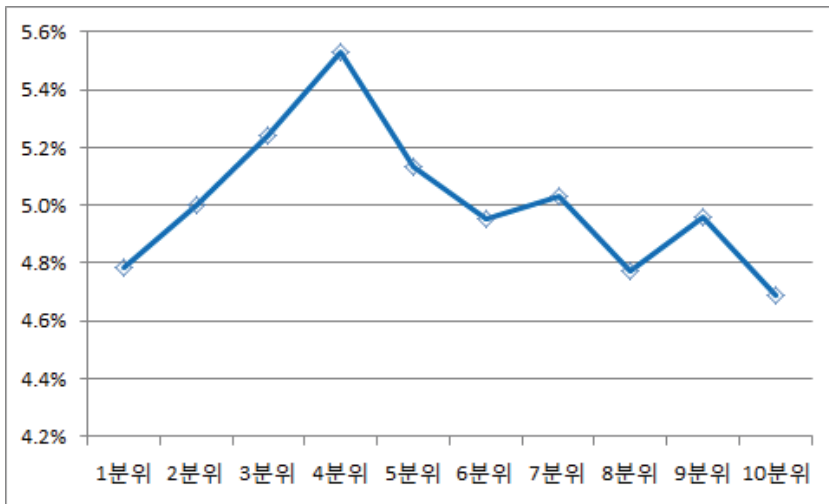
[그림 4-1]은 소득계층별로 금융부채가 존재하는 차입가구만을 대상으로 2013년 3월말 금융부채 잔액 대비 이자비용을 금융부채이율로 정의하고 계산한 것이다. 물론 평잔 기준이 아니며 소득측정 기간과 부채 측정일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소득계층별로 평균적으로 유사한 오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소득계층별 금융부채이율은 상호 비교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높은 신용등급을 평균적으로 갖고 있음을 전제할 때, 등급이 높아질수록 신용가산금리가 낮아져서 금융부채이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미리 짐작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림 4-1]에서 보듯이 부채이율은 1분위에서부터 4분위까지 사이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이율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4분위 이후부터는 부채이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이자비용을 과소 보고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점검 사항을 볼 때, 이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서 이자비용이 축소 보고될 가능성 역시 크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¹²⁾. 다만 본 연구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소득계층별 분해와 분석을 실시한 것은 이자비용이 없다고 보고한 상당수의 자료가 금융부채액이 매우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평균적인 수치를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그 오류가 희석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이자비용을

12) 이러한 보고 누락 가능성은 자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산소득을 자산 또는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자산수익률을 계산할 때 일관된 수치를 얻을 수 없어 자료의 정확성을 확신할 수 없었다.

과소 보고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 자료를 기초로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로 인한 문제를 지적할 경우 적어도 그 결론이 저소득층 금융부채의 심각성을 과대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또 하나의 이유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치의 부정확성이 존재하는 표본을 전제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향후 동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응답지에 대한 합리성을 점검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서베이 방법을 보완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4-1] 부채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부채이율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 분석 내용

소득계층별 구분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하였다. 우선 모든 소득범주는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된 소득을 구하였다. 그리고 표본의 각 가구의 균등화소득에 가구가 중치를 이용하여 전체 소득 분포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가구가 어느 소득 계층에 속하는지 확정하였다. 그러나 분석에 이용한 수치는 균등화소득이 아니라 자료에서 제공된 가구소득을 이용하였다. 또한, 자산 및 부채 관련한 수치 역시 동일하게 표본에서 제공된 수치를 이용하였다.

〈표 4-1〉 소득분위별 경상소득과 자산 및 부채

(단위: 만원)

항목	경상소득	자산		부채		순자산	
		금액	배수	금액*	배수*	금액	배수*
1분위	488	7,772	15.9	891	1.8	6,881	14.1
2분위	1,135	12,266	10.8	1,766	1.6	10,500	9.3
3분위	1,915	15,784	8.2	2,749	1.4	13,036	6.8
4분위	2,616	19,843	7.6	3,203	1.2	16,639	6.4
5분위	3,335	23,610	7.1	3,938	1.2	19,672	5.9
6분위	3,995	27,587	6.9	4,581	1.1	23,006	5.8
7분위	4,867	33,294	6.8	5,385	1.1	27,909	5.7
8분위	5,945	39,031	6.6	7,401	1.2	31,630	5.3
9분위	7,642	50,947	6.7	9,214	1.2	41,733	5.5
10분위	13,393	107,236	8.0	18,333	1.4	88,903	6.6
전체	4,433	33,190	7.5	5,638	1.3	27,552	6.2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주: 경상소득 대비 자산, 부채, 또는 순자산 금액의 배수

〈표 4-2〉 소득분위별 각 항목별 비중

(단위: %)

항목	경상소득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액	금융자산	금융부채	순금융자산
1분위	1.1	2.3	1.6	2.5	1.3	1.6	0.9
2분위	2.5	3.6	3.1	3.8	2.4	3.1	1.2
3분위	4.2	4.7	4.8	4.7	3.6	4.7	1.8
4분위	5.8	5.9	5.6	5.9	5.3	5.9	4.3
5분위	7.4	7.0	6.9	7.0	6.5	7.2	5.2
6분위	8.8	8.2	8.0	8.2	7.2	8.8	4.4
7분위	10.7	9.9	9.4	10.0	9.9	9.8	10.0
8분위	13.1	11.6	12.9	11.3	12.5	12.7	12.2
9분위	16.9	15.1	16.0	14.9	15.6	15.5	15.7
10분위	29.5	31.8	31.9	31.8	35.6	30.8	44.3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4-1〉은 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경상소득과 자산 및 부채 금액을 요약한 것이다. 경상소득은 평균 4,433만원이었으며, 자산액과 부채액은 각각 경상소득의 7.5배, 1.3배인 33,190만원, 5,638만원이었다. 그리고 순자산은 경상소득의 6.2배인 27,552만원이었다. 한편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 소득은 488만원으로서,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 계층 소득의 3.6%에 불과하였다.

〈표 4-2〉는 각 소득계층의 표본수를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할 때 각 분위별 값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여, 분위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경상소득의 경우 1분위 소득은 전체의 1.1%인데 비하여 10분위 소득은 29.5%를 차지하였다. 자산과 순자산의 불균형 정도는 경상소득보다 커서 10분위 소득의 비중은 공히 전체의 31.8%였다.

다만 1분위의 경우 자산 및 순자산액은 경상소득의 경우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편 자산(또는 부채)를 금융자산(또는 금융부채)과 비금융자산(또는 부채)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조사 자료에 의하면 금융자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적금 및 금융상품 그리고 사적인 채권 계약액뿐만 아니라, 권리금, 임차보증금 및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이 포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권리금, 임차보증금 및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은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금융자산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보유 자체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권리금은 사업소득을 명목으로 한 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그 자체로서 수익을 올린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차보증금 및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 역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이자나는 자산’(Interest Bearing Capital)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조사 자료와 달리 이들 세 항목을 금융자산 항목에서 제외하여 비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금융자산액 계산에서 차감하였다¹³⁾. 이렇게 계산한 금융자산액의 소득계층별 비중을 살펴보았다. 1분위의 금융자산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액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전체의 1.3%에 불과하였다. 또한 순금융자산도 순자산액 2.5%보다 낮은 0.9%로서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에서 훨씬 소득계층별 불균형 정도가 훨씬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4-3〉은 경상소득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각 분위의 비중을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1분위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매우 낮은 비중이었으며 재산소득의 비중이 경상소득 비중에 비

13) 동 조사자료는 부채를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분류하여, 임대보증금을 금융부채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이 전자는 금융성으로, 후자는 비금융성으로 분류됨으로써 분류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하여 낮은 수치였다. 대신 이전소득은 2분위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10분위의 경우에는 재산소득이 전체의 48.8%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유형에 비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재산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소득불균형이 가장 컸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자산의 불균형이 소득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표 4-3〉 소득유형별 분위 비중

(단위: %)

항목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1분위	1.1	0.3	0.3	0.9	12.1
2분위	2.5	1.6	1.7	2.9	14.9
3분위	4.2	3.8	4.0	2.9	10.6
4분위	5.8	6.0	4.9	4.5	8.1
5분위	7.4	7.5	7.0	5.3	9.3
6분위	8.8	9.4	8.3	5.0	8.5
7분위	10.7	11.4	10.2	7.4	9.1
8분위	13.1	13.7	13.2	9.4	9.7
9분위	16.9	19.1	14.2	12.8	9.0
10분위	29.5	27.3	36.3	48.8	8.6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4-4〉 분위별 소득 유형의 비중 (경상소득 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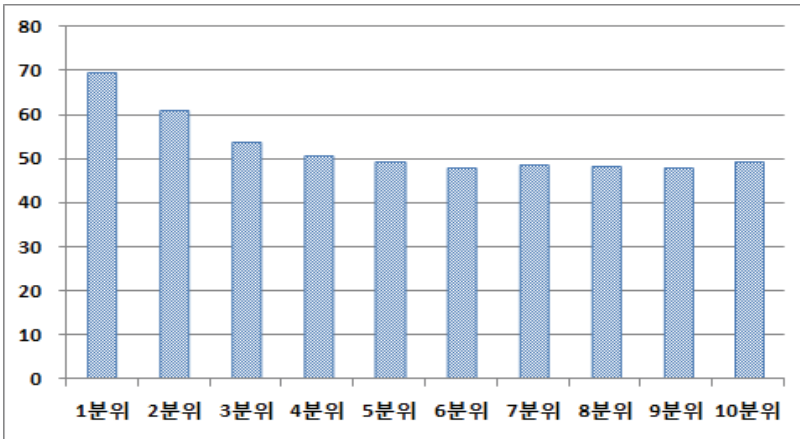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경상소득
1분위	17.4	7.7	4.5	70.4	100.0
2분위	39.2	17.5	5.9	37.4	100.0
3분위	56.6	24.0	3.6	15.8	100.0
4분위	65.5	21.7	4.0	8.8	100.0
5분위	63.9	24.4	3.7	8.0	100.0
6분위	66.8	24.2	2.9	6.1	100.0
7분위	66.7	24.4	3.6	5.3	100.0
8분위	65.8	25.8	3.7	4.6	100.0
9분위	71.1	21.7	3.9	3.4	100.0
10분위	58.1	31.6	8.5	1.8	100.0
전 체	62.6	25.7	5.2	6.5	100.0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10% 이하였다(이하 〈표 4-4〉 참조). 10분위 계층의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의 8.5%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계층의 재산소득 비중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한편 1분위 계층은 이전소득이 전체의 70.4%를 차지하였고, 2분위는 이보다 낮지만 전체의 37.4%로서 근로소득 비중 39.2%에 버금가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10분위는 다른 계층에 비하여 사업소득 비중과 재산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근로소득 비중은 58.1%로서 3분위 내지 9분위까지의 그것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1, 2분위의 이전소득이 높은 이유는 그 연령별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2]는 각 분위별 평균연령을 도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 2분위의 평균 연령은 각각 70세 및 61세로서 3분위 이하의 가구가 대

부분 40대 후반 50대 전반인 것과 대조된다. 그러므로 노령화가 소득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⁴⁾.

[그림 4-2] 분위별 평균 연령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4-5〉와 〈표 4-6〉은 자산과 부채 측면에서 소득분위별 분석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재산소득은 앞서 지적한 대로 소득유형 중 가장 불균형이 심한 항목이었다. 재산소득자 비율을 보더라도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분위의 경우에는 재산소득자 비율이 18.5%였으나, 10분위의 경우에는 79.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재산소득 비율, 이를테면 자산수익률을 보면 소득분위별 대소의 차이는 존재하나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에도 자산수익률이 1.1%에 불과하였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조세 등의 이유로 인하

14) 연령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규모나 구성의 차이가 소득불균형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고령화 등 연령별 자산과 부채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여 재산소득을 과소보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소보고가 자산수익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산수익률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자산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 등 수익이 창출되는 수익성 자산인 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세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재산소득이 계상되지 않는 무수익성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자산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으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실물자산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금융자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약 10% 내지 20% 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반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최소 8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즉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비중이 재산소득이 낮게 나타난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¹⁵⁾.

15) 이처럼 실물자산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전세금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월세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어 이러한 소득원천을 충분히 조사 결과에 반영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다.

〈표 4-5〉 분위별 재산소득 및 자산 구성

항목	재산소득	재산소득자 비율	재산소득/ 자산	금융자산 /자산	비금융자산/ 자산
1분위	22	18.5%	0.3%	10.7%	89.3%
2분위	67	25.5%	0.5%	12.2%	87.8%
3분위	69	23.6%	0.4%	14.2%	85.8%
4분위	106	24.3%	0.5%	16.5%	83.5%
5분위	123	28.4%	0.5%	16.9%	83.1%
6분위	117	31.3%	0.4%	16.1%	83.9%
7분위	174	34.6%	0.5%	18.3%	81.7%
8분위	221	48.6%	0.6%	19.8%	80.2%
9분위	300	49.2%	0.6%	18.9%	81.1%
10분위	1,142	79.2%	1.1%	20.5%	79.5%
전 체	232	34.0%	0.7%	18.2%	81.8%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반면 부채 구성은 자산 구성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금융부채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분위에서 전체의 65% 내지 7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비금융부채는 모든 분위에서 전체의 1/3 이하 수준으로서, 부채의 경우에는 이자비용이 지급되는 금융부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측정하여, 자산 대비 부채 비율과 비교해보았다. 전체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분위별로 차이는 있지만 10~20% 수준이었으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부채비율은 10분위가 가장 낮은 55.6%를 기록하였으나, 나머지 분위는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1분위 및 2분위는 각각 76.5% 및 81.8%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자산 및 부채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순금융자산 비중도 매우 낮은 수

준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순금융자산 (= 금융자산-금융부채)의 비중은 1, 2 분위가 각각 2.8%, 2.6%였으며,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에도 11.0%에 불과하였다.

〈표 4-6〉 분위별 부채 구성 및 이자비용

(단위: %)

항목	금융부채 /부채	비금융부채 /부채	금융부채 /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순자산
1분위	71.1	28.9	76.5	2.8
2분위	69.2	30.8	81.8	2.6
3분위	67.0	33.0	82.2	3.1
4분위	72.6	27.4	71.1	5.7
5분위	72.1	27.9	71.2	5.8
6분위	75.7	24.3	78.1	4.2
7분위	72.1	27.9	63.8	7.9
8분위	68.1	31.9	65.2	8.5
9분위	66.8	33.2	64.1	8.3
10분위	66.5	33.5	55.6	11.0
전 체	68.9	31.1	64.2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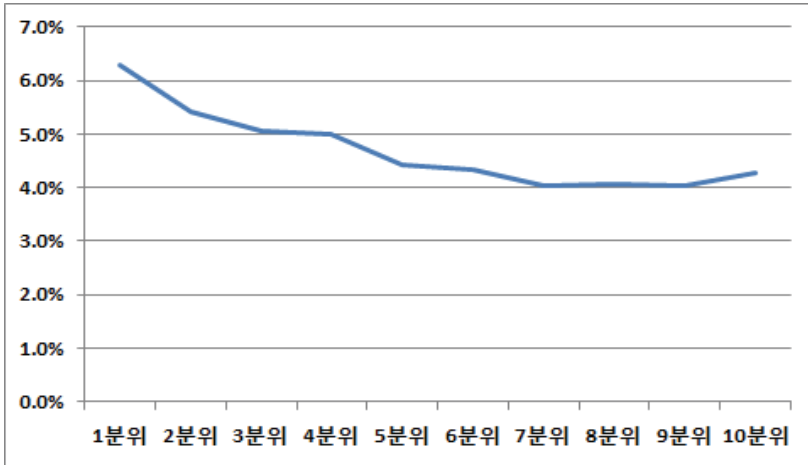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처럼 가계의 부채 구성에서 특히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금융부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소득분배의 관점에서 주시해야 할 사안이다. 금융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파산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계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DTI 등 규제 장치와 장기 고정금리의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등과 같은 정책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계파산의 방지가 목표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가계가 채무불이행의 상태로 전락하지 않더라도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이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킨다면, 가계의 실질적인 후생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차입을 통해 현재의 소비 및 기타 활동은 제고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미래에 전가되어 미래소득이 악화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금융부채가 가계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이 저소득층에 보다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면, 결국 가계부채는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즉 금융부채로 인한 소득불균형 확대가 우려되는 셈이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는 신용제약이 있는 저소득층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가 오히려 이자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킨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왔던만큼, 이러한 신용공급 증가가 소득불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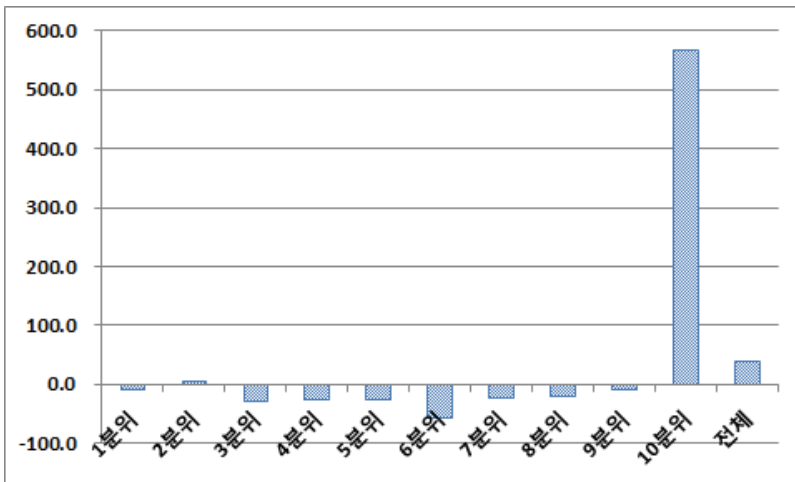
[그림 4-3] 이자부담률



주: 이자부담률=이자비용/경상소득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4] 소득분위별 순재산소득



주: 순재산소득 = 재산소득-이자비용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3]의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3]은 경상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이자부담률이라고 정의하고 소득 분위별로 그 수치를 도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0분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9분위부터 1분위에 이르기까지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가 소득분위별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계부채의 이자비용 부담이 재산소득으로 충분히 보전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그림 4-4] 참조). 재산소득에서 이자소득을 차감한 값을 순재산소득이라고 정의할 때, 10분위와 2분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소득분위에서는 음의 값이었다. 이것은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통한 수익 이외의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자산과 부채의 경우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산과 부채 구성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금융부채의 비중이 커서 이자비용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소득분위별로 불균형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계의 금융부채가 오히려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산과 부채 중에서 소득불균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융부채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부담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후생 감소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 4절에서는 가계의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이것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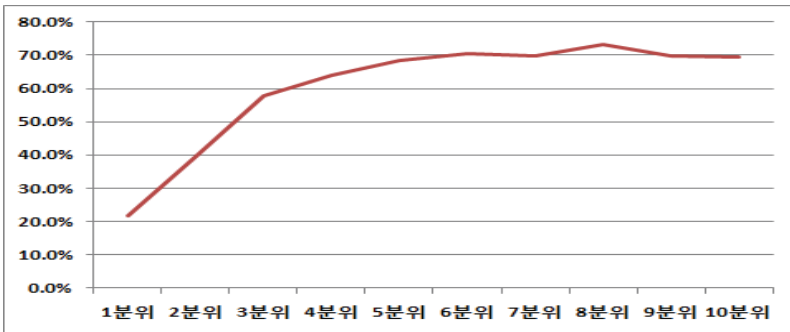
16) 앞서 지적했듯이 재산소득이 과소 보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수치가 과소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4절 가계의 금융부채와 소득불균형

1. 차입가구의 분석

제 3절에서 자산과 부채 중에서 소득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금융부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가계 중에서 금융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소득분위에 따라서도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계 비중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그림 4-5] 참조). 1분위의 경우 차입자는 21.7%에 불과하며 2분위 역시 39.7%의 가구만이 금융부채를 보유하였다. 차입가구 비중은 3분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분위가 가장 높은 73.2%의 가구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0분위는 69.6%의 가구가 금융부채를 보유하였다. 그러므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부채의 영향을 살펴보면, 금융부채가 없는 가구가 포함됨으로써 금융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차입가계를 대상으로 금융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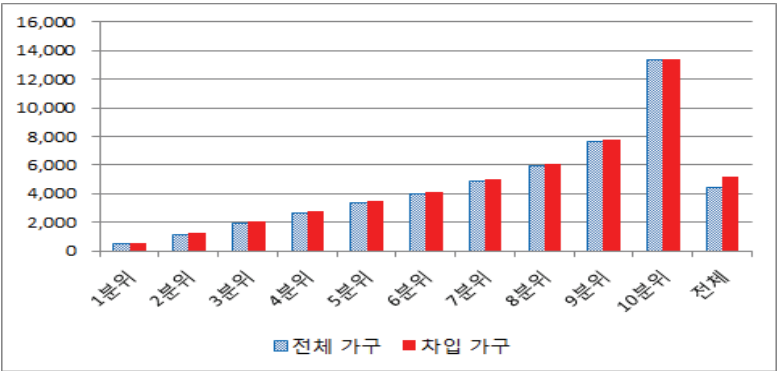
[그림 4-5]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중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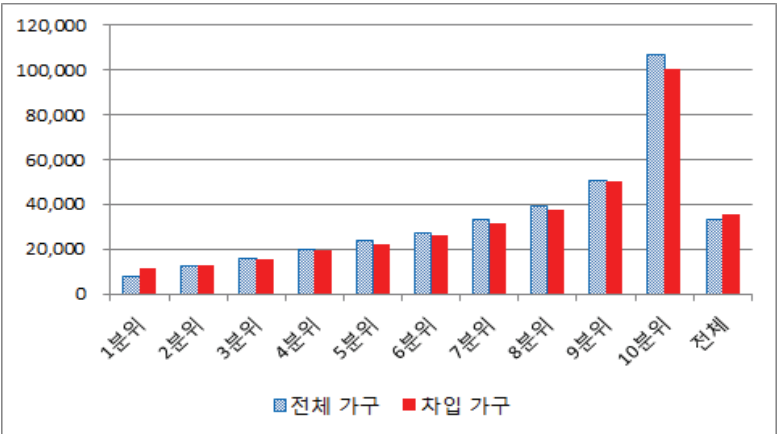
[그림 4-6] 전체 가구와 차입가구의 특성 비교

Panel A. 경상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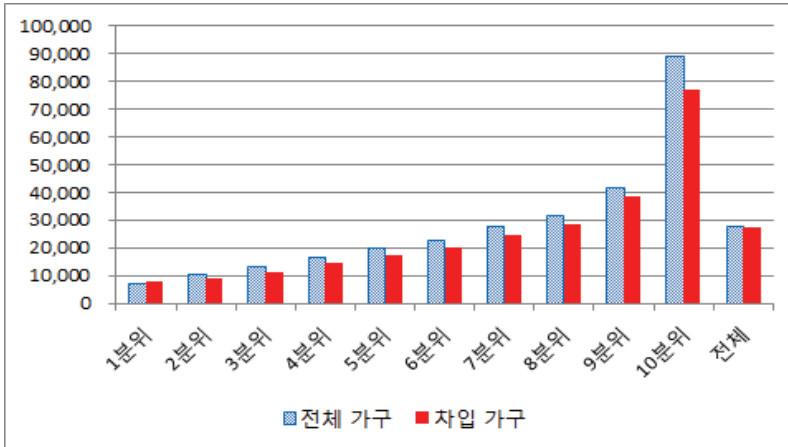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Panel B.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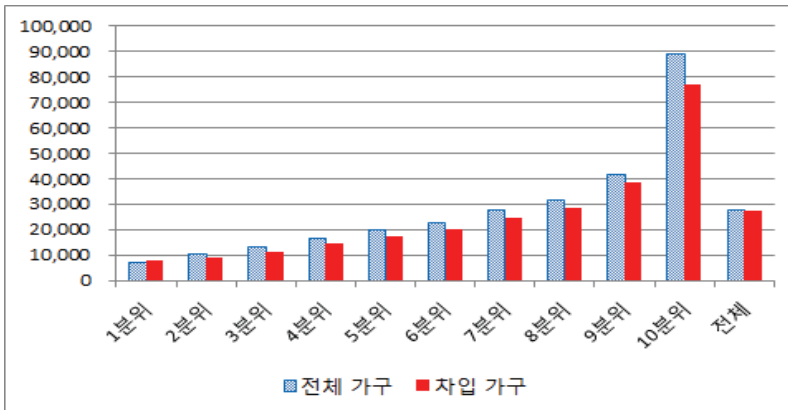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Panel C. 순자산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Panel D.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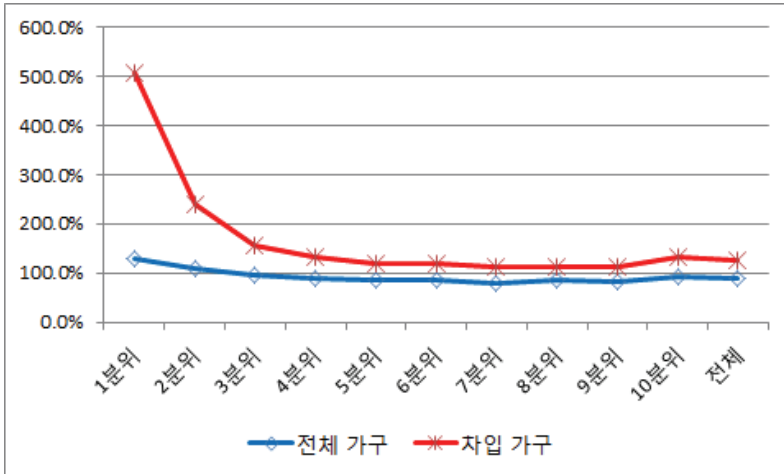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6]은 전체 가구와 차입 가구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경상소득은 1, 2분위를 제외하고는 차입 가구가 전체 가구에 비하여 100만원 정도 높은 소득을 기록하였다. 이 점에서 본다면 원리금 부담 능력이 있을수록 차입이 커진다고 할 수도 있겠다. 반면 자산 및 순자산의 경우에는 1~2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분위에서 전체 가구가 차입 가구보다 금액이 컸다. 또한 금융자산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소득과 달리 자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입 가구가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소득 및 자산금액으로 살펴본 채무상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가계가 차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소득분위별로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차별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1, 2분위의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다른 분위보다 특별히 크지는 않았다(제 3절의 [그림 4-3] 참조). 그러나 이처럼 금융부채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1,2분위의 차입가구 비중이 크지 않아 무차입가구까지 포함된 전체 가구 대상으로 한 비율에서는 그 차이가 희석되었기 때문이었다. 차입가구만을 볼 때, 1분위의 금융부채 비율은 약 507%로 나타나 다른 분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7] 참조). 2분위의 경우에도 1분위보다는 낮지만 차입가구의 금융부채 비율은 약 241%로서 다른 분위보다 높은 수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분위부터 금융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되어 나머지 분위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거나 소득분위에 따라 특정한 패턴이 있다고는 볼 수 없었다. 결국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은 1, 2분위에 보다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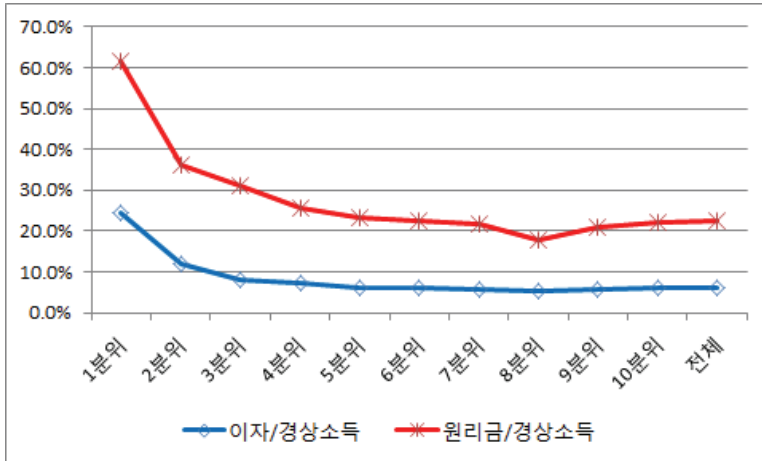
[그림 4-7]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처럼 높은 금융부채 비율은 차입가계의 금융비용 부담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4-8] 참조). 1분위의 경상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 곧 이자부담률은 24.2%로서 1분위 차입가계 소득의 거의 1/4이 이자비용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의 이자부담률은 크게 하락했으나 여전히 다른 분위보다 높은 12.0%를 기록하였다. 이후 분위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률은 대체적으로 하락하였다. 이것은 원리금 지급 비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1분위와 2분위의 경상소득 대비 원리금지급 비율은 각각 61.4%, 36.2%로 기록되었다. 통상적으로 원금상환액이 다시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로 인한 현금유출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 2분위의 경우에는 이자비용 그 자체만으로서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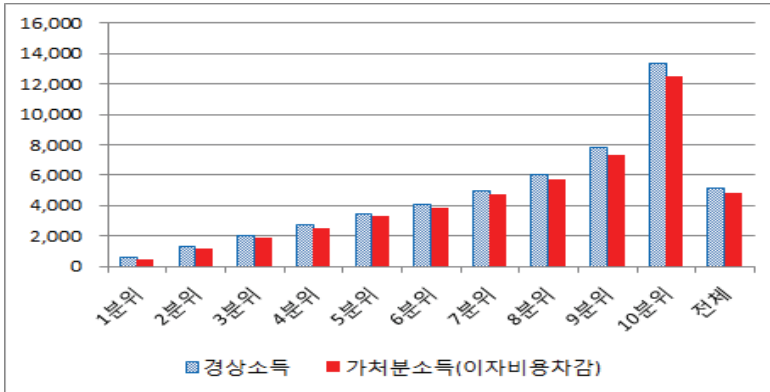
[그림 4-8] 차입가구의 금융비용 비율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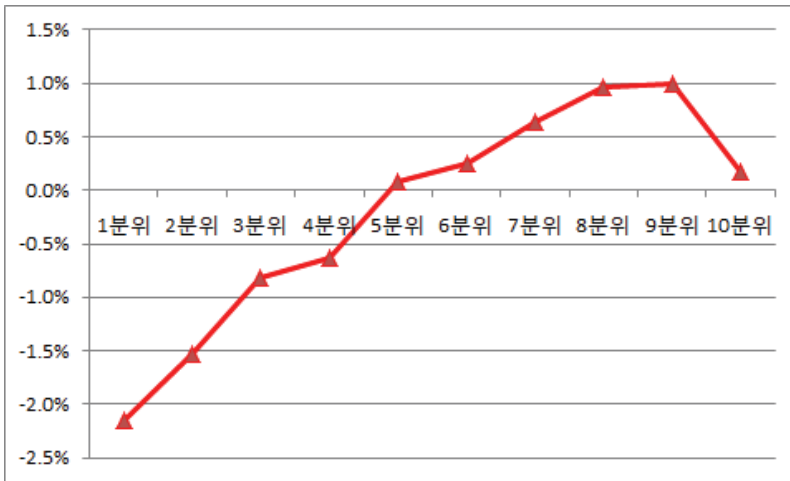
이 결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불균형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9] 참조). 모든 분위에서 이자비용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였지만, 특히 1분위와 2분위의 가처분소득 감소 비율이 가장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그림 4-10]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0]은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각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비율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경상소득 비율을 차감한 것이다. 1분위의 경우에는 가처분소득이 경상소득에 비교할 때 평균적인 가계 소득 대비 2.1%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준은 낮지만 4분위까지는 가처분소득이 경상소득의 경우보다 평균소득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분위부터는 가처분소득이 경상소득으로 계산할 때 보다 평균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처분소득의 불균형성 심화는 결국 이자비용이 소득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4-9] 소득분위별 차입가계의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이자비용차감)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10] 가처분소득(이자비용 차감)으로 인한 소득분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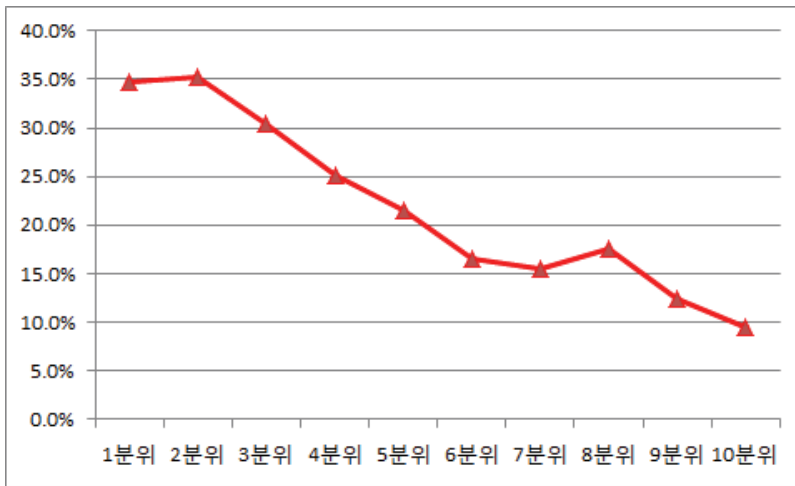


주: 가처분소득의 평균 수준 대비 비율 - 경상소득의 평균 수준 대비 비율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추가적으로 소득분위별로 소득이 낮을수록 연체율도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동 조사 자료에서는 1개월 이상 연체가 존재했을 경우를 기입하도

록 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연체자산으로 정의할 때 최소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는 것과는 다른 정의인 것으로, 기술적인 실수로 인해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채무불이행 확률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만을 통해서 볼 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이자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1] 참조).

[그림 4-11] 소득분위별 연체율



주: 연체율은 1년 중 1개월이라도 연체가 존재할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부여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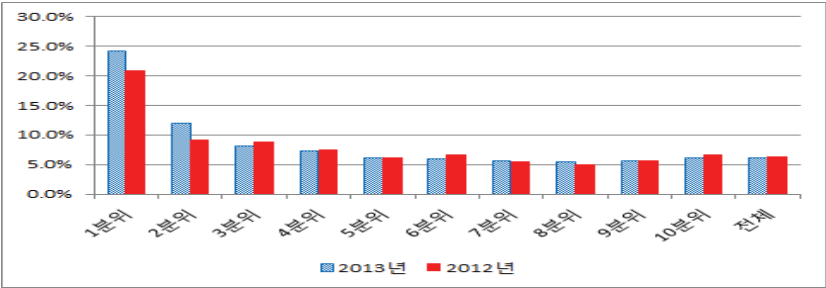
2. 패널 분석

차입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이자비용을 차감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만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공급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소득불균형은 여타의 많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본다면 1,2분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것은 이자비용 증가 때문이 아니라 소득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그나마 가계부채를 통해 소득이 더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패널 분석을 통해 개별가구의 부채 변화가 미래 소득이나 가처분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나, 앞서 지적한 대로 동 자료의 2012년과 2013년 자료만이 패널로서 이용될 수 밖에 없는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본 연구는 2012년 자료를 일부 이용하여 가계부채와 소득불균형간의 인과관계의 개연성 분석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그림 4-12]는 2012년과 2013년의 이자부담률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의한다면 2012년에 비교할 때 2013년 이자부담률은 1분위와 2분위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다른 분위의 경우에는 오히려 2013년 이자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아니면 2013년 이자부담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가계비용 부담은 2012년에 비해 2013년 크게 악화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처럼 저소득층의 이자부담률이 증가한 것은 경상소득 증가에 비해 금융부채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표 4-7〉 참조). 1분위의 경우 금융부채는 18.2% 증가했으나 경상소득은 단지 0.3% 증가에 그

침으로써, 금융부채의 증가가 이자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이자부담률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득 증가보다는 미래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12] 이자부담률 추이



주: 이자부담률= 이자비용/경상소득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4-7〉 경상소득 및 금융부채 증가율

분위	경상소득			금융부채		
	2012년	2013년	증가율	2012년	2013년	증가율
1분위	574	576	0.3%	3,038	3,592	18.2%
2분위	1,222	1,277	4.5%	2,681	3,743	39.6%
3분위	1,904	2,054	7.9%	4,265	4,081	-4.3%
4분위	2,530	2,733	8.0%	4,206	4,474	6.4%
5분위	3,149	3,479	10.5%	4,747	5,163	8.8%
6분위	3,858	4,118	6.8%	5,653	5,977	5.7%
7분위	4,596	5,004	8.9%	5,970	7,045	18.0%
8분위	5,698	6,039	6.0%	8,093	9,477	17.1%
9분위	7,184	7,800	8.6%	11,017	12,064	9.5%
10분위	12,764	13,363	4.7%	21,999	23,321	6.0%
전 체	4,934	5,159	4.6%	7,908	8,519	7.7%

자료: 통계청, 2012,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제 패널분석을 위해서 금융부채의 표본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차입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2013년 금융부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고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앞서 설문자료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2013년 금융부채가 존재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이자비용이 0으로 보고되는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여 이를 제외하였으며, 반대로 이자비용이 보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부채가 없다고 보고한 가구 역시 제외하였다. 셋째, 패널 자료의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가계 역시 제외하였다. 이처럼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제외한 결과 총 3,819 차입가구만이 패널 분석을 위한 자료로 채택되었다.

〈표 4-8〉은 패널 자료의 기초통계량이다. 1년 동안에도 차입가구의 소득분위별 이동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소득분위의 변화가 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1분위의 경우 경상소득은 전년 대비 62.3% 하락하였고, 소득분위도 평균 1.6등급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분위의 경우에는 2012년 평균 분위는 9.4이었으며, 이처럼 6분위 이상에서의 평균등급 변경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패널자료의 기초 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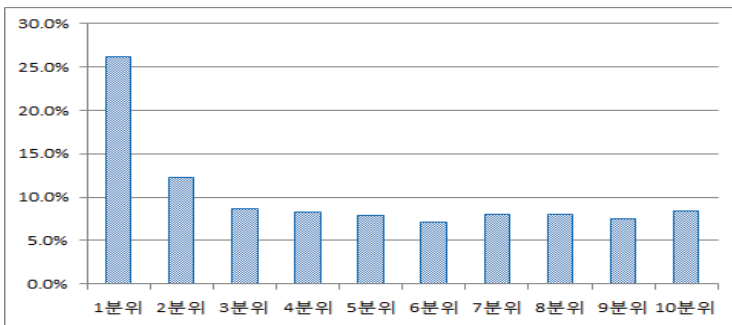
분위	연령	2012년 소득분위	경상소득		
			2012년	2013년	증가율
1분위	60	2.6 (-1.6)	1,566	590	-62.3%
2분위	55	2.9 (-0.9)	1,781	1,317	-26.1%
3분위	49	3.8 (-0.8)	2,535	2,145	-15.4%
4분위	48	4.6 (-0.6)	3,001	2,763	-7.9%
5분위	47	5.3 (-0.3)	3,594	3,554	-1.1%
6분위	47	6.0 (0.0)	4,067	4,226	3.9%
7분위	48	6.8 (0.2)	4,811	5,078	5.6%
8분위	47	7.6 (0.4)	5,627	6,083	8.1%
9분위	47	8.6 (0.4)	7,152	7,847	9.7%
10분위	49	9.4 (0.6)	11,821	13,471	14.0%

자료: 통계청, 2012,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소득계층별로 볼 때, 1, 2 분위가 2012년에 비해서 소득이 크게 하락한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비용과의 상관성이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림4-13]은 패널자료의 가구가 2012년의 이자부담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를 도시한 것이다. 2013년 현재 1분위 소득계층의 2012년 이자부담률은 26.2%였으며, 2분위의 그것은 12.3%였다. 이것은 [그림 4-12]에서 도시된 2012년 당시 1, 2분위의 이자부담률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그리고 현재 1분위 소득계층이 평균적으로 소득분위가 1.6 정도 높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3년 1분위로 분류된 소득계층은 2012년에는 평균적으로 훨씬 높은 소득 분위였을 것이다. 그것인 현재의 1분위 소득계층이 2012년 동일한 소득계층에 있었던 가구보다 높은 이자부담률을 평균적으로 부담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이자부담률이 높은 가구가 미래에 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차관계의 존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소득층의 부채증가가 소득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가 미래소득 수준에 대한 기대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차입한 것 때문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책적으로 과도한 신용공급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차입을 하도록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미래소득의 증가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과도하게 차입함으로써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훨씬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저소득층에서의 차입이 미래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림 4-13] 2013년 기준 소득계층의 2012년 이자부담률



주: 가구 분위는 2013년 기준이며, 패널자료에 이용된 차입가구의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12,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5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하여 소득분위별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득으로의 현금흐름이라는 관점에서 금융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금융부채와 소득불균형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보다 초점을 두었다. 현재 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인 반면 부채는 대다수가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물자산은 그 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크지 않은 반면, 금융부채는 이자지급 등으로 인하여 현금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적인 자산 및 부채 보유구조는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산 및 부채 구성이 소득분위별로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소득불균형은 자산 및 부채로 인하여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흐름과 관련해서 10분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위에서 부채로 인한 현금유출이 자산보유로 인한 현금유입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재산소득이 크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부채로 인한 현금유출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금융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입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경상소득 대비 이자비용으로 정의된 이자부담률이 가장 소득이 낮은 1, 2분위에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자비용 부담은 실제 소비에 사용될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감안할 경우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이전에 이자부담이 높은 가구가 소득

분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악화시키고 결국 후생을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실질적으로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패널 자료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 자료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는 자료 조사의 보완이나 분석 방법론의 개선이 추가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한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지만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자영업자의 문제 역시 이러한 가계부채와 소득불균형의 관계를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소득과 자산 또는 부채의 관계를 잔액 등과 같은 저량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던 반면, 부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량변수와 그로 인한 소득흐름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금융부채로 인한 문제를 가계의 파산이나 아니면 거시전성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기존 연구에 비하여 금융부채로 인한 소득흐름의 변화와 소득계층간의 차별적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와 소득불균형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특히 소득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위해 신용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최근 햇살론 및 미소금융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저소득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소득재분배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용공급은 기본적으로는 차입자가 상환능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만약 차입자가 상환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신용공급은 미래의 저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파산을 유발함으로써 소득불균형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으로의 접근이 차단되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차입자에게 신용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충분한 선별과정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입자가 과도한 부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오히려 미래의 소득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신용공급 정책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첫째,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은 금융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을 통한 보조금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득재분배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출심사기능을 확대하여 상환능력에 따라 신용공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불균형 완화에 보다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순한 자금공급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자문 및 교육 등 부수적인 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장

적자 가구의 분포 및 실태 분석

제1절 적자가구의 의미

제2절 적자가구의 분포 및 특성

제2절 적자가구의 적자보전 실태

5

적자가구의 분포 및 실태 분석 <<

제1절 적자가구의 의미

이 장에서는 1998년과 2008년 적자가구의 분포 및 특성 분석을 통해 적자가구의 수입 및 지출 구성 형태를 살펴보고 또한 이들의 적자보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적자가구란 가구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보다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

가계수지가 적자라는 사실은 소비지출을 위해 가구가 경상소득 이외의 수입원에 의존해야 함을 뜻한다. 만일 다음 해의 소득이 증가하여 금년의 적자분을 보전하고도 남는다면 장기적으로 가계수지 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계수지 적자는 가구가 보유한 자산규모의 축소나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기타 수입원의 감소나 지출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가계수지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적자가구의 규모와 적자가구가 어떤 수입원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가 하는 점은 소득분배 악화의 영향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소득분배의 동태적 변화 방향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장의 분석에는 1998년과 2008년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2인 이상 도시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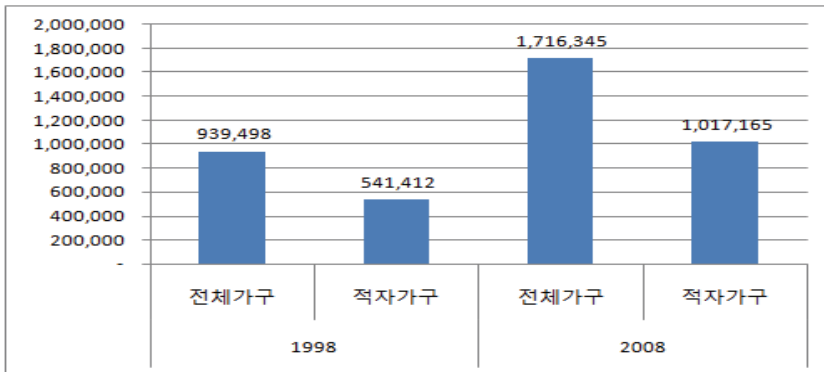
제2절 적자가구의 분포 및 특성

1. 적자가구의 규모 및 분포

적자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가구 대비 적자가구의 비율은 1998년 13.3%이었으며, 2008년은 7.4%p증가한 20.7%로 나타났다. 1998년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의 평균은 939,498원¹⁷⁾이었으며, 적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이보다 40만 원가량 낮은 541,412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의 평균은 1,716,345원이었으며, 이에 반해 적자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70만 원가량 낮은 1,017,165원이었다. 전체가구는 1998년에 비해 2008년 가처분 소득이 82.7%가량 증가하였으며, 적자가구는 이보다 다소 높은 8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전체가구와 적자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 비교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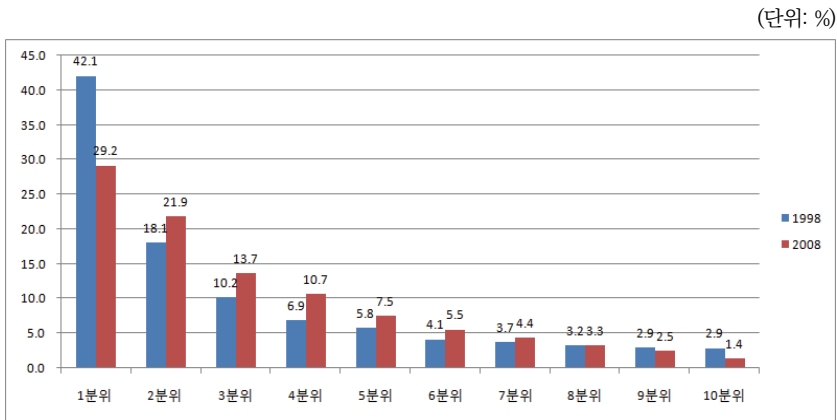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1998, 2008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17) 가처분소득의 평균값은 명목가격으로,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였다.

적자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적자액 비율을 나타내는 적자폭을 살펴보면 1998년 39.1%, 2008년은 이보다 7.9%p 하락한 31.2%로 나타났다. 요컨대 1998년에 비해 2008년에는 적자가구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적자폭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적자가구가 더욱 광범위하게 분포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 분위별 적자가구의 분포를 살펴보자. 1998년 1분위에 해당하는 적자가구는 42.1%로 가장 높았으며, 2분위 18.1%, 3분위 10.2% 순서를 보였다. 2008년은 1998년에 비해 적자가구의 분위별 분포가 다소 고른 것을 볼 수 있는데, 1분위에 29.2%, 2분위는 21.9% 비율을 보였다. 아래의 [그림 5-2]에서 보듯이 1998년에 비해 2008년에는 1분위에서 적자가구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2~8분위까지는 적자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림 5-2] 분위별 적자가구의 분포



자료: 통계청, 1998, 2008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 적자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저 전체가구 대비 적자가구의 가구원 수를 살펴보겠다. 1998년 전체 가구와 적자가구 모두 4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각각 44.1%와 38.8%로 나타났다. 1998년 적자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2인과 3인가구의 비중이 높았는데, 전체가구의 2인 가구는 9.6%, 3인가구는 21.5%임에 비해, 적자가구의 14.0%와 23.1%로 나타났다. 2008년 적자가구의 2인 가구 비율은 20.8%로 이는 전체가구 비율인 15.1%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하지만 3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5인 가구를 제외하고 전체 가구의 적자가구에 비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1998년 전체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4명이었으며, 적자가구는 이보다 0.2명가량 낮은 3.8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체가구의 평균 가구규모는 3.5명이었으며, 적자가구는 역시 0.2명 낮은 3.3명을 보였다.

전체가구와 적자가구의 가구주 성별을 비교해보면 1998년 전체가구에 서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는 87.6%이며, 2008년 84.6%로 나타났다. 반면 적자가구의 경우 1998년과 2008년 모두 이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1998년 적자가구에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는 20.8%로 전체가구의 12.4%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8년 전체가구에서는 30대 가구주가 38.2%, 40대 가구주가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적자가구의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30대 가구주가 31.3%, 40대 가구주가 30.4%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가구주 연령의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가구는 42.2세, 적자가구는 44세로 적자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1.8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전체가구에서 40대가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30대가 25.0%, 50대가 20.8%로 나타

났으며, 적자가구 역시 40대가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대가 20.8%, 50대가 18.5%로 다음으로 높았다. 가구주 연령의 평균은 전체가구 47.5세, 적자가구 49.6세로 1998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전체가구 대비 적자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1998		2008	
		전체가구	적자가구	전체가구	적자가구
가구규모	2인	9.6	14.0	15.1	20.8
	3인	21.5	23.1	24.7	23.9
	4인	44.1	38.8	44.3	39.8
	5인	16.7	17.9	12.0	13.8
	6인 이상	8.0	6.2	3.9	1.8
가구주 성별	남성	87.6	79.3	84.6	80.3
	여성	12.4	20.8	15.4	19.7
가구주 연령	20세 미만	0.2	0.5	0.1	0.2
	20~30세 미만	8.0	8.2	2.8	3.0
	30~40세 미만	38.2	31.3	25.0	20.8
	40~50세 미만	30.3	30.4	37.8	38.7
	50~60세 미만	16.4	19.0	20.8	18.5
	60~70세 미만	5.8	8.5	9.2	11.2
	70~80세 미만	0.9	1.7	3.9	6.4
	80세 이상	0.2	0.4	0.5	1.1
가구주 학력	무학	1.1	1.7	1.1	1.1
	초등학교	7.8	12.6	6.5	7.6
	중학교	13.7	17.9	9.4	11.3
	고등학교	44.6	41.0	40.5	43.6
	전문대 이상	33.0	26.8	42.5	36.3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	근로	58.5	39.9	62.3	45.5
	자영업	31.1	25.0	26.8	31.0
	무직	10.4	35.1	10.9	23.6
가구형태	노인가구 비율*	0.9	2.0	3.4	6.9
	모자가구 비율	2.1	4.4	2.7	3.7
	맞벌이가구 비율	22.8	9.5	37.3	20.9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998년 노인가구의 개념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구원을 포함하지 않고,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인 가구였으며, 2008년은 노인의 개념이 60세에서 65세로 변경

자료: 통계청, 1998, 2008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구주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1998년 무학이거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인 경우는 적자가구가 전체가구에 비해 더 높았으며 (각각 1.7%, 12.6%, 17.9%), 고등학교 이상(고등학교, 전문대 이상)은 전체가구가 적자가구의 비율보다 높았다. 특히 전문대 이상(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포함)이 최종 학력인 경우는 전체 가구가 33.0%임에 비해 적자가구는 26.8%에 그쳤다.

2008년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구주의 최종 학력인 비율은 적자가구가 높았으며, 전문대 이상의 비율은 전체가구가 42.5%임에 비해 적자가구는 36.3%로 전체가구에 비해 6.2%p나 낮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근로, 자영업, 무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998년 전체가구의 근로 비율은 58.5%, 자영업은 31.1%로 적자가구의 근로나 자영업 비율(각각 39.9%, 25.0%) 보다 높았다. 반면 무직의 비율은 적자가구가 35.1%로 전체가구 10.4%에 비해 3.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체가구의 근로비율은 62.3%로 적자가구의 45.5%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적자가구의 자영업 비율은 31.0%로 전체가구의 26.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98년 전체가구의 자영업 비율(31.1%)이 적자가구의 자영업 비율(25.0%)에 비해 높은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무직의 비율은 1998년과 마찬가지로 적자가구가 23.6%로 전체가구의 10.9%에 비해 2.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를 살펴보면 18세 이상 65세 (1998년의 경우는 60세) 미만 가구원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노인가구 비율은 1998년 전체 0.9%에서 2008년 3.4%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적자가구의 경우 역시 1998년 2.0%에서 2008년 6.9%로 3.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구의 경우 1998년 전체가구 2.1% 비율이었으며 적자가구는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4.4%를 보였다. 2008년도 적자가구는 전체가구의 2.7% 보다 높은 3.7%를 나타냈다.

맞벌이 가구는 1998년 전체가구 22.8%로 적자가구의 9.5%에 비해 2.4배가량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는 2008년 전체가구 37.3%로 10년 전에 비해 14.5%p 증가한 것이다. 적자가구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9%로 1998년에 비해 11.4% 증가하였다.

제3절 적자가구의 적자보전 실태

1. 수입 대비 지출 비교

적자가구는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경상소득 이외의 다른 수입 원으로부터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 한편 가구 단위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소비지출 이외의 가계지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경상소득 이외의 현금수입을 포함하고 소비지출 이외의 현금지출을 포함하여 가구 단위의 현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적자가구의 소득부족분은 어떤 수입을 통해 주로 보충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표 5-2〉 1998년 전체가구의 수입 대비 지출 비교

(단위: %)

수입	비율	지출	비율
경상소득	82.8	소비지출	52.2
근로소득	51.8	비소비지출	15.3
사업소득	23.9	공적 비소비지출	4.7
재산소득	2.4	비경상조세	0.3
공적이전소득	0.9	이자비용	2.7
사적이전소득	3.8	가구간 이전지출	5.3
비경상소득	4.4	비영리단체로 이전	2.2
기타수입	12.8	기타지출	28.4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5.5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17.3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6.1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11.0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1.2	자산이전	0.2
		오차 및 누락	4.1
계	100.0	계	100.0

자료: 통계청, 1998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위의 〈표 5-2〉는 1998년과 2008년 전체가구와 적자가구의 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을 보여준다. 가구로 들어온 현금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구분된다. 경상소득은 다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기타 수입은 자산변동(감소)이나 이전으로 인한 수입(예, 자산의 매각)과 부채의 증가로 인한 수입으로 구분된다.

〈표 5-2〉의 우변에는 가계의 현금 지출 구성이 구분되어 있다. 가계의 전체 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그리고 기타 지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타 지출은 다시 자산의 변동(증가)나(예, 금융저축) 이전을 초래하는 지출과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지출(예, 부채의 상환)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수입과 지출의 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차이를 오차 및 누락이란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1998년 전체가구 수입의 평균이 지출의 평균에 비해 높아, 총수입 대비 수입 지출 항목의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지출과 수입의 차액은 오차

및 누락으로 간주하였다. 전체가구의 수입은 경상소득이 82.8%, 비경상소득이 4.4%, 기타수입이 12.8%를 나타냈다. 경상소득에서는 근로소득이 5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사업소득 23.9%를 나타냈다. 기타수입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과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으로 구성되며, 이는 각각 5.5%, 6.1%, 1.2%를 차지하였다.

지출에서 소비지출은 52.2%, 비소비지출은 15.3%를 차지하였으며, 기타지출은 28.4%를 보였다. 비소비지출에서는 가구간 이전지출이 5.3%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조세, 연금 및 사회보장금을 포함하는 공적 비소비지출이 4.7%를 보였다.

1998년 적자가구는 지출이 수입에 비해 높아 총지출 대비 각 항목의 비율로 나타내었으며, 지출과 수입의 차액을 수입의 오차 및 누락으로 간주하였다. 먼저 1998년 적자가구의 경상소득은 48.4%로 전체가구의 경상소득(82.8%)과 비교하였을 때 34.4%p가량 차이를 보인다.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수입 중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각각 2.7%와 4.7%로, 이는 전체가구 2.4%와 3.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경상소득은 9.6%로 전체가구보다 2.1배 이상, 기타수입은 21.1%로 1.6배 가량 높았다. 특히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은 5.5%로 전체가구에 비해 4.5배 높았다.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소비지출이 62.9%로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52.2%에 비해 10.7%p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비소비지출은 11.9%로 비경상조세가 0.6%로 전체가구(0.3%)에 비해 2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기타지출은 25.2%로 전체가구의 28.4%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기타지출의 세부항목인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은 15.9%,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은 9.0%로 나타났다.

적자가구에 대한 <표 5-3>이 전체가구의 수입-지출을 비교한 <표 5-2>와 다른 점은 오차 및 누락항이 좌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오차 및 누락 항은 수입과 지출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항목이다. 오차 및 누락항의 존재는 단순히 계산상의 오류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보고되지 않은 수입 및 지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적자가구의 오차 및 누락 항이 좌변에 위치한다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수입원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3> 1998년 적자가구의 수입 대비 지출 비교

(단위: %)

수입	비율	지출	비율
경상소득	48.4	소비지출	62.9
근로소득	25.6	비소비지출	11.9
사업소득	14.7	공적 비소비지출	3.2
재산소득	2.7	비경상조세	0.6
공적이전소득	0.7	이자비용	2.0
사적이전소득	4.7	가구간 이전지출	4.3
비경상소득	9.6	비영리단체로 이전	1.9
기타수입	21.1	기타지출	25.2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7.4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15.9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8.2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9.0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5.5	자산이전	0.3
오차 및 누락	20.9		
계	100.0	계	100.0

자료: 통계청, 1998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8년 전체가구의 수입은 경상소득이 75.6%, 비경상소득은 2.9%, 기타수입은 10.0%, 오차 및 누락은 11.6%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에서는 근로소득이 52.4%를 보였으며, 이는 1998년 51.8%에 비해 크게 차이나

지 않지만, 사업소득은 15.6%로 1998년 23.9%에 비해 8.3%p나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기타수입에서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은 1998년 1.2%에 비해 2008년에는 0.2%를 보였다.

2008년 전체가구의 소비지출 49.1%로 199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 역시 1998년 15.3%에 비해 다소 감소한 13.9%를 보였으나,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으로 구성된 공적 비소비지출은 6.2%로 1998년에 비해 1.5%p증가하였다. 기타지출은 37.0%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이 18.8%를 보였고,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은 17.8%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기타지출 28.4%에 비해 8.6%p나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은 1998년에 비해 6.8%p 증가하였다.

〈표 5-4〉 2008년 전체가구의 수입 대비 지출 비교

(단위: %)

수입	비율	지출	비율
경상소득	75.6	소비지출	49.1
근로소득	52.4	비소비지출	13.9
사업소득	15.6	공적 비소비지출	6.2
재산소득	1.7	비경상조세	0.2
공적이전소득	2.7	이자비용	1.5
사적이전소득	3.3	가구간 이전지출	3.9
비경상소득	2.9	비영리단체로 이전	2.0
기타수입	10.0	기타지출	37.0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5.6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18.8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4.1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17.8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0.2	자산이전	0.4
오차 및 누락	11.6		
계	100.0	계	100.0

자료: 통계청, 2008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8년 적자가구는 지출이 수입에 비해 크게 높아 수입의 오차 및 누락은 34.8%로 나타났다. 수입에서 경상소득은 47.8%로 전체가구의 75.6%에 비해 27.8%p가량 차이가 났으며, 1998년 적자가구의 경상소득인 48.4%에 비해서도 다소 감소하였다. 적자가구의 재산소득 역시 1.5%로 1998년 2.7%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공적이전소득은 2.8%로 전체가구 2.7%, 1998년 적자가구 0.7%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기타수입은 12.6%로 전체가구에 10.0%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지만, 1998년 21.1%에 비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적자가구의 소비지출은 57.6%로 전체가구의 49.1%에 비해 8.5%p 높았다. 하지만 1998년 적자가구의 소비지출 62.9%에 비해서는 13.8%p 낮게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은 10.5%로 1998년 적자가구의 11.9%와 2008년 전체가구 13.9%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기타지출은 31.9%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이 16.0%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이 15.6%를 보였다. 반면 전체가구는 기타지출 37.0%에서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이 18.8%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17.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998년 적자가구의 경우에도 기타지출 25.2%에서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이 15.9%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인 9.0%에 비해 크게 높았다.

〈표 5-5〉 2008년 적자가구의 수입 대비 지출 비교

(단위: %)

수입	비율	지출	비율
경상소득	47.8	소비지출	57.6
근로소득	26.0	비소비지출	10.5
사업소득	14.0	공적 비소비지출	4.1
재산소득	1.5	비경상조세	0.3
공적이전소득	2.8	이자비용	1.4

수입	비율	지출	비율
사적이전소득	3.6	가구간 이전지출	3.1
비경상소득	4.8	비영리단체로 이전	1.7
기타수입	12.6	기타지출	31.9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6.5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15.6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5.5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16.0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0.6	자산이전	0.2
오차 및 누락	34.8		
계	100.0	계	100.0

자료: 통계청, 2008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 수입

적자 가구의 수입구조가 1998년과 2008년에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연도에 등장하는 오차 및 누락 항의 비율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자분을 어떻게 충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입 항목의 비교 기준을 전체 수입이나 전체 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소득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오차 및 누락항을 제외한 수입을 100%로 보고 가처분 소득과 비교하기 쉽도록 수입구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5-6>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한 가구 수입구조의 변화를 비교하고 있다.

〈표 5-6〉 전체 가구와 적자가구의 수입 항목별 비중

(단위: %)

항목	1998		2008	
	전체가구	적자가구	전체가구	적자가구
가처분소득	79.9	61.9	84.4	71.6
가처분소득 이외 소득의 합	20.1	38.1	15.6	28.4
비경상소득	6.0	12.9	3.5	7.8
기타수입	14.1	25.1	12.1	20.6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6.4	8.5	7.1	11.5
금융자산 감소	3.4	6.3	2.7	3.4
실물자산 감소	2.4	1.6	3.8	6.7
기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0.6	0.6	0.7	1.3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7.7	16.7	5.0	9.1
부동산 관련 빌린 돈	1.4	3.2	1.9	2.1
기타 빌린 돈	6.3	13.4	3.2	6.9
총 수입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이 표에서 수입은 크게 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나누었다. 가처분소득 이외 소득은 크게 비경상소득과 기타수입으로 나누며, 기타수입은 다시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과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으로 나눈다.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은 금융자산 감소와 실물자산 감소에 의한 수입으로 나뉘며,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은 부동산 관련 빌린 돈과 기타 빌린 돈으로 나누어진다.

적자가구의 적자폭이 감소하면서 적자가구에서 가처분 소득 이외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38.1%에서 2008년 28.4%로 감소하였다. 또한 부채증가를 수반하는 수입의 비중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자산의 감소를 수반하는 수입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특히 실물자산의 감소를 수반하는 수입이 1.6%에서 6.7%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가구가 보유한 대표적인 실물자산이 주택 등 부동산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수입구조의 변화는 가구 주거기반의 악화를 수반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 지출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와 적자가구의 지출 항목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지출항목 가운데에는 가처분소득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 등 공적 비소비지출 항목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5-7>은 전체 가구와 적자가구에서 각 지출항목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때 가구의 총 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하였고, 비소비지출은 다시 비경상조세와 이자비용, 그리고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 그리고 기타지출로 구분하였다. 비소비지출 가운데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지출이다. 이 기타지출은 다시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과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로 구분된다.

〈표 5-7〉 전체 가구와 적자가구의 지출 항목별 비중 변화

(단위: %)

항목	1998		2008	
	전체가구	적자가구	전체가구	적자가구
소비지출	56.7	64.8	52.4	60.0
소비지출 이외 지출의 합	43.3	35.2	47.7	40.0
비경상조세	0.3	0.3	0.22	0.3
이자비용	2.8	2.5	1.6	1.4
주택대출이자	2.1	1.9	1.1	0.9
기타이자	0.7	0.5	0.5	0.5
가구간 이전지출	5.5	4.1	4.2	3.2
비영리단체로 이전	2.9	2.3	2.2	1.8
기타지출	31.7	26.1	39.4	33.2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20.7	17.6	20.4	16.5
금융자산 변동	13.1	11.7	12.9	8.9
실물자산 변동	7.1	5.2	6.8	7.0
기타자산형태의 변동	0.5	0.7	0.8	0.7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11.0	8.5	19.0	16.7
부동산 대출 상환	1.2	0.3	1.8	1.1
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	9.9	8.2	17.2	15.6
총지출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적자 가구의 총 지출 대비 소비지출의 1998년 64.8%에서 2008년 60.0%로 감소하였다. 소비지출의 비중 감소 경향은 전체가구에서도 발견되는 것인긴 하지만, 적자가구에서는 그 감소율이 조금 더 높았다. 적자가구의 경우 자산증가를 수반하는 지출의 비중은 17.6%에서 16.5%로 다소 감소한 반면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의 비중이 8.5%에서 15.6%로 증가하였다. 적자가구에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과 이자비용의 비중을 합한 값은 1998년 약 11.0%에서 2008년 18.1%로 증가하였다. 이 지출의 비중은 적자가구 여부를 판별하는 데 고려되지 않은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적자가구가 느끼는 지출상의 압박은 10년 동안 훨씬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자가구의 수입-지출구조를 살펴본 결과 적자가구는 수입 적자분의 상당 비율을 자산의 감소를 동반하는 수입으로부터 충당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채의 감소를 위한 지출과 이자부담을 위한 지출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적자가구가 실제로 느끼는 지출압박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또한 지출의 압박이 자산 기반의 감소를 동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수지 적자로 인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파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소득분배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계부채 및 소비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구소득 불평등과 적자가구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고, 소득계층별 금융부채 보유실태에 대해서는 주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관련여서는 불평등의 심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전후의 두 시점인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각 장별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10년 사이의 불평등 심화요인을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인구집단별로 분해하였고, 또한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였다. 이러한 요인분해 방법을 통해 각 요인들이 불평등의 심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집단별 요인분해에서는 집단 내부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도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집단 간 비중 변화는 10년 사이의 불평등 증가에 대해 적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별 분해에서는 여전히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이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70%가 넘는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의 노동소득이나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 등 노동시장 요인에 따른 불평등의 기여도가 상승했다. 반면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과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이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은 더

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장의 내용은 개별 요인들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2장과 같으나, 회귀모형을 이용한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특정 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2장과 차별화 된다. 가구주 노동소득 추정모형과 가상적 분포 도출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구주 노동소득의 경우 연령효과와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가격효과가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특히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노동소득의 경우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에 따른 가격효과가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가구주 특성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배우자의 소득에 미치는 가구주 특성의 가격효과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하여 소득분위별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득으로의 현금흐름이라는 관점에서 금융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금융부채와 소득불균형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보다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가계는 공통적으로 실물자산 중심의 자산 구성과 금융부채 중심의 부채구성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 결과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가계부채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이자부담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자부담이 높은 가구가 소득분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으로 가계부채가 소득불균형을 유발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석 결과는 적어도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 증가에 기여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하락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차원에서 신용공급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즉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이 재정정책을 대신하여 과도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정책적 시사점이다.

5장에서는 적자가구, 즉 가구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보다 많은 가구의 실태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적자가구의 비율은 10년 사이에 13%에서 약 21%로 증가했다. 반면 적자가구의 적자폭은 소득 대비 약 39%에서 약 31%로 낮아졌다. 적자가구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 소득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적자가구는 적자보전을 위해 소득이 아닌 기타 수입, 즉 보유 자산을 줄이거나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 소득 대비 기타수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소비지출을 위한 소득부족분을 자산 처분이나 부채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저하하거나 부채상환 부담 가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현실이다. 적자가구의 확산이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구소득의 증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가구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역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적자가구가 전 소득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출 보전정책의 경우 대상 계층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 강신욱(2012). 2000년대 후반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과 특징, 2012년 사회정책 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강두용·홍민기·정현상(20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아(2011). 국내가계의 부채증가 추세 및 요인에 관한 연구: 미시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응용경제, 제13권 제1호, 2011, pp.209-237.
- 김낙년(2012).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경제발전연구, 제18권 제2호, pp.125-158.
- 김우영, 김현정(2009). 가계부채의 결정 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2009.4, 한국은행
- 김학주(2005).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담부채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1호, pp.119-147.
- 박대근(2010).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특성과 결정요인 : 주식 직접투자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pp.93-122.
- 성명재(2011).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방향,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pp. 31-70.
- 성명재·박기백(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7집4호, pp.1-37.
- 신광영(2013). 한국사회의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윤경, 주소현(2009). 가계의 순자산과 자산 배분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5호, 2009, pp.2109-2129.
- 유경원(2009).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분석: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분석, 제15권 제4호, pp.1-32.

- 이병희·강신욱 외(2007).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효과 추이분석,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이병희·장지연(2012).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권, pp.71-109.
- 이병희·홍민기·이현주·강신욱·장지연(2013)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철희(2008). 1996~2000년 한국의 가구소득불평등 확대 - 임금, 노동공급,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 노동경제논집, 31권 2호, pp.1-34.
- 전승훈, 임병인(2012). 금융위기 전후 가계부채 보유실태 및 부채위험 분석, 재정정책논집, 제 14권 2호, pp.67-102.
- 최원호(2013). 가계부채와 금융자산보유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제26권 제4호, 2013, pp. 527-559.
- 함준호, 김정인, 이영숙 (2010). 개인CB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위험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 32권 제 3호, pp.1-34.
- 홍기석(2013). 가계부채와 부동산, 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3호, pp. 99-161.
- 홍석철·전한경(2013)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한국경제의 분석, 19권 1호, pp.72-114.
- Atkinson, A., T. Piketty and E. Saez(2011). Top Incomes in the Long Run of Histo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9, no.1, pp.3-71.
- Bertrand, Marianne and Adair Morse(2013). Trickle-Down Consumption, Working paper, 2013 Marc.
- Blinder, A.(1973)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no.8. pp.436-455.
- Bourguignon, F., F. Ferreira, and N. Lustig eds.(2005). *The Microeconomics of Income Distribution Dynamics: In East Asia*

- and Latin America*, World Bank and Oxford.
- Bourguignon, F., F. Ferreira, and P. Leite(2008). Beyond Oaxaca-Blinder: Accounting for Differences in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vol.6, pp.117-148.
- Fields, G.(2003). Accounting for Income Inequality and Its Change: A New Method with Application to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in Labor Economics*, Vol.22. pp.1-38.
- Greenwood, Jeremy and Boyan Jovanovic(1990). Financial Development, Grow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5, 1990, pp.1076-1107.
- Heckman,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Vol. 47, No. 1., pp. 153-161.
- Iacoviello, Matteo(2008). Household Debt and Income Inequality, 1963-2003,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40 (5), 929-965.
- Jenkins, S.(1995) Accounting for Inequality Trends: Decomposition Analyses for the the UK, 1971~1986, *Economica*, vol62, no.245, pp.29~63.
- Kumhof, Michael, Romain Ranci re and Pable Winant(2013).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Working Paper, June, 2013.
- Lerman, R. and S. Yitzhaki(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7, no.1, pp. 151-156.
- Oaxaca, R.(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no14, pp.673-709.
- OECD(2007). *Growing Unequal*, OECD.

- OECD(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 Oxley, H., J. Burniaux, T. Dang, and M. d'Ercole(1997).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13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29, pp. 55-91.
- Piketty, T.(2014) *Capital in the Twentiy-First Century*, Belknap Harvard.
- Shorrocks, A.(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vol.50, no.1, pp.193-211.
- Shorrocks, A.(1984). Inequality 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s, *Econometirca*, vol.52, no.6, pp.1369-1385.